

202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일시 2025. 7. 24.(목) 14:00 ~ 18:00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 일시: 2025. 7. 24.(목) 14:00~18:00 ◆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사회: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일 정 | 내 용 |
|-------------|---|
| 14:00~14:10 | [개회식] 인사말씀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 14:10~14:40 | [주제발표 1] 사법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 도면희(대전대학교 명예교수) |
| 14:40~15:10 | [주제발표 2]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
| 15:10~15:40 | [주제발표 3]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분석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
| 15:40~16:00 | 〈 휴 식 〉 |
| 16:00~18:00 | [종합토론] 좌장_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한보람(청주교육대학교 강사) / 김기성(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김항기(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유바다(고려대학교 교수)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목 차

○ 주제발표 1

사범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

도면회(대전대학교 명예교수) 3

토론문 1: 한보람(청주교육대학교 강사) 23

토론문 2: 김기성(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29

○ 주제발표 2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35

토론문 1: 김항기(독립기념관 연구위원) 69

토론문 2: 유바다(고려대학교 교수) 75

○ 주제발표 3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 분석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79

토론문 1: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07

토론문 2: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113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주제발표 1

사법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

도 면 회

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사법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

도면희

대전대학교 명예교수

1. 『사법품보』의 사료적 특성

『사법품보』란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존되어 있는 개화기 근대 재판 관련 사료이다. 『사법품보』는 총 128책으로 구성된 『사법품보(갑)』(규장각분류번호 奎17278)과 총 52책으로 구성된 『사법품보』(을)(奎17279)를 총칭하는 용어다. 두 종류 모두 전국 각지 재판기관에서 법부로 보내온 보고서와 질품서 등을 1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 월 단위로 구분하여 모은 것이다. 『사법품보』(갑)은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907년(광무 11)까지, 『사법품보』(을)은 1897년(광무 2)부터 1906년까지 생산된 보고서·질품서들이다.¹⁾

『사법품보』는 제목이 의미하는 대로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각도에 설치된 지방재판소가 법부에 질품하거나 보고한 문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1894~1895년간은 갑오개혁에 의해 조선후기 이래의 공문서 양식이 일본의 근대적 제도를 모방한 공문서 형식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인지라, 구래의 공문서 양식과 신식 공문서 양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1894~1897년에 생산된 문서를 영인한 제1권의 경우, 구래의 관문(關文:상급 관청이 동등 이하의 관청에 보내는 문서)이나 단자(單子: 짧은 형식의 문서), 첩보(牒報: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 등의 문서, 과도기적 문서 양식으로서 공이(公移: 오늘날의 照會와 같은 문서), 공복(公覆: 오늘날의 照覆과 같은 문서) 등의 문서 양식이 나타난다.

1895년 윤5월 이후가 되어서야 근대적 공문서 양식들이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자료에서 보이는 질품(質稟)·보고(報告)를 비롯하여 조회(照會)·조복(照覆)(대등한 관부 사이에 왕복하는 공문 형식으로서 상대측의 회답을 요구하는 형식), 통첩(通牒: 대등한 관부 사이에 왕복하는 공문 형식이지만 회답을 요구하지는 않는 형식), 훈령(상급기관이 소할 관청에 보내는 공문으로서 구래의 關文, 甘結, 下帖과 같음), 지령(하급기관의 질품이나 청원에 대한 지시나 명령 공문으로서 구래의 보장제사(報狀題辭)와 같음), 부령(部令: 정부 각 부에서 제정한 법령), 고시(告示: 관청에서 인민에게 고지하는 문서), 상주(上奏: 국왕에게 재가를 청하는 문서로 구래의 계문과 같음) 등의 문서 형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1) 이하, 도면희, 「사법품보 해제」 한상권 외 『역주 사법품보』 봄날의책, 2018에 의거함.

『사법품보』에서 질품서·보고서를 올린 주체는 대부분 각도와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의 판사 또는 각군의 군수들이다. 이들 문서를 접수한 주체는 법부 내의 각 부서이므로, 본 자료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부·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관제 변천과 재판 절차를 최소한이나마 알아두어야 한다.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한성(부)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평리원), 특별법원의 5종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는 1895년 윤5월 10일 칙령 제114호에 의해 전국 22개 부에 윤5월 15일부터 점차 개설하고 관할구역은 각 부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였다. 따라서 종래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사무는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수리 심판에 귀속하게 하였다.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 후 전국을 23부로 나누어 운영하던 지방제도가 다시 개편되었다. 한성에는 특별히 1부를 그대로 두되 전국 23부를 13도로 개정하고 각도에 관찰사를 둬으로써 개혁 이전과 유사한 제도로 바뀌었다. 지방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1896년 8월 15일 23부제에 근거하여 설치한 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 13도제에 근거하여 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개정하였으며, 개혁 이전과 같이 관찰사가 판사를 겸임하는 형태로 복귀하였다.

한성재판소는 그 위상과 성격을 둘러싸고 몇 차례의 관제 개정을 겪었다. 한성재판소는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한성과 경기도를 관할하였다. 1897년 9월 12일 경기재판소를 따로 설치함에 따라 한성재판소는 한성 5서 내의 민·형사 사건만 관장하고, 경기재판소가 경기도 4부 34군을 관할하게 바뀌었다.

고등재판소는 한성재판소를 비롯하여 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수리 심판하는 최고재판소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각급 재판소의 상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칙임관·주임관 등 고급관리와 정치범에 관한 재판도 담당하였다. 그후 1899년 5월 31일 고등재판소의 명칭은 평리원으로 변경되어 1907년 말까지 존속하였다(이하, 순회재판소와 특별법원은 사법품보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므로 생략함).

각급 재판소가 설치 운영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각급 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부 또는 국왕이 최종적인 판결 확정이나 재판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점이 이 시기 형사재판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재판제도가 근대적으로 개편된 직후이므로 법부에서는 ①심리한 형사사건이 종신유배·종신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할 때 ②심리한 형사사건의 범행 정상이 형량을 경감할 만한 때 ③법률 적용상 의의(擬議)가 생길 때 등 세 가지 사안일 경우에는 모든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법부에 지령을 청하여 판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법부가 내리는 셈인데, 이러한 체제는 1899년 5월

31일 법부관제와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특별법원 및 평리원에서 모반대역 범인을 조사한 안건을 질보했을 때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법부대신이 직접 심판할 수 있고, 평리원 및 각재판소 민형사 소송에 억울함이 생길 때는 법부 칙주임관을 파견 심사하거나 해당 서류 일체를 법부로 옮겨와 재판할 수 있도록 법부의 재판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 평리원에서 ①국왕이 특별히 지목한 죄인의 심판 ②칙임관·주임관 체포 및 심판 ③정치범 심판 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법부대신에게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려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세 가지 경우와 사형 죄수에 대한 최종 판결 확정과 형 집행은 국왕의 재가를 얻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1899년 이후부터 국왕은 사실상 개혁 이전과 유사하게 최종적인 재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재판소 제도와 재판 절차를 볼 때, 『사법품보』에는 지방재판소·한성재판소·개항장 재판소·고등재판소(평리원) 등 모든 재판기관에서 생산되는 재판기록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크게 보면 질문과 회답, 훈령과 그에 대한 보고가 대종을 이룬다. 우선 질문과 회답의 경우, 각급 재판소가 ①심리한 형사사건이 종신유배·종신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할 때 ②심리한 형사사건의 범행 정상이 형량을 경감할 만한 때 ③법률 적용상 의의(擬議)가 생길 때 등 세 가지 사안일 경우 상급기관인 법부에 질품한 내용, 이에 대한 법부의 회신 또는 지령 등을 보존하고 있다. 또는 재판소의 경비 문제, 사면 조칙을 실시할 때 감등 또는 방석할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다.

훈령과 보고서들은 고종의 사면 조칙 실시 처리 결과(형명부, 공초성책, 판결선고문 첨부), 형사 피고인에 대한 양형 훈령에 대한 처리 결과, 형사 피의자를 체포하고 처단한 결과, 지방 재판소에 접수된 군수들의 보고를 재보고한 것, 기결수의 형기 만료 사실, 기결수의 속전 납부 결과 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종신유배·종신징역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각급 재판소 판사·검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형사 판결의 형량 경감에 대해 의문이 없는 사건 등은 『사법품보』에 수록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즉, 모든 형사 재판 기록이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사법품보』에서 확인되는 동학도의 활동을 크게 반정부 활동, 동학교단 재건 활동, 사적 폭력, 천주교·기독교 등 외래종교로의 전향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2. 반정부 활동

1)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활동

『사법품보』에서 동학도의 움직임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와 농민혁명 이후 1890년대 후반까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학농민혁명 최대 접전지가 충청도 공주부터 전라도 장흥까지 걸쳐 있는데 『사법품보』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도의 재판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1895년 4월 강원감영 보고에 의하면 비도 우두머리인 이규하가 원주군 귀래면에 동학 접을 설치하여 어지럽히고 이에 따라 다른 면에서는 더욱 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²⁾ 또한 충청도 임천의 접주 임재홍은 본심에서 우려난 것이 아닌데도 동학 접주가 되어 좌수를 곤형에 처하고 임천읍의 군기를 약탈한 데서 나아가 전봉준이 진을 설치한 곳으로 가서 후군장(後軍將)이 되려고 하였다.³⁾

충청도 청풍의 표영조의 활동은 1894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졌다. 그는 1894년 봄부터 화포에 쓸 염초를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하고 이임(里任)을 잡아 가두어 토색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쳤으며 빗 값기를 독촉하고, 도적의 소굴에 사족(士族)들을 가두고 형벌을 가해 처단하고, 횡불을 들거나 짐을 지는 부역을 하라고 위협해 고통을 받지 않은 양민들이 없다고 하였다. 곡식이나 돈을 빼앗겨 부자(饑戶)들은 거의 모두 재산을 날렸습니다.

같은 해 8월 포군(砲軍) 300명을 이끌고 스스로 포군대장이라고 하며, 창을 들고 고을 안으로 들어와 전(前) 군수를 끌어내 묶고 때렸으며, 9월에는 성두한(成斗漢)과 함께 비적 무리만여 명을 이끌고, 고을을 에워싸고 들어와 군사 기물을 탈취하고 인가와 기물을 때려 부수었는데, 그 수를 셀 수 없고 한 읍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군과 관군의 진압을 피해 종적을 감추었다가 1895년 6월 28일 고을에 돌아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장래에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부렸으나 6월 말 장날 면민 수백 명이 그를 붙잡아 강변에 매장당하는 변을 당하였다.⁴⁾

황해도 재령과 해주 지역에서도 1895년 초까지 동학도의 봉기가 이어졌다. 신천 접주 원용일이 무리 수백 명을 이끌고 신천군을 불질러 쓸어버리고 재령군으로 향할 때 접주 강달조는 동학도를 이끌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포와 함께 장수산에 입산했다가 다시 돌아와 청룡촌 강희열에게서 뺏은 벼 27석은 화포수들에게, 김첨사에게서 강탈한 잡곡 36석은 각처 농민들에게 농사 빛으로 분배하였다.⁵⁾

2) 『사법품보』 제3책, (1895. 4. 19) 강원감영보고 제175호

3) 『사법품보』 4책, 1895. 7. 8. 「임천군 첩보」

4) 위의 책, 1895. 7. 8. 「단양군수로부터 온 보고」

5) 제6책, 18960127 해주부관찰사 보고 제6호

해주부 장연군 백낙희는 조선정부의 특사로 조정의 특사를 받은 다음에도 해주부 사냥꾼들에 의탁하여 접장이라 칭하면서 마을에 횡행하면서 해주부 공략 계획을 구상하였다. 함께 계획을 꾸민 인물은 전양근, 백기정, 김계조, 김의순, 백낙규 등인데, 그의 진술을 통해서 백범 김구(당시 김창수)와 김형진, 김재희 류학선 최창조 등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⁶⁾

전봉준과 같이 활동하다가 전라도 나주 봉기에까지 참여했던 승려 응운, 접주 한윤화, 동학도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 등은 1896년 중반에 체포되었다. 이들 동학도는 1896년 봄 나주 봉기 때 하늘에 축원하고 주문을 외우다가 실상이 드러났기에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⁷⁾

동학농민혁명 이후 활동에 참여했다가 도피하여 숨어 살다가 뒤늦게 체포되어 처벌된 동학도들도 눈에 띈다. 천안의 박만귀는 동학접주 정정이가 가한 악형을 못 이겨 동학에 입도했으나 이후에는 천안의 軍器를 빼앗아 갈 때에 관문을 총으로 쏘고 官房에 난입하고 官家에 포를 쏘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신하였다. 1894년 가을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패한 이후 그는 의병에도 가담했고, 연기군 봉암에 숨어 살다가 직산 땅에서 품팔이로 생활을 잇다가 고향에 돌아왔으나 체포당했다.⁸⁾

같은 지역의 장숙이는 동학 간부였던 친사돈 김용희의 종용을 받고 동학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본래 전직이 관노 등과 유사한 조예였음에도 김용희의 지시와 후원을 받고 이서배를 결박하여 능형을 가하고 무리를 이끌고 관청에 난입하여 관문에 총을 쏘고 군기와 공물을 약탈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토벌을 면하고 도피하여 사금을 몰래 채취하다가 체포되고 말았다.⁹⁾

양반 또는 관리 신분임에도 동학도로 들어가 활동한 인물들의 사례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문의현령이었던 홍양섭은 동학도를 돕고 보호한 죄가 있다고 하여 청주병영에서 해당 현의 아전과 향임을 잡아다가 조사하기까지 했는데, 사실임이 확인되면서 문공(文功)은 한 등급 줄여 장(杖) 80에 처하고, 사죄(私罪)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고신(告身)은 세 등급 강등한 후에 2년 동안 충청도 내의 영춘현에 정배하였다.¹⁰⁾

충청도 임천 전 첨사(종4품 무관직) 남궁탁과 이원철은 동학도 接司로 요행히 잡히지 않았으나, 갑오개혁에 의한 조세제도 개혁 이후 백성들의 억울한 결세 부과에 대해 항의하여 스스로 장두라 주장하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관아로 달려가 “관아에서 억울한 징세결을 감면하지 않고 화폐로 납입할 신결과 구결 결세를 독촉하는가?”라고 항의하였으며, 나아가 정부에서 보낸 세무주사를 잡아서 구타하기까지 하였다.¹¹⁾

6) 위의 책, 1896. 2. 30. 해주부 장연군수 보고. 이후 백낙희는 총살, 나머지 공범 5명은 교수형을 당했다.

7) 11책, 18960808 전주부재판소 판사 보고

8) 제37책, 18980917 충남재판소 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장형 20대로 그쳤다.

9) 제45책, 1899. 3. 8. 충남재판소 보고서 제36호

10) 제2책, 1895. 3. 16. 「關 錦營」. 그러나 그는 4개월만에 사면령에 의해 정배에서 석방되었다(제4책, 1895. 7. 30. 영춘군수 보고).

11) 제6책, 18960403 임천군수 보고 제163호.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을 담당할 홍주부관찰사 서리 함인학은 남궁탁과 이원철이 억울한 징세를 호소하다가 관청에 불손하게 행동한 죄는 면하기 어려우나, 민요의 장두

이처럼 정부에서 보낸 세무주사 또는 세무시찰관과의 갈등으로 인해 세무시찰관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황해도 장연군 목감방 김한오는 장연군 하급 관속인 사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황해도 해주부 장연군 백낙희와 함께 활동하다가 사면받은 자였다. 이후 그는 정부에서 보낸 세무시찰관이 장연군의 세무 시찰에 나설 때 총창을 든 줄개 천백을 소집하여 군의 형세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1896년 3월 2일 강성일·강운경·김재식 등과 세무시찰관과 사령 2명을 잡아가 印信과 文簿를 탈취한 후 총살하였다.¹²⁾

2) 영학당 봉기 준비

동학농민혁명 이후 가장 큰 사회적 사건은 1898년 11월(음) 흥덕민란에 뒤이은 1899년 4월의 영학당 봉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민란과 봉기를 후원하거나 직접 일으킨 주체는 살아남은 동학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봉기 준비 단계, 봉기 단계, 봉기 실패 이후로 나누어 보자.

봉기 준비는 영학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교전을 받으며, 영학당 명의를 집회를 열고 봉기에 필요한 의식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이었다. 영학계는 우두머리 계장인 정읍군 거주 최일서과 장성군 사거리 거주 송문여, 서기는 장성군 거주 검암(黔巖) 차일용(車一用)이 조직했고 여기에 영광군 동학도 김태서를 수전유사(收錢有司)로 끌어들이고 고부·흥덕·고창·장성·영광·무장·함평 등 7읍의 계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구성하였다.¹³⁾

김태서는 처음에 1898년 8월 이종사촌 형 이경환의 권유로 영학계안(英學稷案)에 들어갔다. 그 학명(學名)은 ‘예슈교’이고 그 법문(法文)은 “예슈부인이 갱생하여 장씨부인이 인도하여야 하 날임을 섬게라. 조석상대(朝夕相對)에 공을 잘 드러라. 위성문도리하여 위봉계훈하고 애경상문(哀慶相問)하라”라는 것이었다. 계안이란 영학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어 놓고, 각 이름 아래의 계전(稷錢)은 봄·가을로 나누어 받았다.

그는 계전 5전을 내고 계안에 등록한 후 수계장 최일서 지휘에 따라 백양산과 도치(島峙) 등 가까운 마을을 다니며 ‘대동계’란 이름으로 50여 명을 가입시켰고, 8월 16일 방서(榜書) 2장, 회문(回文) 1장을 영광군 사창(社倉)·남계(南溪) 등에 붙여 영광군민을 계안에 가입하고 계전으로 1인당 5전을 내게 하였다.

방서는 제목이 경시(警示)라고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된 것과 비적 무리의 여당이 되었다는 죄목은 용서할 만한 것이니 살피주기 바란다라는 보고를 올렸다는 점이다(제8책, 18960608 흥주부관찰사 서리 함인학 보고 제15호)

12) 김한오는 이후에도 1899년 1월 포수 6-7명을 모아 과부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려 결국 관찰부에 체포당하였다(제45책, 18990301 황해도관찰사 이은용 보고 제29호)

13) 제49책, 1899. 2. 5. 「전남재판소판사 민영철 보고 제9호」; 1899. 6. 30. 「전남재판소판사 민영철 보고 제62호」

우리 대동계(大同契)는 곧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곳이다. 한 차례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대경장(大更張)의 길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라 농사일이 바쁘므로 29일로 날짜를 다시 정한다. 그 안에 입교한 여러 형제들은 일제히 이문(里門)으로 모일 것이며, 어떤 마을에서든지 포구로 쌀을 내가는 행위, 불효하거나 우애롭지 못 한 일 등을 막론하고 모두 책자로 만들어 적어 가지고 와서 실제 효험을 보도록 한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외에 효유할 사항은 예배 날에 직접 전달하겠다. 칠읍 계장(七邑禳長) 김”.

그리고 소위 회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은 회유(回諭)하는 일이다. 이후에는 예배(禮拜)하지 말고 바로 수도(修道)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문에 이에 회문하니 만일 거행하지 않는 사람은 단단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빙자하여 교민(教民) 간을 혼란하게 하는 자는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분별하여 적에게 항복한 자와 같은 벌을 내린다. 본업이 받을 갈고 길쌈하면서 수신(修身)하는 자는 적을 죽인 자와 같은 상을 내린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그중에서도 특히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전(教錢)으로 5전씩 모두 거둘 것. 수계장(首禳長) 최(崔), 칠읍 계장 김태서.

9월 26일에는 최일서 지시로 송문여와 함께 고부읍 말목장터로 갔는데 마침 영국인 목사가 전주에서 왔기에 모두 모임에 참석했는데, 가르침 들으러 온 사람은 5~600명이었다. 영국인 목사는 “영학이라고 이름 하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분위기를 흐리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모두 소재처인 전주 완산(完山) 칠봉(七峰)으로 잡아서 보내라”고 연설하였다. 또한 이른바 7일 모임(式會)은 일단 정지하고, 돈은 한 사람당 7푼씩 거둬 그날 회비에 보태 쓰라는 내용으로 한 차례 연설하고 돌아갔다.

김태서는 이러한 조직 활동을 하면서 평민을 협박하거나 돈을 강제로 거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 귀가하자마자 영광군 순교에게 체포당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영학을 칭탁하여 방서와 회문을 붙이고 백성을 강제로 계안에 넣어 돈을 받으려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본관에 등소했기 때문이다.¹⁴⁾

14) 제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문섭(李文燮) 등이 제가 영학을 칭탁하고 평민을 협박하니 같이 살 수 없다며 그 면민(面民)으로 하여금 관에 호소하게 하여 공문이 내려왔던지, 저는 돈을 거두기 위해 나갔다가 마을 사람을 선동했다는 죄로 영광군 순교(巡校)에게 잡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899. 6. 30 전남재판소 보고)

3) 영학당 봉기의 실행

흥덕민란과 영학당 봉기는 참여 인원이 각각 300명, 4~500명으로 알려졌는데, 『사법품보』 자료에서는 그만큼 많은 인원 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다. 다만, 영학당이 최후에 점거하고자 했던 고창성 싸움에 1천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일단 자료상으로는 흥덕민란 이후인 1899년 4월 중순부터 정읍·고부에서 봉기에 참여했던 영학당 대략 40여 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영학당 봉기를 주도한 인물은 정읍 출신 최익서로 알려져 있다. 영학당 봉기세력은 “별왜별양 보국안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음력 4월 20일 고부군으로 바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군기를 탈취하였으며, 총 40여 자루, 화약 1짐, 탄환 90여 개를 획득하였다. 4월 21일 저녁 무렵 다시 흥덕군 공격시 모인 자가 100여 명. 군기고에 남아있는 무가총 10여 자루 다시 탈취하였으며, 4월 21일 밤 무장군에 진입하여 백성들에게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거사를 일으켰다.”라 효유하고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짜, 환도 10여 자루, 민가의 전채 200여 냥을 탈취하였다. 4월 22일 고창군으로 내려와 수정(藪亭)에 모였다가 고창성 전투를 시작하였으나 수성군이 완강하게 저항하여 전세가 무너지면서 결국 자체 해산하였다.

이 과정을 주도한 몇몇 인물들의 기록을 보자. 최영두는 최익서의 부친으로서 4월 18일 밤 아들 최익서와 박정집 등 30여 명과 함께 고부군으로 가서 양총 11자루, 천보총 15자루, 조총 150자루, 화약 2상자, 철환 1상자, 탄자 50개를 찾아 말5필에 싣고 귀환하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최익서는 “서울 사는 최보따리 익현이란 사람이 거사할 뜻으로 무장 등지에 통문을 보냈지만 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최영두는 “이번일은 비록 좋은 계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두령의 존재를 모르고 토색질을 주로 하니 마음이 매우 답답하다.”고 하면서 봉기 세력의 부도덕함을 걱정하고 있었다.

태인의 김상흠은 73세인데, 1849년 한성으로 올라가 내관출입번(內官出入番)이 되어 40년을 수번(守番) 중 1882년 4월 私債를 강제로 받았다는 죄로 태인현에 유배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1884년 2월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태인접주 유응로(柳應老) 포에 투탁하고 동학 소탕시 산내면에 숨었다가 1899년 4월 19일 영학 무리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鄭士國)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동학성찰직을 맡았다. 그는 나이가 많아 주문을 외우려고 모인 30여 명과 함께 “하지 못하는 바가 없고 응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알지 못하는 바가 없어 공변되고 거룩하지 아니하냐”는 등의 주문을 암송하였다.

15) 이하 내용은 제49책, 1899. 7. 12. 「전북재판소판사 이완용 보고」 제15호 ; 같은 책, 1899. 7. 15. 「전남 재판소 판사 민영철 보고」; 제51책 1899. 9. 9. 「전남재판소판사 민영철 보고서」 제80호 ; 『사법품보(乙)』 1899. 6. 10. 「전남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54호」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흥덕군 오재봉은 1894년 혁명에 참여했다가 사면령으로 목숨을 보존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음력 4월 6일 동군 삼태리 이강성이 피어 태인군 화호에 사는 김여성 집으로 가서 그 무리에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는 4월 16일 고부군이 영학당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부터 무리를 따라다니며 철창(鐵槍)을 잡고 19일의 흥덕군 공격과 군기 탈취, 20일의 고부군 진격, 21일의 무장군 공격, 22일 고창군 수성군과의 전투 등 적극적으로 투쟁에 관여하였다.

또, 동학농민군 3대 지도자 중 1명인 손화중의 5촌 조카 정읍의 손치범은 신체가 왜소하여 총약환(銃藥丸) 짐군을 지휘하여 뒤를 따라 가면서 전투에 참여했고, 다 결국 각 군에서 작경할 때 참여했고, 태인의 김선명은 동학 우두머리 임경학의 성찰직으로서 행군집사로 각처를 수행하였으며 무장의 전막동은 무장에 진격시 총을 메고 동행하고 다음날 고창전투 때 천보총한 자루를 받아 전투에 임한 인물이다.¹⁶⁾

아울러 1894년 시점에서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으나 영학당 봉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병으로 참가하지 않은 인물들도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인물들도 있었다. 고창의 김준옥은 무장현 신대동의 성재명으로부터 도를 전수받았고 장성의 임벽화도 영학당 주도인물 최익서에게서 도를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기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역시 동학도라는 죄명 하나로 체포되어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였다.

또, 정읍·고부에서 체포된 영학당 무리 중에는 하운현·김춘언·서한경·박창규 같이 이전부터 동학도였거나 영학당 봉기시 적극적으로 관군과 싸운 사람도 있었지만, 20여 명의 인물들은 모두 “동학도들의 협박을 받고 마지못해 끌려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었기에 영학당 봉기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서울까지 직향할 가능성을 애초부터 인정하기 어려웠음을 엿볼 수 있다. 개중에는 짐꾼으로 강압당한 사람, 이름이 유사해서 잡혀온 사람, 봉기 주도자의 친족으로 잡혀온 최방서와 그 동생 최동순, 봉기에 참여한 형 대신 잡혀온 사람(차봉순, 박성일, 임성진, 차병옥) 등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들도 많았다.

3. 동학 재건 활동

1) 개별적 동학 수련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도들 중에는 동학 수련에 몰두하는 인물들도 많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물들도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다거나 사악한 술수에 빠졌다거나 올바른 도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중형으로 처벌함을 찾아볼 수 있다. 충청도 청주군 서석여은 손사문 포의 접주로 도피하여 목숨을 보존하고 있다가 1896년 음력 3월 25일 강원도에서 온 강채수의

16) 이들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은 모두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 고문으로 인한 상처, 총상 등으로 사망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권유에 못 이겨 4월 1일 단(壇)을 세워 향을 피우고 『동경대전(東經大全)』을 읽어나가는 예식을 집행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속했던 김시묵은 끝내 참여하지 않고 단지 동학의 여러 물건들을 강채수에게 맡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둘 다 역종신형을 받았다가 각각 15년형, 10년형으로 감경받았다.¹⁷⁾

공주군 산내면에서도 다수의 인물들이 동학의 주문을 암송하고 제례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공주군 산내면 상소전리의 양판복과 이원보는 둘 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행패를 안 부려 목숨 보전하고 무죄로 귀가했었다. 1896년 12월 양판복은 모친 산소 이장(移葬) 건으로, 이원보는 조부 이장건으로 지관 김여실을 초빙하였는데, 둘 다 류몽석 이봉여와 함께 김여실 집으로 가서 함께 보문산 상봉에 올라 제례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¹⁸⁾

같은 시기에 충남관찰부에서는 목천·진잠·연산·문의군에 동학도의 행동거지가 수상하고 공주군 산내면이 도적의 소굴이라는 판단 하에 비밀리에 수사를 하여 권금봉·류한강·양영보·류재손·박승춘·문백권·박승운·김수산·김사범·박승렬·이흥서·이명옥·강광숙 등 15명을 체포해왔다. 이들 모두 1894년에 동학에 입도한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무고하게 체포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히 이명옥의 진술이 주목된다. 그는 “갑오년에 누가 동학이 아니었겠습니까? 소요 진정 이후에는 누군들 유도인(儒道人)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밤낮 기대어 사는 자가 어찌 한가하게 소요를 생각하겠습니까?”라며 무죄를 호소하는 항변을 하였다.¹⁹⁾

2) 1897~1898년초 동학 재건 움직임

1897년 말에서 1898년 초까지 정읍·태인 지역에서는 광주에 거주했던 김형순을 중심으로 동학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는 1894년 8월 3일 담양읍 거주 국담(또는 국흥목)이 포살당한 사건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인데, 은거해서 살다가 1897년 3월 거창 이정화, 고부 김여중과 함께 심도풍 집으로 가서 모두 함께 속리산의 이원팔을 찾아갔다. 이천의 동학 교주 최시형을 찾아가 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첩지받고 돈을 거둘 뜻으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망건 장인(網巾匠人)을 사칭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동학 재기설"을 퍼뜨린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의 도설은 이전과 다른 것이 있고 만약 잘 수양하면 재앙은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 내가 또한 그 도의 근본을 파악했다” “법헌 최시형을 만나뵈러 갔으나 그의 종적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헛된 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돈을 토색하는 것은 도적놈들 무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며, 그 도의

17) 제8책, 1896. 6. 23. 공주재판소판사 보고서 제54호

18) 제20책, 1897. 4. 6. 충남관찰사 보고 제41호

19) 위와 같음

근본을 알지 못한다. 다시 이 같은 동학 무리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따름이라”는 식의 경고를 날리면서 자기 중심으로 동학도를 모아 동학 교단을 재건하려고 한 것이다.²⁰⁾

이처럼 산소 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관을 부르거나 동학 경전을 읽고 주문을 외고자 하는 사람들은 김형순 같은 동학 재건 세력과 관련을 맺게 된 듯하다. 정읍의 심도풍은 지관을 초빙했는데 그가 주문을 읽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주문을 청해 보니 사실상 동학의 주문이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1894년 같은 화를 입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를 축출하려고 할 상황이었다. 정읍의 이내형도 심도풍의 이 같은 동학 주문 암송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를 비밀리에 순찰하면서 수사하는 관군들은 이러한 기미를 보이는 인물들을 모두 위협 인물로 지목하여 체포해 갔다.

같은 시기 경기도 이천에서도 동학 재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지역의 움직임은 동학 교주 최시형의 사위 김치구가 주도하였다. 김치구는 동학을 등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날의 도는 곧 하늘을 공경하고 선을 행하는 도였다. 이전의 공부를 다시 계속하여 믿음을 갖고 잊지 않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면서 동학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권유를 받은 이전 동학도 및 지인들은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전 동학도 이상옥은 김치구의 권유를 사양하고 물리쳤으며, 권성좌는 김치구의 외가 선산 근처에 있는 자신의 부친 선산을 지키기 위하여 동학에 입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명우는 아들 신면식이 최시형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김치구와 동서 간이 되었기에 김치구가 동학교로 복귀하라고 보낸 싸리 바구니 2짝, 보자기 1개, 임원명단 기록한 장부를 그대로 보관했을 뿐 동학에 뜻이 없다고 하였다. 김낙철도 전라좌도 두목인 임실의 김학종이 “이전 공부를 계속해야 재앙 사라지고 무병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의 청으로 김치구 집에서 기숙하며 그의 조카에게 글을 가르치고 최시형을 만나보기만 원했을 뿐 숭상한 적 없다고 하였다.²¹⁾

동학도들의 움직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체포와 처형이었다. 최시형의 체포는 그 사위 김치구 집에 고용되었던 박윤대가 친하게 지내던 송일회에게 최시형이 경기도 이천 지역에 있다는 말을 전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송일회는 이를 자기 지인 옥천 거주 박가에게 말했다가 이를 포착한 경무청 관인에 의해 박윤대와 함께 체포당해 그들이 앞장서서 원주 지방에서 최시형을 체포하게 만든 것이다. 아울러 동학도였다가 귀화한 황만기는 “의리상 대종 선생을 뵈러 가야 한다”고 하여 도망친 최시형을 찾아가 생선을 바쳤다가 체포되었다. 최시형에 대한 판결은 “처형당한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어 준다 칭하고, 1893년 그 무리 수천 인을 수궐(守闕)하여 소를 올리다가 곧바로 해산. 또 보은(報恩) 장내(帳內)에 다수의 군중을 모았던 때에 순무사(巡撫使)의 타이름으로 인하여 각자 흩어지더니,

20) 제31책, 1898. 3. 4. 「전남 관찰사 윤응렬 보고」 제14호

21) 제33책, 1898. 5. 1. 「경기재판소판사 김영덕 질품서」 제1호

1894년 봄 피고의 도당 전봉준이 고부 지방에 무리를 끌고 모아 기회를 타고 봉기하여, 관리를 때려죽이며 성진(城鎭)을 함락하여 양호(兩湖) 지방이 문드러져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으니, 피고가 이를 시키고 화응한 일은 없다고 하지만 란의 전개와 일의 뿌리를 따지면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인민을 미혹함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모든 원인을 최시형이 주문과 경전, 부적을 이용하여 인민을 선동 미혹한 행위에 있다고 교수형에 처하였다. 이와 더불어 황만기는 태100 역종신에 처했고, 박윤대와 송일회는 원래 죄는 태100 역종신이지만 최시형 체포 공로를 감안해 각각 태100 역15년, 태100 역10년형에 처해졌다.²²⁾

3) 1899년말~1900년 초 동학 재건 움직임

1899년 영학당 봉기가 관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그해 말부터 다시 동학 재건 움직임이 왕성하게 나타났다. 이 움직임은 전라도 고산·여산, 충청도 은진·연산 등지에서 나타나 정부는 보부상 조직인 상무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에는 주요한 인물들까지 체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여산의 고문선으로 1894년 동학에 입도하여 대접주로서 동년 가을 무리 1백여 명을 이끌고 전주 진영에 참여하였다. 그는 전주 읍촌 여러 부잣집에 포군을 나누어 보내고 재물을 청하여 20~30냥 혹은 70~80냥을 얻어와 접 중에 보내어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학의 도를 매우 훼손한다고 하는 백가(白哥)를 잡아와 곤장 30여 대를 때리고 방송했는데 이로 인하여 백가가 죽었고 겨울 사이에 증양군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 무리를 해산하고 여산에 은거해 있었다.

1899년 9월 임피 오성산 사는 김준희가 와서 "다시 동학을 설하면 실효를 볼 것"이라고 하여 몇 군데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동학을 재건할 뜻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권유하니 이로써 도를 받은 자가 여산 황화정(皇華亭)의 고성화, 정낙현, 정봉술, 서찬경, 이노돌, 고산 대치리(大峙里)의 김금석, 김갑동, 강윤실, 강완실, 배종갑, 은진 강경포의 류화인 등이었다. 고문선 외에도 은진 남산리의 손광현과 부안의 김여중도 당시 거물급 동학도로 활동 중이었다. 그러나 관군이 곧바로 그의 집에 가서 체포하니, 전도차첩(傳道差帖)과 염주, 투서(套署: 각종 문서양식), 하늘에 제사지내는 향축 등 도구, 모임을 약속하는 통문, 주술 부적, 경문 등 책자 등을 압수당하고 말았다. 고문선은 대명률 禁止師巫邪術條 一應左道亂正之術或燒香集衆煽惑人民爲首者律로 교수형에 선고를 받고 법부의 집행 지령을 기다리고 있던 중 신병으로 사망하였다.²³⁾

고문선과 유사하게 상무사 보부상들에 의해 체포당한 인물들이 김준홍·류덕장·김성초·장한여·이치옥·이관동·이용구 등 7명의 동학도들이다. 보부상들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고문선과

22) 『사법품보(乙)』 1898. 7. 19. 「고등재판소판사 주석면 질품서」 제12호 ; 동년 동월 동일 「고등재판소판사 주석면 보고서」 제33호

23) 제57책, 1900. 3. 15.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제1호

같이 기폭(旗幅) 2개와 모임을 기약하는 통문 묶음과 염주(念珠), 투서(套署), 주문, 부적 등의 물건을 압수하였다. 이들 중 가장 지도자급 인물은 56세의 이관동인 듯하다. 그는 박규협으로부터 도를 전수받고 1894년 8월 충청도 보은 장안평에 이사하여 최시형을 보필하고, 1898년 최시형이 처형당한 후 상주(尙州) 화룡원(化龍院)으로 이주한 후 1900년 1월 임피의 김준홍, 고산의 이용구 두 사람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권유로 2월 8일 이용구의 집을 사서 거주하였다. 이후 김준홍, 이용구 등과 함께 천제(天祭)를 지내고 다시 동학을 설할 목적으로, 충청도 정산(定山)의 신촌(新村) 김정삼의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김준홍은 장경하로부터 도를 전수받았는데, 이관동의 지시를 받고 은진 강경포의 유산춘(柳山春)이 1900년 4월 8일 전주(全州) 수하(水下) 배산(盃山) 아래 넓은 들판에서 모임을 갖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일을 상의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다시 설포한 동학의 새로운 접주가 되었다. 그가 자기 접 아래 거느린 사람은 고문선 이하 30여 명이고, 다른 무리들은 강경포 류산춘이 거느린 것이 40명 있으며. 모여서 일을 같이 꾀한 자는 익산(益山) 의동(蟻洞)의 김경재(金敬裁), 김제(金堤) 남면(南面)의 강문숙(姜文叔), 고부 남면의 홍경삼(洪敬三)과 김명중(金明仲), 부안(扶安)의 김여중(金汝仲)과 명중(明仲) 형제로, 이들이 호남 동학 중에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러나 김준홍이 급하게 무리를 불러 이관동을 찾아갈 일을 상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김준홍은 이 과정에서 “최법헌(崔法軒)께서 돌아가신 후 강원도에 있는 구암(九巖)·예암(禮巖)·송암(松巖)²⁴⁾의 삼암(三巖)이 가장 지도자(主張)들이다. 이관동 또한 주장이니 곧 각 사람들이 맡은 일의 임명장(差紙)을 반드시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할 만큼 이관동의 지위를 높이 받들었다.

나머지 인물들 중 김성초는 김준홍으로부터, 이치옥은 장경하로부터, 이용구는 은진의 조동현으로부터 각각 동학도를 전수받았다. 장한여는 1894년부터 동학도였던 인물로 김준홍 부탁으로 서찰을 은밀하게 전주의 류덕장과 김성초 두 사람에게 전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위의 고문선처럼 중죄인으로 취급받았다. 이관동, 김준홍, 류덕장, 이용구 등 4명은 고문선과 같은 죄에 해당하여 태100 역종신형 선고를 받았고, 김성초, 장한여, 이치옥 등은 중범이라 2등을 감하여 태100 징역10년 선고를 받았다.²⁵⁾

4. 사적 폭력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동학농민군의 각종 사적 폭력 사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혁명은 폭력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폭력의 위력을 맞본 인민

24) 구암은 김연국, 송암은 손천민, 예암은 손병희를 말함. 예암은 의암을 잘못 말한 듯함.

25) 제58책, 1900. 4. 2.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제2호. 이관동도 고문선과 같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신병으로 사망하였다.

은 자신에게 그동안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개별 대상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혁명 주도 세력이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때, 또는 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빈틈이 발생할 때 인민들의 사적 폭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품보』에도 이러한 동학도들의 사적 폭력 양상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적 폭력은 동학 교단과 농민군 조직의 강대한 힘을 믿고 행해졌는데, 개인적으로 맺은 원한 관계나 금전 관계, 분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찌 보면 분묘 분쟁 관련 폭력은 양반이나 관가의 위세를 빌어 평민이 억압당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안군 이학서는 동학에 투탁하여 남의 무덤을 파헤쳐 1895년 3월 보령에서 유배되었으며, 광주군 김운선 역시 동학 무리에 의탁하여 같은 시기 공주에서 유배되었다.²⁶⁾ 광주군 김중렬의 경우, 그의 조상 무덤 근처에 사족 토호 옥응문과 같은 면 이원숙이 투장을 했었다. 김중렬은 이에 분노를 느낀 끝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에 손화중 포에 투탁하여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원숙 무덤을 사굴하였다. 농민혁명이 진압당한 후 김중렬과 옥응문 두 사람은 매번 말다툼을 하였는데, 1895년 7월 중 김중렬이 남의 집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옥응문이 자기 집에 불러 “너는 동학당 무리라. 내가 이전에 동학당에게 매질당한 것, 가산 빼앗긴 것은 전부 네가 꾸민 짓이니 돈 300냥을 바치라”고 꾸짖었다. 중렬이 귀가한 이후 뒷자리를 침범당한 패악과 돈을 토색당한 수치를 생각하다가 가슴이 막히고 분해 통증, 구역질하다가 다음날 아들을 시켜 나주부 관찰사에 정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관청의 판결을 기다리다 옥응문과 말다툼한 날부터 5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²⁷⁾

서천군 구문옥 등 구씨 일족 6명과 남양 흥씨 가문 사이의 분묘 분쟁은 좀 더 역사가 길다. 전부사 흥병도는 1876년 남양부원군 장간공 흥사훈의 무덤이 상실되어 이를 찾던 중 산 아래 사는 구씨 무리가 비석을 부수고 무덤을 침범하고 압장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봉분을 고쳐 쌓고 모점(冒占)한 무덤을 파버렸다. 그때 범 죄인인 이들 구씨 무리 중 구문옥 구진구 구사희 3명은 1894년 농민혁명시 비도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족당을 이끌고 다시 남양 흥씨네 비석을 부수고 무덤을 파서 훼손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또다시 수차례 압장하며 묘사(墓舍)와 위토(位土)를 탈취하고 산소 둘레에 심은 송추(松楸)를 모두 베어 버렸다. 농민혁명 이후 흥병도는 이들 구씨 가문 6명을 관에 고소하고 압장한 무덤들을 모두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²⁸⁾

분묘 분쟁에 이어 많은 사례는 원한이 맺힌 상대방이나 관가 또는 마을에 쳐들어가 방화, 살인, 재화 탈취 등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경우이다. 보국안민의 이념과 농민군 4대 강령을

26) 제3책, 1895. 5. 5. 「完營 牒報」

27) 제4책, 1895. 9. 18. 「나주부관찰사 채규상 질품서」

28) 제26책, 1897. 10. 3 「충청남도 관찰사 이건하 보고서」 제141호

앞세운 동학도가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 안성 정천석은 자신이 거주하는 행랑채의 주인인 양성군 덕봉면 오씨 양반이 동학 접주가 되자, 그 위세를 빌어 처 상전집 딸을 빼앗고 처의 상전도 잡아다 억지로 동학에 입도하도록 명령하는 등 복수를 하였다.²⁹⁾

경기도 감영 소재지 양반 이규백이 노백용의 돈 수천 냥을 빌려쓰고 안 값은 상태였는데, 노백용이 1894년경 동학에 입도하자 마을 사람들이 노백용의 집을 부수고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백용이 이로 인해 원한을 품었는데, 그의 처남 전만철이 이규백의 조카를 잡아 타살하고 도피하였다. 이후 이규백의 형 명원이 전만철을 잡아 심문하니 전만철의 동생이 노백용을 도와 이씨 양반을 타살했다고 진술하였다.³⁰⁾

해주군 마산방 김선장은 동학도로 농민혁명 시기에 임종현(林宗鉉)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라 칭하며 수대산(壽大山) 108형제라는 이름으로 무리를 모아 마을에 횡포를 부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일본군이 해주부로 내려와 주둔하면서 이들을 토벌하기 시작하자 김선장은 몸을 숨기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는 1896년 1월경 다시 순포(巡捕)라 가칭하고 가난한 마을과 고립된 섬에 수시로 출입하여 종종 포악하게 행동하는 폐해가 매우 많다는 소문이 들려 해주부에서 체포하여 교수형을 집행하였다.³¹⁾

1895년 1월 재령(載寧)의 동학도 수백 명이 봉산군 사원참(沙院站)을 침탈하여 만나는 대로 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을 지르며 끌고 지나갈 때에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고, 불에 타 버린 민가가 300여 호였다. 이때 화포수였던 이원조(李元早)는 평소 원한 관계가 있던 송상원(宋相源)·김기성을 총살하였다. 또, 송상원이 가지고 있던 은화 250원 가운데 30원은 그가 가지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체포된 이후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만번 죽어도 애석할 것 없다고 했으나 설사병으로 사망하였다.³²⁾

1894년 12월 장흥군 수성군 작대군(作隊軍)이었던 최창범은 동학도 무리의 기세가 성한 것을 보고 밤에 몰래 적에게 투항하여 적을 인도하여 길을 가르쳐주고 성을 함락시킬 때 성에 먼저 올라섰으며, 강진군(康津郡) 및 강진병영(兵營)의 성이 함락될 때에도 선봉을 섰다. 그는 1897년에 가서야 체포되었는데, 이때 그가 여동근(呂東根)과 이태문(李太文)을 포박하여 성밖 10리 부근 모정(茅亭)에서 일시에 살해한 죄상이 드러났다.³³⁾

29) 제2책, 1895. 1. 26. 「關 安城」

30) 위의 책, 1895. 5. 6. 「畿營報內部而來牒」

31) 제9책, 1896. 7. 22. 「해주부 관찰사서리 해주부 참서관 김효익 보고」 제38호. 체포된 이후 김선장은 같은 해 9월 19일 교수형으로 처단되었다(제13책, 1896. 9. 9. 「황해도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455호).

32) 제13책, 1896. 8. 31.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3호 ; 1896. 9. 16. 「황해도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453호 ; 1896.9.19. 「황해도관찰사 민영철 보고」 제455호.

33) 제26책, 1897. 8. 24.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렬 보고서」 제34호

위와 마찬가지로 1894년 농민혁명 시기에 저지른 사적 폭력의 주범이 뒤늦게 체포되고 재판된 사례들이 있다. 예산군 임사원은 동학도가 창궐할 때 입도하였다. 복주원 이광손 유치덕 등 수백 명이 양반 김씨 집에 쳐들어 갔을 때 양반 김씨 집 임산부가 낙태하면서 사망하고 젓먹이 아이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범인으로 지목된 복주원은 관군에 붙잡혀 처형되고 유치덕은 무죄 석방되었지만 이광손과 임사원은 도피하였고 1898년에 가서야 임사원이 체포된 것이다.³⁴⁾

충주군 김봉순 김원오 등 8명은 농민혁명 좌절 이후 적당으로 변신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봉순은 동학도가 창궐할 때 그 기세를 타고 자기 배우자인 임충주댁 여종을 빼앗아 도주하였다가 1894년 10~12월 적당 무리 8명을 이끌고 마을에 돌아와 돈과 재물을 탈취하기 시작하였다. 음죽 고작동(古作洞) 박춘서 집에 가서 쌀 1석과 백목 1필을 탈취하여 나누어 쓰고, 같은 달 30일 같은 무리가 천안 불당리의 김원서 집에 가서 당오전 700냥을, 같은 해 11월 24일 죽산 이부장(二釜場) 터 김성악 집에 가서 당오전 245냥을, 12월 24일 죽산 시두천(柴豆泉) 박춘명 집에서 당오전 440냥과 면주(綿紬) 1필을 탈취하였다. 1897년 12월 29일 죽산 주례장(酒醴場) 터 박춘명의 집에 가서 쌀 12두를, 1898년 정월 28일에 원당리 이학길의 집에 가서 쌀 10두를 탈취였다. 결국 1898년 1월 감미면 월동 주점에 머물다 성난 동민들에게 체포당한 것이다.³⁵⁾

사범품보에 실린 사례 중 가장 극적인 사건은 1898년 담양의 국재봉·국재준 형제가 부친 국홍묵을 죽이는 데 단서를 제공한 동학도 정인악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초 국홍묵은 1894년 8월 담양군 용귀동 접주 김형순·김문화 등에게 피살되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1898년 정월 전라북도 암행어사가 붙잡아온 김형순을 체포하여 담양군으로 넘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국재봉 형제가 정인악도 붙잡아다 놓고 김형순에게 부친 살해 이유를 물으니, 김형순은 당시 정인악이 자신에게 “국홍묵이 동학 집강 자리를 얻으면 용귀동 접을 도륙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에 분노한 김형순이 다음날 활터에 무리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국홍묵을 잡아와 총살했다는 것이다. 이후 관찰부 명에 의해 김형순과 정인악을 압송해 가기로 한 날, 국재봉 형제는 김형순에게 한 번 더 동일한 질문을 하고 김형순이 답변을 하자마자 정인악을 홍살문 앞으로 끌고가 그의 배를 가르고 칼로 머리를 베었다.³⁶⁾

『사범품보』에 이 사건에 관련된 기록은 더 이상 없지만, 전라북도 동학도 내부에서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되는 점은 근대

34) 제37책, 1898. 8. 31. 「충청남도재판소 판사 정주영 보고서」 제102호.

35) 제31책, 1898. 2. 26.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역 보고서」 제17호.

36) 『사범품보 (乙)』 1898. 11. 「고등재판소 재판장 한규설 질품서」 제14호 ;

적 재판제도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살인범 피의자를 피살자 아들 형제가 개인적으로 복수 살인을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부에서는 국재봉은 태100 징역종신형, 국재준은 태100 징역15년에 처했으나, 고종의 특지에 의하여 국재봉은 징역 10년으로 감하고 국재준은 두 아들 모두 징역 사는 것은 흠홀에 맞지 않다고 하여 특별히 방송하는 은혜를 받았다.³⁷⁾

5. 동학도의 외래 종교로의 전향

동학도 중 일부가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서양 종교로 전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³⁸⁾ 『사법품보』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세 가지 찾아볼 수 있다.

금구의 황처중과 박사옥 두 사람은 모두 본래 동학도였다가 일찍이 귀화하였고, 그 후에는 천주교(西敎)라고 빙자하고 각지에 출몰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났으니 변명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다.³⁹⁾

서천군의 서창길은 동학도 소요에 참여하여 관장 능욕과 백성 침학을 하고 유한표는 수군과 육군의 군기를 탈취하고 남비(南匪)와 합심하여 여러 성을 재앙에 빠뜨렸던 인물이었다. 이후 이 둘은 천주교(서학)에 입도하여 서천군을 전복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다시 관찰부의 심문을 받았다. 관찰부에서는 이들에게 원한을 갖는 조경선과 윤사평의 무고일지 모르므로 감옥에 얽히 가두어 둔다고 법부에 보고하면서 처분을 요청하였다.⁴⁰⁾

양성군 홍병섭은 동학 잔당으로 의병으로 옮겨갔고 의병이 국왕의 명을 받고 해산하자 다시 개신교(야소교)로 옮겨 들어간 교두(敎頭)였다. 그는 용인 사는 김준희와 함께 어울려 불의를 자행함이 극심하여 양성군과 용인군 백성 모두가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원망하였다. 홍병섭은 개신교를 빙자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재물을 약탈함이 동학과 의병 때보다 더 심한 바, 양성 노곡 이보경의 답토 15두락, 농우 1필을 탈취한 사건이 널리 알려져 체포되었다. 경기 재판소에서는 태100 징역종신형으로 의율하였으나 법부에서는 김준희보다 범죄가 약하다고 하여 태100 징역3년으로 감경하였다.⁴¹⁾

37) 『법부기안』(奎 17277의2) 제37책, 1898. 12. 21. 「지령 고등재판소건」; 제38책, 1899. 1. 17. 「훈령 고등재판소건」

38) 이영호, 「농민전쟁의 계승과 그 계보」 『역사연구』 27, 2014, 193~194쪽.

39) 제14책, 1896. 10. 16 「전북재판소판사 윤창섭 보고서」 제527호.

40) 제17책, 1897. 1. 23. 「충청남도 관찰사 이건하 보고서」 제10호.

41) 35책, 1898. 7. 4. 「경기재판소 보고」; 『법부기안』 제32책, 1898. 7. 8. 「지령 경기재판소건」

6. 맺음말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교의 개설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를 위해 ‘보국안민’ 등의 이념을 내걸고 민족의 근대화를 개척해 나갔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왔고, 어느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는가? 흥선대원군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동학 교단 내부의 갈등은 어느 정도였는지? 일반 동학도 내부의 갈등 대립 또는 동학도와 그 침탈을 받은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은 더 이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듯하다. 즉, 일정 부분의 성역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게 된 순간, 역사학은 인간 해방을 위한 학문이기를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에게 순종하는 지식 생산 도구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사법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에 대한 토론문 1

한 보 람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사법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에 대한 토론문

한보람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사법품보』는 ‘서민들의 실록’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공식적인 왕실 연대기나 지배층이 생산한 문서가 기록하지 못한 민중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사료로서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판소에서 올라온 실무 기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당대 기층사회의 동향과 갈등 양상, 민중의 저항, 여론의 향방 등이 입체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법품보』는 시기적으로 갑오년부터 광무 연간까지를 망라하고 양적으로 총 180책이라는 거대 분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자료입니다. 최근 『사법품보』(갑) 122책에 대한 역주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기는 했지만 방대한 분량과 사료 체계의 이해 부족 때문에 여전히 쉽게 다가가는 힘듭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사법품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와 그 이후까지 동학도의 동향에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지형에서 동학도의 활동 양상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사법품보』에서 확인되는 동학도의 활동을 반정부 활동, 동학교단 재건 활동, 사적 폭력, 외래종교로 전향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법품보』를 통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후속 연구들의 기반 마련과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높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사법품보』 속 동학도의 활동을 통해 토론자 역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면서 토론에서는 발표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동학농민혁명 이후 상황에 대한 조명과 정리

『사법품보』는 갑 1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이 모두 1895년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 상황과 동학도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도가 높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법품보』에 등장하는 영학당 관련자 문서들을 통해 영학당 봉기의 준비와 실행과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법품보』에는 영학당 외에도 활빈당 등과 같이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영학당의 경우 김태서가 동학 접주 이은중(李恩仲)에게 도를 전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직접적으로 동학과

영학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고 있지만, 당시 적지 않게 나타나는 화적 혹은 비도와 관련된 사건들 중에는 비록 동학에 대한 직접적 진술이 없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영향 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도 다수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에서도 제시해 주신 것처럼 관군이 비밀리에 순찰하며 동학도의 기미를 보이는 인물들을 수사하거나 보부상 조직 상무사를 통해 정부에서 동학의 재건동향을 파악해 주요 인물을 체포하는 현실에서 동학을 내세우며 활동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 도적으로 치부되었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또 영학당 이외에도 그와 비슷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사법품보』에서 더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동학 여당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 고찰

발표문에서 『사법품보』에는 형사사건의 형량을 경감할 만한 때 또는 법률 적용상 의의가 생길 때 사건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질품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법품보』속 논의들을 통해 당대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청과 국가의 인식과 판단을 살펴볼 수 있고, 이는 동학과 동학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학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태도, 처벌 양상을 『사법품보』를 통해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품보』를 검토함으로써 동학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처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또 동학농민혁명 이후 장기간에 걸친 국가의 태도 변화 양상도 고찰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남궁탁과 이원철이 결세 부과에 항의하며 세무주사를 구타한 사건에 대해 비적 무리의 잔당이라는 죄목은 용서할 만한 것으로 넘어간 관찰사 서리의 태도는 아주 흥미롭습니다.(각주11) 관찰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동학의 재건동향을 비밀리에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자 했던 국가의 태도와는 차이가 나는 듯도 보입니다. 일본의 개입 여부와 조선정부의 입장, 중앙과 지방관아의 시각차, 지방관 개인의 판단 차이 등 『사법품보』에 비쳐지는 국가의 판단과 처벌이 시기, 단계, 판단주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면 당대의 현실을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품보』를 통해 이러한 측면을 검토해볼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3. 동학을 빙자한 사적 폭력의 서술

동학도의 사적 폭력에 대해서도 발표문에서 비중 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농민혁명의 과정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적 폭력 양상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만 혁명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행동 양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당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갈등 양상과 역사적 변화상까지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민군 조직의 힘을 믿고 일어난 사적 폭력 관련 사건이 『사법품보』에 다수 등장하는 점도 발표문에서 지적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한 역사 서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선생님의 견해를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사법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에 대한 토론문 2

김기성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사법품보로 본 동학도의 활동”에 대한 토론문

김기성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이 논문은 『사법품보』에 실려 있는 동학도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동학에 대한 진압과 체포의 시각에서 사법적 기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분석이 부족하거나 관심의 밖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다만 글을 읽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이 들었다.

○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활동’에서의 의문

이 논문은 동학도의 활동을 ‘반정부활동’, ‘동학교단 재건 활동’, ‘사적 폭력’, ‘천주교·기독교 등 외래 종교로의 전향’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부여하면서 각 절에 활동을 세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적 폭력의 경우에는 첫 부분에 사적 폭력을 왜 분석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분류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은 2장 1절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에서 두드러진다. 우선 다른 장절에서는 주로 2차 봉기 이후의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차, 2차 봉기를 포함하여 활동을 분류한 것 같다. 그런데 1차 2차 봉기는 기본적으로 반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차 2차 봉기를 포함하여 반정부활동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으면 봉기에 참여하였던 모든 동학도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정부활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2차 봉기 이후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즉 2차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정부적인 활동을 지속했던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백낙희는 해주부 공략을 시도했고, 남궁탁과 이원철은 세무주사 및 세무시찰관과 갈등을 겪었다. 박만귀 역시 의병에 가담했다가 품팔이를 하던 중에 발각되었다. 여기까지는 반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만귀와 백낙희를 같은 계열로 묶는 것이 옳은가? 백낙희는 김구를 비롯한 동학의 여러 인사들과 관련된 인물이다. 박만귀가 가담했다는 의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의병과 동학은 기본적으로 지향이 다른 존재들이다.

이어서 승려 응운은 도망다니다가 체포를 당했고, 김순여, 황준삼, 백낙중, 이경태는 나주(羅州)의 소요 때에 다시 옛 습관에 따라 사발에 물을 떠서 하늘에 축원하고 머리를 모으고 주문을 외우다 발각되었다. 뚜렷한 반정부활동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김순여 등은 ‘개별적 동학 수련’과 유사하다. 또한 표영조의 경우는 2차 봉기 이후로 보면 사적폭력과 차이도 불분명한 것 같다. 물론 동학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만큼 이들의 활동을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2장 1절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활동’의 경우는 다른 장절과 구분했을 때 사례들이 지나치게 분산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영학당을 동학의 이단으로 볼 수는 없는가?

동학은 기본적으로 구세사상으로 사회개혁의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민중’의 요구와 열망 즉 기저에 흐르는 불만, 욕망, 울분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개항기는 사회적으로 혼란기였다. 따라서 백성들은 혼란의 시기에 종교적 공동체가 제공하는 보호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다양한 근대 신종교의 탄생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동학 역시 이러한 흐름속에서 탄생하여 대규모 교단을 이루었다. 교단의 확장 과정에서 분화와 이단의 출현은 기독교, 불교 등에서도 보이는 종교가 가지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경달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분석하면서 남점이 가진 이단성에 주목한 바가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영학당의 존재가 주목된다. 영학당을 동학의 분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단적 존재로 분석할 수는 없을까?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학과 개신교, 천주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영호가 분석한 바가 있다.²⁾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신교,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학에 대립하는 의미가 있고, 초기 동학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영학당에서 동학과 기독교가 결합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영호에 대한 서평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에서 거룩, 일용, 천국, 육신, 성령 등 기독교 용어도 받아들이고 매주 일요일마다 주기적인 예식을 치렀으며, 기독교의 십일조와 견줄 수 있는 성미 제도도 만들었다. 무엇보다 신앙의 대상 측면에서 동학·천도교의 ‘시천주=한울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통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있었다.³⁾ 물론 문명개화노선으로 전환한 손병희는 천도교와 동학의 단절을 시도했기는 하지만 동학과 개신교, 천주교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영학당을 기독교를 일부 수용한 동학의 이단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연구를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을 조선후기 이래 민중의 혁명적 성격이 폭발하는

1) 조경달, 2008,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2) 이영호, 2020,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푸른역사.

3) 도면희, 2020, 「변혁운동 관점에서 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호관계 - 이영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푸른역사, 2020, 『내일을여는역사』 79,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최고점이자 비극적 결말로 보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에 이르는 긴 호흡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 역시 1차 2차 봉기 이후 연결의 측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외세에 대항하는 동학 교단의 대통합이 아닌 분화와 발산의 측면에 주목하여 영학당 그리고 천도교 등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또한 5장인 ‘천주교·기독교 등 외래 종교로의 전향’은 다른 장절에 비하여 사례도 빈약하고 분량도 적다. 따라서 동학의 분화와 이단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영학당은 물론이고 외래종교로 전향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 진압과 체포의 기록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지역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 논문에서는 호남, 호서 지방의 사례가 중심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00년대 이후 동학의 중심은 호남, 호서에서 관서지방으로 중심이 변경된다. 이러한 동학의 중심지 변화와 『사법품보』에 기록된 진압과 체포의 사례는 어떻게 연결하여 서술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 주도의 진압과 체포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진압과 체포의 과정에서 향촌사회의 동향 즉 당시 향촌사회에서 동학관련 혐의가 일종의 주홍글씨가 되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강일순의 증산교, 차경석의 보천교, 김연국의 상제교 등 동학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근대 신종교들이 동학의 중심이 관서로 넘어간 이후 모두 호남과 호서지역에서 발흥했다. 따라서 호남, 호서지역에는 앞에 언급했던 ‘민중’의 기저에 흐르는 불만, 욕망, 울분 등 및 사회적 혼란기에 종교적 공동체의 보호를 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호남, 호서 지역에서 동학의 배척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진압과 체포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사적 폭력이 가지는 대한 의미

개인적으로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를 끈 부분이 바로 ‘사적 폭력’이다. 사회개혁 혹은 혁명과 폭력의 관계는 역사학을 넘어 인문학 전체의 연구과제이기 때문이다. 2004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폭력성을 부정하는 움직임은 두드러진다. 이는 12.3 계엄에 대한 반대 집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민중의 폭력에 대한 거리두기는 최근 이수걸이 분석한 공주 점거투쟁을 O/A 운동으로서 바라보는 연구⁴⁾에서도 유사한 것 같다.

4) 이수걸, 2024, 『1894년 남북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역사비평사. 이러한 점은 의려에 집중하며 여러 전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김현주의 서평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김현주, 2025, 『어셈블리라는 렌즈로 본 동학군의 ‘1894년 의거’ : 『1894년 남북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이수걸, 역사비평사, 2025)』, 역사비평 151, 역사비평사).

하지만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 조경달도 민중 폭력은 지배 계층에서 제거하고 싶겠지만 제거할 수 없는 민중의 기본적 속성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 따라서 사적 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에 대한 거리두기는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폭력과 관련하여 지젝은 발터 벤야민의 폭력 개념을 빌려와 신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다.⁶⁾ 그는 신적 폭력을 “기존 체제의 근본을 전복시키는 급진적 개입”으로 긍정한다. 즉 단순히 폭력의 옹호가 아니라 기존 체제와 법의 위선성을 드러내는 급진적 해방의 실마리로서 폭력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의 주체는 개별적 주체가 아니라, 익명의 집단적 주체 또는 무명성에 가까운 존재 군중, 민중, 다중 또는 체제 바깥의 억압받는 자들, 버려진 자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학도들의 폭력을 분석할 수는 없을까. 필자는 이들의 사적 폭력을 개인적 원한, 금전 관계, 분묘 분쟁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 욕심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향촌질서 하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던 욕망, 욕구들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가. 즉 기존 질서에 대한 타격이라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경달 역시 위의 글에서 폭력적 상황에서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억압 관계들이 드러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물론 이들의 폭력을 무한히 긍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들의 폭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서두 부분에 사료의 의의를 좀 더 보강할 필요

서론의 역할을 하는 1장에 보면 『사법품보』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 충실히 다루고 있다. 하지만 동학도의 활동 사례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는 서술이 부족하다. ‘반정부활동’, ‘동학교단 재건 활동’, ‘사적 폭력’, ‘천주교·기독교 등 외래 종교로의 전향’이라는 기준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서도 동학도의 활동 자체에 대한 필자 나름의 의미를 서론 부분에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5) 조경달, 2012, 「민중의 폭력과 공론」, 『식민지기 조선의 지식인과 민중 : 식민지 근대성론 비판』, 선인.

6) 슬라보예 지젝, 2011,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주제발표 2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

왕 현 종

연세대학교 교수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

왕현중

연세대학교(역사문화학과) 교수

1. 머리말
2.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확산과정
3. 갑오 정권의 농민군 탄압과 동학농민군의 대응
 - 1)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에 대한 조선·일본의 진압과정
 - 2) 붙잡힌 동학농민군의 비사법적 처벌(‘효수’를 중심으로)
4. 갑오개혁의 사법 개혁 조치와 농민군 처형의 편파성
 - 1) 갑오개혁의 사법 제도의 개혁 이념
 - 2) 1895년 이후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의 처벌
5.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농민군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 저서와 논문에서는 민중적 민족주의의 운동으로 강조해 왔다.¹⁾ 1894년 9월부터 본격화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침략에 맞서는 반외세 민족운동으로 평가된다. 동학농민군은 조선 국왕을 비롯한 집권양반세력의 협조 아래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일본에 맞서 ‘척왜양’이라는 대의명분을 견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2차 봉기는 1차 봉기에서 기치로 내세웠던 ‘보국안민’의 전국적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1894년 9월 이후 전개된 조선정부의 군대가 일본군과 공동으로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압살했는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는 주로 전국적인 상황과 지역적인 탄압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무도한 학살을 자행하는 지방군과 민보군 등의 토벌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²⁾

1) 김용섭, 1958 「동학란 연구론」 『역사교육』3, 1958 ; 정창렬, 「동학과 농민전쟁」 『한국학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1 ; 안병욱,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현황」 『한국근현대연구입문』, 역사비평사, 1988 ; 한국역사연구회, 1995 『1894년 농민전쟁연구』(1~5), 역사비평사, 1995 ;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회, 1996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1~30), 사운연구소.

2) 1894년 당시 조선정부 및 일본의 동학농민군 토벌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朴宗根, 『일청전쟁과 조선』(靑木書店, 1982, 번역본, 일조각, 1989) ;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岩波書店, 1998, 박명수 옮김, 역사비평사, 2008) ; 배항섭,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개입과 그 영향」 『군사』 53, 2004 ;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정부·일본군대·지방 민보군 등이 수행한 동학농민군 탄압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규명해 왔으나 전반적인 학살의 양상과 전시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³⁾ 예컨대 동학농민군에 대한 토벌은 위로부터 국왕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이었다는 측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더구나 향촌사회 지배권력층에 의한 자의적인 폭력의 양상에 주목하였을 뿐,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갑오개혁의 근대 개혁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의 폭력적 진압이 어떤 역사적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지적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학농민군의 학살은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전근대적인 학살 양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근대 재판소 제도 등 사법제도 도입과 더불어 근대 시민사회로 이행하려는 시민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갑오개혁이 근대 사법 개혁의 미명하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⁴⁾

다음에서는 동학농민군 토벌과정에서 이루어진 잔학한 처형과정 중에서도 동학농민군 ‘거괴(巨魁) 지도자에 대한 효수(梟首) 처형’실상을 초점으로 하여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선 동학농민군 토벌과정에서 사법적 조치의 변화를 크게 2시기로 나누었다. 즉 2차 봉기의 발발 이후 전국적인 토벌이 이루어진 시기, 그 이후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재판시기로 구분하여 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1895년 근대적 재판소 제도의 수립 이후 동학농민혁명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비리 관료층에 대한 처벌은 도외시한 채,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폭력적·사법적 조치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54, 2005 ; 신영우, 「1894년 日本軍 中路軍司의 鎮壓策과 東學農民軍의 對應」 『역사와실학』33, 2007 ;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실학』 35, 2008 ; 신영우, 신영우, 「1894년 日本軍中路軍의 鎮壓策과 東學農民軍의 對應」 『역사와 실학』 33, 2007 ;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 姜孝叔, 「청일전쟁기 日本軍의 東學農民軍 鎮壓」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6,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 ;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 일본군의 생포농민군 처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2007 ; 강효숙,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중탄압-日本軍의 ‘非合法性’을 중심으로」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문명론적 인식의 형성과 성격」 『역사문제연구』26, 2011 ; 井上勝彦, 『明治日本の植民地支配-北海道から朝鮮へ』岩波現代全書, 2013 ;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 107, 2017.

3) 왕현종, 「조선정부의 농민군 진압 지휘 체계와 진압 과정」 2016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2016.10.6.발표문 참조) ; 왕현종, 「동학 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2015.11.13. 발표문 참조)

4) 왕현종, 『민중을 바라보는 방법』(소명출판, 2024) 제3장 민중운동의 성장과 민중 주체 인식의 변화, 238~289쪽, 참조.

2.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확산과정

1894년 7월 초(음력)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6월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충청도 아산 전투에서의 일본군 승리 소식을 듣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이에 대하여 7월 17일 무주집강소에 보내는 통문에서 첫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사료 1-가] 무주에 보낸 감결(甘結 茂朱)

“지금 7월 초 6일 전봉준과 그의 학도들은 순영문에 와서 모여 참된 마음으로 모두 제거한 후에 또한 열읍의 집강과 굳게 약속하고, 통문을 지어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만히 그들의 통문을 보니, 말이 실심(實心)에서 말미암아서 나왔으며, 모두 사리에 합당하고 간절하였다. 자세히 살펴서 반드시 모든 것을 극진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대개를 들어서 다음에 기록한다. 이에 다시 감결을 내니 도착한 즉시 한문과 한글로 번역하여 베껴서 마을에 게시하고 대소의 민인들이 경계하고 두려운 듯이 거행하게 하라. (하략).....1894년 7월 8일 도순사(都巡使)⁵⁾”

위 감결은 1894년 7월 초 6일에 전라도 감영에 전봉준과 그의 학도들이 와서 통문을 전달했다는 경위를 밝힌 것이다. 전봉준이 여러 읍의 집강과 함께 통문을 지어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통문을 “말이 실심(實心)에서 나왔으며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도 차원에서 다시 감결을 내어 한문과 한글을 번역하여 각 마을에 게시하도록 하여 대소 민인들이 경계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라감사 김학진은 ‘종전과 같이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진동학(眞東學)’이라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힘을 합쳐 관에 바쳐야 하며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 뒤에 붙어있는 후록에는 “지금 우리들의 이와 같은 거사는 오로지 백성을 위하고 폐해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들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 교묘하게 속여서 여기저기서 함부로 날뛰고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백성을 괴롭히고 포악하게 행동하여 마을에서 잔인하게 상처를 입히고 있으며, 자그마한 혐의가 있거나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봉해 두었다가 반드시 갑작스레 보복하였다. 이는 덕에 반대되고 선을 해치는 무리이다. 각 읍의 집강들이 자세히 살펴서 금단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거두어들이던 포, 창, 칼 말의 수효를 기록하면서 소유한 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자세히 적고, 책자를 만들어서 관에 바치게 하였다. 이때 책자를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순영에 올리고, 1건은 각 집강소에 두어 근거로 삼기로 하였다.

5) “今初六日 全琇準與其學徒來會營門 實心悉除後 又定牢約 于列邑執綱 著成通文云 而第所其通文見之 則言由實心事 皆停當懇切 周詳靡不庸 極故舉其概錄于左 茲更發甘到 卽眞諺讎騰揭付 坊曲俾大 小民人警惕舉行爲旆....(하략)”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1996, 『隨錄』 「茂朱執綱所」(갑오 7월 17일)(『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5)』, 이하 『사료총서』로 통칭, 사운연구소, 278~279쪽).

이후 전라도 관찰부는 53개 주에 감결(甘結)을 보냈다. “지금 동학도들이 올린 원정(原情)을 보니, “일제히 감화되어 예전에 살던 곳으로 귀가하여 살고, 가지고 있던 포와 창은 거두어 영문(營門)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화한 사람을 도리어 비도(匪徒)라고 하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생업을 잃은 적과 불항배(不恒輩)들은 수시로 추적하여 썩을 제거하고 금지시켜 소요를 일으킬 수 없도록 해야 하나, 이는 우리들이 할 바가 아닙니다. 장차 ‘저들 무뢰배들을’ 단호하게 철저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후속조치를 담고 있는 <감결>은 전라감사 김학진을 대신해서 김성규(金星圭)가 지은 것이었다. 후속 감결은 전봉준 등 동학도가 취한 포와 창 등을 영문에 반납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신에 동학도를 비도(匪徒)라고 한 부분에 대해 무뢰배들로 철저히 금지시키겠다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일부 들어준 것이었다. 또한 “일부 부랑배들이 동학에 적탁(籍托)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⁶⁾

이 감결에서는 정확한 발포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1894년 음력 7월 6일 이후 17일 전후의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전주화약 이후, 1894년 5월 중순 이후에서 수행되었던 관민상화(官民相和)의 협치가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봉준 등 농민군지도부에서 일본군의 왕궁점령 사건과 청일전쟁의 초기전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관해서는 명확한 장소와 시점을 밝혀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컨대 <전봉준 공초>에 의하면, 7월에서 8월간으로 명확하지 않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본군의 침략사실을 들은 장소도 전주가 아니라 남원에서 들은 것으로 보인다.⁷⁾ 이후의 과정에서도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교류와 신뢰를 통해서 전라도 일대의 행정권을 함께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이후 전봉준의 대응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음 사료이다.

6) 「甘結五十三州」(開國 503년 甲午 7월), 『草亭集』 12권(중 7권의 「公文」). 해제에는 “甘結五十三州」는 7월 1일경에 발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과의 협의를 통해 집강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직전의 甘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앞서 사료1의 시점이 7월 6일인 것으로 보아 이후에서 7월 17일 무주 집강소 통문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7) 「전봉준공초」에 의하면, 처음에는 “問 日兵之犯關 聞於何時오 供 聞於七八間月이외다 問 聞於何人고 供 聽聞狼藉 故自然知之외다”라고 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다음에는 “問 日軍之犯關 聞於何處何時 供 七月間始聞於南原地”와 같이 남원에서 비로소 확실한 내막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8) 최경선 등 40여명과 함께 7월 6일경 전주로 가서 김학진을 만났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김학진과 담판 끝에 이때 “觀察使相議 官民相和之策 許置執綱于各郡”이라하여 다시 한 수준 높여 집강소를 인정받았으며 守城의 임무를 맡기로 하고 전라도 감사로부터 전라도 일대의 행정권을 이양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학진은 53주에 내린 감결에서 “今此革舊自新 可見天 彝之良心 自此以後 俱是改過之平民 切勿以舊愆指目”이라하여 전봉준의 뜻을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써 그의 입지를 강화해 주었다(『隨錄』 茂朱甘結 7월 8일자, “至於定執綱 設其禁斷之舉 而爲守土者 反爲袖手 興言及此 寧不寒心”(『梧下記文』, 2필 64~65쪽).

[사료 1-나] 무주 집강소(茂朱 執綱所)⁹⁾

방금 외적이 대궐을 침범하였으며, 임금께서 옥을 당하셨다. 우리들은 마땅히 죽을 각오로 일제히 나아가라. 저들 외적들이 바야흐로 청국의 군사와 함께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데, 그들 군대가 매우 날래고 민첩하다. 지금 만약 갑자기 싸우게 되면 그 화는 예측할 수 없어서 종사에 미칠 수 있을 듯하니, 물러나 잠적하는 것만 못하다. 시세를 본 후에 기운을 북돋아주어서 계획을 실천한다면 만전을 기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중략)..... 1894년 7월 17일 영하(營下)에서. 좌우도소(押) 도서(圖署). 좌우도(左右道) 도집강(都執綱)

이 <통문>(7월 17일자)에서 전봉준은 “바야흐로 왜구(倭寇)가 궁궐을 범하여 국왕을 옥보였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사태의 진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화가 종사에 미칠지 (모르니) 물러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력을 모아 다음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만전지책(萬全之策)’이라고 당부하였다.¹⁰⁾

이렇게 두 개 사료[사료 1-가, 1-나]를 비교하면, 앞서 7월 초 6일 이후 17일까지도 전라도 내부 각군의 소란을 방지하고, 기존의 무기류와 말들을 관에 귀속시키면서 명부를 작성케 하였으며 관내 집강소를 통해 농민군에 대한 내부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7월 말까지는 전라감사와의 약속에 따라 관민상화책에 기대어 농민들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포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언제 재봉기의 결정을 한 것일까. 어떠한 정치적 상황 변화를 계기로 했을까.¹²⁾ 우선 당시 조야의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갑오개혁 정부는 1차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책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민란이나 농민봉기군에 대한 진무(鎭撫)대책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었다. 7월 9일 정부 개혁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학부협판겸 의원인 정경원(鄭敬源)이 삼남선무사(三南宣撫使)로 되고

9) “[茂朱 執綱所] 方今外寇犯 闕 君父見辱 吾儕當齊赴死義 而彼寇方與清兵交敵 其鋒甚銳 今若遽然爭抗 其禍不測 似及於宗社 不如退潛以觀時勢 然後勵其氣 而就其計爲萬全之策 望須發通境內各接主 面面商議各安其業 切禁境內 胥動之類 無使橫行閭里 以致騷動切望 如是申飭之後 此弊不悛 則該執綱之報 營嚴處 斷不容貸 該接人犯禁者 當施不容之罪 勿泛勿泛焉 甲午七月十七日在營下 左右都所 圖署刻 左右道 都執綱”(이는 무주 집강소의 ‘통문’으로 鎭(闕)과 군(君) 글자 위에 한 칸을 띄우고 쓴 점이 특이하다. 군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주내 각 접주들에게 소통을 일으키지 말고 통솔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10)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1996, 『隨錄』 「茂朱執綱所」(갑오 7월 17일)(『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5)』, 이하 『사료총서』로 통칭, 사문연구소, 278~279쪽).

11) “東道之全祿道(전죽도의 오류인 듯)上來自現於會議處 故萬端開諭 必使國效忠 期有息擾之方 則終當授職云 泉道答曰湖南事渠既擔當 使之解散 然稱義兵倡起 則此不能禁止云云 仍即下送湖西之擾徐丙鶴 朴東鎭兩人 擔當止擾云 庶可以無事 然未知其信然耳”(『수록』 서울에서 보낸 기별[京奇] 참조).

12) 흥선대원군의 동학효유문과 밀사에 의한 중앙정계 동향에 대한 파악은 이후 2차 봉기의 시기와 목표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도 있지만 이는 간접적인 영향이고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 할 수 있다(양현종, 「갑오정권의 개혁정책과 농민군 대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502~504쪽).

26일에는 도헌(都憲) 이중하(李重下)가 영남선무사(嶺南宣撫使)로 되어 선무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활동은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8월 4일 선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도선무사(都宣撫使)의 파견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8월 24일에 이르러서는 삼남지방의 농민군에 대한 선무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평가로 바뀌었다. 정부의 일각에서는 선유와 진압, 토벌을 겸비하되 토벌에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탄압의 방침을 바꾸려고 하였다.¹³⁾

이에 반대하여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이때에도 농민군 토벌에 완강히 반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민군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대원군은 각지에 소모사, 선무사라는 이름으로 동학도 진무를 가장하여 충청도의 양반토호와 전라도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밀서(密書)를 보내 봉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었다.¹⁴⁾ 이는 대원군의 고도의 양면전략, 즉 한편으로 농민군을 효유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농민군의 봉기를 부추겨 이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방식이었다.¹⁵⁾

한편 농민군의 재봉기 징후가 8월 말 이후 각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8월 25일 김개남의 주도하에 농민군 5만여명이 남원에 모여 대회를 열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공주근처에서 충청감영의 관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8월 하순에는 충주지역에서 농민군이 일어났다. 경상도에서도 8월 하순경 60여 지역에서 농민들이 일어났다고 중앙에 보고되었다. 문경에서도 농민군 600여명이 일본 병참부 공병대와 맞서 싸웠다. 9월 1일에는 김인배가 이끄는 순천 영호대도소의 농민군 부대가 섬진강을 건너 경상도 하동을 공격하였다. 9월 2일부터 진주지역 농민들이 순천 영호대도소의 농민군과 힘을 합쳐 충경대도소(忠慶大都所)를 설치하고 9월 10일 농민군 대회를 열기도 하였다.¹⁶⁾ 강원도에서는 9월 4일 영월, 평창, 정선 등지의 농민군 수천명이 강릉부를 점령하였다.

9월 10일 전봉준은 <사통>에서 “지금 이런 거사를 몹시 커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공곡과 공전을 이용해야 하겠으니 군수미 300석과 동전 2천량을 밤사이 금구 원평의 대도소로 수송하기 바란다”고 2차 봉기의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¹⁷⁾

13) “一 原任大臣中에서 特別히 三南都宣撫使의 일을 맡긴다는 것인 이미 의논하여 釐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재 莠民의 梗化는 兩湖지방이 심하므로 먼저 몇 사람을 파견하고 군사를 대동하여 길을 나누어 주재하여, 한편으로 彈壓하고 한편으로 宣諭하면서 恩威를 행하고 妖氣를 확정하는 것인 目下의 急務이다.” (『군국기무처 의안』 1894년 8월 24일, 『일성록』 고종 31, 개국 503년 8월 24일).

14) 대원군의 밀서에는, “방금 倭寇가 闕內를 범하고 宗社에 화가 미쳐 명맥이 朝夕에 달려 있으니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너희들이 만약 不來하면 禍患이 기필코 당도할 터”라고 하였다. 이는 9월 1일 宮門將 金基泓의 상소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홍은 김홍집, 김윤식, 박정양, 김종한, 안경수, 김가진, 조희연, 권형진 등 ‘8奸이 日本과 符同해서 오로지 賣國하는 謀計를 기도한다’는 탄핵상소를 올렸다(『관보(官報)』 開國五百三年 九月初一日 初四日字 『일본외교문서』 676면 문서번호 458의 부속서 『宮門將金基泓 疏草』).

15)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와 흥선대원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전봉준 공초>의 심문 내용을 근거로 양자의 밀접한 관계성을 부인하여 보려고 한다(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 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2015, 234~240쪽).

1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東學黨의 檄文 通報 및 情報通知 要請」 1894년 10월 22일(140쪽).

1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行全羅道觀察使 爲騰報事」 개국 503년 9월 18일 130-131쪽.

마침내 9월 14일 삼례역에서 800여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전주성내로 들어와 2차례에 걸쳐 군기고의 화포와 탄환 환도 등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또한 삼례에 대도소를 차리고 군산과 인근 읍에 통문을 돌려 곡물 반입을 강요하여 1894년 9월 14일 삼례역에서 전주성으로의 진출한 것이 직접적으로 2차 봉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3. 갑오 정권의 농민군 탄압과 동학농민군의 대응

1) 동학농민군 2차 봉기에 대한 조선·일본의 진압과정

갑오개혁 정부는 9월 초 시점까지도 전봉준 등 농민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에서는 흥선대원군 계열의 정치 공작이 시행되고 있었다. 9월 2일 경무사 이윤용의 해임에 이어 3일 궁문장 김기홍(金基泓)의 정권 퇴진 상소 등이 이어져 갑오 정권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다.¹⁸⁾ 중앙정계의 혼란상과 더불어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한 소문은 서울에까지 미쳐왔다. 9월 13일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김윤식은 “동학의 소요가 날로 치열해져서 경기와 호서지방에서 피난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올라 오고 있다. 또한 장차 서울로 쳐들어온다고 한다”고 하였다.¹⁹⁾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장위영 영관 이두황과 경리청 영관 성하영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으로 파송하여 농민군을 초무(招撫)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갑오개혁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압을 확정된 것은 공교롭게도 9월 14일이였다.

[사료 2 - 가] “구월 십사일

상고할 것. 동요(東擾)가 하나같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중략) 도의 수신과 읍진 관리들은 진정 협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초무(勦撫)의 방안을 갖추었으면 저 무리들의 경화(梗化)가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는가. **이제 한편으로 은무(恩撫)를 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치고, 마침내 부득이하게 용무(用武)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컨대, 도당 중에 반드시 강압에 못 이겨 참여했으나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자가 다수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그른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향하는 의리로서 포고하여 각기 해산케 하라. **만일 거괴(渠魁)를 잡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먼저 영읍에서 중히 논상(論賞)해 주고 조가(朝家)에서는 또한 각별히 녹용(錄用)하도록 해야한다.** 만일 이와 같이 다시 묘책을 내린 후에도 또한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돌아갈 바가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행할 일이다. 초포(勦捕) 사항을 일일이 보고함이 마땅할 것.”²⁰⁾

18) 『甲午實記』 9월 4일 ; 『羅岩隨錄』 217, 「守門將 金基泓 上疏」 9월 3일, 394쪽.

19) “赴外署 日公使送函 示嶺南東學檄文 以今月二十五日聚于安東 欲討日人 聲勢甚張皇 又聞兩湖東學徒 聚衆向京 將於望間犯京云”(『續陰晴史(上)』 1894년(고종 31) 9월 7일, 339쪽).

20) 『관초존안(關草存案)』 「訓令」 9월 14일.

여기에서는 군국기무처에서 부득이하게 ‘용무(用武)’의 입장에서 농민군 탄압을 결의한 것이다. 실제 각 지방에 내려보내는 관촌에서는 진압의 임무를 각 지방 감영·병영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반면에 진압과정에서 강박에 못이겨 가담한 자를 회유하여 해산케 하며, 주모자에 대한 포상을 내세우는 등 회유 방안도 내놓고 있었다.

마침내 9월 21일 호위부장 신정희를 도순무사로 삼아 모든 군사를 지휘하게 하고, 양호순 무영(兩湖巡撫營)을 설치하여 남쪽의 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신정희는 순무영 별군관 이규태를 좌선봉장으로, 이두황을 우선봉장으로 삼았다. 관군 중에서 맨 먼저 내려 간 이두황은 9월 20일 1개 중대 병력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여 용인을 거쳐 23일 죽산에 도착했다.

이때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동학농민군의 토벌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조선 갑오정부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다. 9월 16일 서한을 보내 삼남지방 농민군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파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서한에서는 쓰인 표현으로는 ‘동학농민군을 국해(國害)’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를 후인 9월 18일에는 일본군이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갑오정부의 협조를 강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료 2 - 나] (전략)지난 날 본사(本使)가 누차 귀대신께 선유사를 파견하여 그들을 불러 위유(慰諭)를 하도록 하고, 그들은 그래도 귀순하지 않으면 병력을 동원하여 토벌을 감행하도록 하여, 그때 우리도 병력을 파견하여 초토(剿討)를 돕게 하도록 권고(勸告)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권고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중략). 지금 본사는 경성과 부산 두 곳에 우리 병사 약간 명을 파견하여 귀국 병사와 합세한 후, 그들을 초토하는 우리를 도와서 기어히 그 비당들을 소탕하여 일국의 화근을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오니. (중략) 조속히 우리의 권고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이에 다시 조회를 하는 것이다.²¹⁾

이러한 일본의 정치 군사적 압력에 따라 조선의 갑오정부는 결정적인 국면에 몰렸다. 중앙에서 정치세력간의 투쟁을 통해 권력기반이 와해되어가는 상태이고, 지방에서도 권력적 기반이 취약했으므로 조선 갑오정부는 현실의 대세를 따르는 추수적인 선택을 택했다.²²⁾ 갑오정부는 일본의 군사적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의존하면서 중앙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의 최고기관은 도순무영이었다. 이 기구가 설치된 것은 9월 22일이었다. 의정부에서 “양호 지역에 비류가 창궐하니 호위부장 신정희(申正熙)를 순변사(巡撫使)로 임명”하게 하였다.²³⁾

21)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제202호 「동학당의 재기와 일군의 비도진압에 따라 조선정부의 협조 요청」 「조회」 1894년 9월 18일, 132~133쪽(번역문, 원문, 428쪽). 단, 국사편찬위원회 번역문에서는 일본군의 강요가 부각되지 못해서 원문에 맞게 수정했음(필자 주).

22) 왕현중,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385~386쪽, 참조.

23) 『갑오군정실기』(1), <갑오 9월 22일> ; 『선봉진일기』 1894년 9월 21일 「조지(朝紙)와 동일.

갑오정부는 초기부터 도순무영의 군사 동원 체제를 주도면밀하게 세워놓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1894년 12월말에 보고된 양호도순무영의 산하 지휘를 받는 부대로는 8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중군 경무사 허진의 지휘로 약 492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좌선봉 부대는 선봉장 이규태의 지휘하에 408명 병정, 우선봉 부대는 선봉장 이두황으로 하여 장위대관 이하 388명과 별군관이하 362명의 병졸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²⁴⁾ 양호도순무영 산하 편제된 장교 및 병정의 숫자는 모두 2,974명 규모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군은 용산에 병참부를 두고 후비보병 독립 19대대를 주축으로 하여 농민군 토벌군을 편성했다. 동학당 정도군은 1894년 11월 10일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파견하여 12일 용산에서 출발시켰다. 세 방향으로 진격했는데, 동로는 병참선로, 중로는 청주기도, 서로는 공주기도였다.²⁵⁾ 당시 일본군의 진압 방침으로는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렬함을 요구한다. 향후 모조리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일본군은 각 부대에 소속한 조선의 정예군사 1개 중대를 교도중대로 편성하여 진두 지휘했다. 일본군 진압부대는 ‘대일본제국 동학당정도군’이라는 이름을 내걸었고 총 2천여 명이였다.²⁶⁾

일본군은 초기부터 농민군 토벌일자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었다. 즉, “(1895년) 1월 28일은 동학당을 초멸(剿滅)하는 기한 날짜이고 이때부터 2월 2일까지는 초멸하다 남은 적을 수색하는 기한 날짜”로 삼았다. 그래서 본대는 이곳으로부터 철수했지만 부산군(釜山軍)은 같은 달 7일에 출발하여 귀영(歸營)하였다. 한병(韓兵)에게는 해안에 남아있는 적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런데 “장흥(長興)·강진(康津) 부근 전투 이후로는 더 많은 비도(匪徒)를 죽이는 방침을 취하였다. 필경 이는 소관(小官)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 재기(再起)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소 살벌하다는 느낌을 살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공사(公使)와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동학농민군을 전투과정에서, 그리고 포로로 잡힌 이후에도 재판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24) 『양호우선봉일기』2, 1894년 11월조. ; 경리청 소속 부대로 흥운섭 영관 지휘하에 361명이 있으며, 서산군 수 성하영과 경리청 영관 구상조의 지휘하에 368명이 있었다. 일본의 지휘를 받는 교도부대로 영관 이진호 휘하 255명이 있었으며, 심영 중 파견 부대로 중군 이하 283명의 병정이 있었다. 그밖에 소수 파견부대로 장위교장 원봉석 지휘로 36명이 일시 천안 방수에 나서고 있었고, 일본군진에 파견된 인원은 별군관 11명 등 12명이 그리고 별도로 4.5명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25) 『東學黨 征討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1895년 5월).

26) 井上勝生 논문(「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책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편, 2002)에서는 2천명 정도로 추정되고(신영우, 「1894년 日本軍 中路軍司의 鎮壓策과 東學農民軍의 對應」 『역사와실학』33, 2007.9., 272~273쪽, 재인용), 姜孝淑은 서울수비대(후비보병 독립 제18대대)에서 1중대가 합류, 용산 인천 수비대로부터 1중대, 부산수비대의 1대대(병참부의 수비병과 전라도 남부에 파견된 부대 포함), 그 보충병, 육전대(쓰쿠바함 筑波 승조원 251명, 操江艦 승조원 82) 등이 농민군 단압에 참가하였다고 보고 제19대대를 포함하여 약 12개 중대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후비보병연대편제표에 의하여 서울 이남에 본격적으로 농민군 단압을 담당한 일본군의 수는 2,708명이라고 보았다(姜孝淑,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청전쟁-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소장 사료를 중심으로-』 千葉大學 大學院, 2005, 27쪽 ; 강효숙,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6, 2005, 43~54쪽 ; 강효숙, 「황해 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47, 2008, 123~143쪽, 참조).

그렇지만 이를 외부에 공포할 수는 없었으므로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명령으로 이를 분식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가 동비를 초토함에 있어 본래 비적(匪賊)을 귀화시키는데 주력하여 살육을 함부로 가하지도 않았다. 무릇 비도(匪徒)를 한번 체포했을 경우 그 석방에 대해서는 서로 회동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지방관에게 일임시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초멸 기조를 덮기 위해 유화적인 발언에 불과했다.²⁷⁾ 실제로는 일본군은 관련 동학농민군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더구나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처형하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료 3 - 가] (錦山) 출발하는 날 아침 전에 동학도(東學徒)가 백성을 참살했다는 장소에 가서²⁸⁾ 지난번에 붙잡은 동비(東匪)를 총살해서 인민에게 보여주었다. 인민들은 모두 큰 파도가 치는 것 같은 함성을 지르며 환희의 뜻을 나타냈다. 그런데 또 인민이 서면(書面)을 가지고 와서 청원하기를, “만일 내일 귀군(貴軍)이 이 지역을 떠나면 진산(珍山)의 비도가 다시 내습할 것이다. 원컨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곳에 체재해 달라.”고 했다.²⁹⁾

[사료 3 - 나] 임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동학도이고 오수역(獒樹驛)도 또한 인민 모두가 동학당에 가담하였다. 오수역에 들어가 동학당 5명을 붙잡았다(이 중 접주 1명은 탈주했다). 임실에서 붙잡은 비도(匪徒)도 7~8명 있었다(임실과 오수역의 거리는 40리 정도이다)..... 우선 인심을 바로 잡기 위해 접주 5명을 죽임으로 해서, 인민들은 비로소 동학도에 가담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깨닫게 된 것 같다. 포로 중 죄가 가벼워서 사면된 자는 14~15명이 되고 대개는 포박했다가 사면했지만, 앞에 쓴 5명은 접주이고 그 죄가 크므로 총살한 것이다.³⁰⁾

[사료 3 - 다] 순천(順天)에는 척(賊)이 허다하게 많았었고 성(城) 안에는 그 시체가 400여 구나 버려져 있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스즈키(鈴木) 대위(大尉)가 도달하기 전에 그 지방 민병들이 이들을 죽였다고 하였다. 또 우리 츠쿠바함(筑波艦)이 때마침 좌수영에 왔는데, 좌수영의 병사가 그 함장에게 구원을 요청해 말하기를, “동학도가 대거로 좌수영을 포위하려고 있다. 빨리 와서 구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서 그 함장(艦長)은 수병(水兵)을 상륙시켜 좌수영의 비도(匪徒)를 격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³¹⁾

27) 「海州東學軍 防剿狀況 및 基本方針의 示明과 拿獲者 會審方針의 周知依頼」(발신 伯爵 井上馨, 1894.11.2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 참조.

28) 「東學黨 征討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後備步兵 獨立第19大隊(南 少佐 講話)>(1895년 5월).

29) 「東學黨 征討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위의 글(1895년 5월) 참조.

30) 「東學黨 征討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위의 글(1895년 5월) 참조.

31) 「東學黨 征討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위의 글(1895년 5월) 참조.

[사료 3 - 라] 또 전봉준이 동학도(東學徒)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동학도(東學徒) 중에 다소의 양민(良民)과 의사(義士)를 찾아 볼 수 있었으나, 봉준(琫準)이 일단 그 속에서 떠나자 이들 양민·의사들은 역시 모두 흩어져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무리들은 한결같이 모두 잔학하고 영악한 무리한으로만 되었다. 그래서 또한 많이 죽이는 방책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장흥(長興) 근처에서는 인민을 협박하여 모두 동학도에 가담시켰기 때문에 그 수가 실로 수백 명에 달하였다. 그래서 진짜 동학당(東學黨)이 잡히는 대로 이를 죽여 버렸다.³²⁾

위의 기록 중 [사료 3 - 라]와 같이 장흥 일대 전투에서 많은 비도들을 죽이라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래서 진짜 동학당을 잡히는 족족 죽여버렸다고 한다. 당시 동학농민군이 일본 및 관군과의 전투과정에서 희생된 수효는 잘 기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다. 비록 생포되었더라도 농민군 참여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즉시 처형되었기 때문에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인 추정치로는 이규태가 장흥으로 가는 길에 영암에서 2만여 명을 죽였고, 이두황과 이규태 및 일본군이 연합해 해남에서 3만 6천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³³⁾

1894년 나주에는 임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지에서 붙잡혀온 생포 농민군에 대한 심문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곳에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자들을 조사하거나 이후 일본공사관으로 호송하는 절차를 밟았다.³⁴⁾ 그리고 나머지 생포된 농민군 중 대다수는 즉결 처분으로 처형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현지 처벌의 중심기관은 나주 임시재판소였다.³⁵⁾ 예컨대 김락철 형제들은 풀려나오기는 했지만, 전라감사 이도재가 검토포사가 되어 경성에서 재판후 석방된 사람들인 보성 박태로(朴泰魯), 장흥 이방언(李方彦) 금구 김방서(金方瑞) 등을 포살한 다음, 부안에 와서 이들 형제를 포살하려고 했다고 한다.³⁶⁾ 이렇게 나주 임시재판소에서 심한 고문과 여러 차례 심문이 이어졌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결 처분으로 처형되었다.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토벌을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처럼 거짓된 보고를 남기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혹한 처벌을 하였다.³⁷⁾

32) 「東學黨 征討略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위의 글(1895년 5월) 참조.

33) 이이화·배항섭·왕현종, 『이대로 주저 않을 수는 없다-호남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해안, 2006, 144쪽 ; 조경달은 2차 봉기에서 희생된 수를 3만인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異端の民衆反亂 :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 317쪽 참조).

34)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전북사학』 30, 78~82쪽, 참조

35) 재판과정의 일화이기는 하지만, 김락철, 김락봉 등은 12월 21일 나주 수성군 50명에 의해 포착되었다. 이들은 뇌물을 써서 무죄 방송되리라고 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1895년 1월 3일 나주에 와서 동죄인 32명과 같이 갇혀 있었고, 고문을 당하고, 400량의 뇌물을 바치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3인은 방송(放送)되었지만, 나머지 29인은 일본군 대장소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다. 김락철 형제들은 일본인 순사청으로 옮겨 갔혔지만, 나머지 27인은 1895년 1월 6일 신시(申時)에 모두 포살되었다(『김락철역사』 『한국학자료총서』 (정신문화연구원편, 1996) 681쪽).

36) 『김락철역사』 『한국학자료총서』 (정신문화연구원편, 1996) 700쪽.

37) 청일전쟁 다시 일본군의 점령지 주민에 대한 재판에 대해 처음에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1895년 2월 중순 '적지 주민에 대한 재판에 관한 일정한 제도가 없어 군사령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였다가, 2월 23일부터는 대본영에서 공포한 「점령지 인민 처분령」에 따라 행해졌다. 이는 비록 중

1895년 2월 28일에는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군 토벌상황을 종료하고 일·한 양군 개선식이 있었다.³⁸⁾ 이에 참석자 사람들은 미나미 소좌의 선창으로 “조선국대군주 폐하 만세, 대일본황제폐하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일본군의 농민군 토벌은 189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2월 말까지 마감되었다.

2) 붙잡힌 동학농민군의 비사법적 처벌(‘효수’를 중심으로)

도순무영은 1894년 10월 10일에 처음으로 내린 고시문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사후 처리 방침을 선포하였다. 순무영의 고시문에서는 국왕의 이름으로 동학농민군 “모두를 적자(赤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사리에 어둡고 완고하여 다스려지지 않고, 폐약을 더욱 심하게 저지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동학농민군 소굴을 소탕하고 도당을 잘라 없애기 위해 강력한 토벌의지를 밝혔다.

양호도순무영은 붙잡힌 동학농민군 포로 처벌에 대해서도 동학에 협박에 의해서 들어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엄격히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① 협박을 받아 들어간 자는 잘못이 없음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래대로 되돌리게 하며, ② 가장 흉악하고 모질고 교활하여 감히 교화를 거스르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대면서 난을 선동하고 추악한 것을 미고 고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③ 갑자기 깨달아서 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거나, ④ 그들의 우두머리를 포박해서 바치거나, ⑤ 평민을 보호하여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한 자는 이름을 지적하여 그가 저지른 이전의 과오를 씻어주고 오히려 상을 후하게 할 것” 등의 처벌방침을 세웠다.³⁹⁾

이러한 구분 방침에도 불구하고 동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효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⁴⁰⁾ 이는 동조하는 동학도들에게 경계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죄의 처분을 가혹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따라서 일부 동학에 참여한 혐의가 확실하고, 또 동학의 접주 등 지휘자였던 자들에게는 가혹하게 처벌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 퇴조기에 해당하는 1894년 11월 중순 공주전투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미증유의 탄압과 살해가 저질러졌다. 각 지역 농민군 학살은 사로잡힌 농민군의 처벌이 여러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식 조사나 재판이 없이 즉결 처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의 사례로서 1894년 12월 초에서 말까지 행한 순천부의 조치를 살펴보자.

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조선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강효숙,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 중탄압』『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2009, 453~459쪽, 참조)

38) 「朝鮮時事-東學黨征討軍의 凱旋」(2월 28일 靑山好惠) 『東京朝日新聞』 1895.3.13. 2면, 2~3단 기사.

39) 『갑오군정실기(1)』(번역본), 「훈칙」(1894년 10월 14일), 75~76쪽.

40) 『순무선봉진등록(2)』<갑오 11월 초2일>.

[사료 4] 본부 성 밑에 있는 각처의 동도 수천 명이 둔취하여 소요를 일으키므로 이 달 초6일 관리와 백성이 함께 소리치며 일제히 발동하여 동도 괴수 및 수종자 1백 50여 명을 아울러 잡아서 일일이 포살한 연유는 우선봉 사또께서 행차하실 때 자세히 통촉하신 사실이옵고, 이후로는 각별히 군민(軍民)을 신칙하여 굳게 방수하기 때문에 아직은 동도가 다시 방자하게 구는 폐단이 없습니다. (1894년 12월 27일 임(任), 기관(記官) 이(李), 호장(戶長) 김(金)⁴¹⁾

당시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에 의하면,⁴²⁾ 이때 처형된 자의 방식을 보면, 정우형 포살(12월 6일), 이우회 효수(11일), 권병택 포살(12일), 서면접주 김영구 효수, 병량면 접주 김영우, 월등면 접주 남정일 효수(12일), 송광면 성찰 김배옥 등(포살) 등 다양했고 심지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94명은 ‘때려서 죽임’[打殺]에 이르게 했다. 모두 112명의 처벌에 대한 조사,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재판 처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1894년 9월부터 다음해 1895년 1월까지 진행된 동학농민군 토벌은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잔인한 처벌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동학농민군 지도자, 특히 거괴로 지목된다면, 이들을 단순히 총살이나 타살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베어죽이는 효수(梟首)라는 극형에 처해졌다.

다음의 표는 1894년 2차 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효수 사례를 모은 것이다.

〈표 1〉 1894년 2차 봉기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효수 사례

| 연번 | 날짜 | 지역 |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 수 | 출전 |
|----|-----------|----|--|---|---------------------------------|
| 1 | 1894.9.28 | 대구 | 반란의 괴수 이장학 | 1 | 계초존안 |
| 2 | 10.3 | 한성 | 괴수 김내현(金鼎鉉)·안승관(安承寬) 남벌원(南伐院)으로 나아가 효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 2 | 갑오군정실기 |
| 3 | 10.6. | 용인 | 거괴 이용익(李用益)·정용전(鄭龍全)·이주영(李周英)·이삼준(李三俊) 등은 양지현에서 효수 | 4 | 갑오실기 |
| 4 | 10.8. | 진주 | 괴수(魁首) 임석준(林石俊)을 잡아 곤양군에 들어가서 취초 오시(午時)쯤에 크게 민인을 모으고 성(城)의 북쪽 시장에서 효수(梟首) | 1 | 장계, 갑오군정실기, 봉계 |
| 5 | 10.11. | 강령 | 적당(賊黨)의 접주 3명을 잡아 효수하여 경계한 후에 아뢰기를, “강령의 무기를 빼앗기고 공당(公堂)이 부서지고 문서가 타 없어진 일을 장계로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 3 | 갑오해영비요전말 |
| 6 | 10.13. | 보은 | 접주 백학길(白學吉)을 붙잡아 효수하고 도집(都執) 유흥구(柳鴻九)·윤경선(尹敬善), 접사 이승일(李承一)·우범손(禹範孫)은 즉시 효수 | 5 |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진 서목(10.25), 선봉진 정보첩 |

41) 『선봉진정보첩』 「순천부 공형 문장」(개국 503년 12월 27일)

42) 12월 6일부터 순천부 쌍암면(雙巖面)의 영호도집강(嶺湖都執綱) 정우형(鄭虞炯)을 비롯하여 동촌면(東村面)·서면(西面)·별양면(別陽面) 등의 접주와 성찰·마부와 광주 성찰 박현동, 운봉 서기 오준기, 경상도 양산 접주 황두화 등 18명에 대한 총살·효수(梟首)·장방(長房) 수감 등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였다.

| 연번 | 날짜 | 지역 |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 수 | 출전 |
|----|--------|-----------------|---|----|------------------------------------|
| 7 | 10.13. | 영천 | 정기석(鄭基碩) 이승연(李承然) 군인과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 | 2 | 계초존안 |
| 8 | 10.15. | 용진 | 옹진수영(翁津水營) 나머지 11명과 영교가 잡은 1명은 목을 효수 경계하고 보고하였다. | 12 | 갑오해영비요전말 |
| 9 | 10.15. | 안성 | 접주 박병역(朴秉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효수, 10월 13일 민영훈·임상옥 등 2놈을 많은 백성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모두 효수 | 3 | 갑오군정실기 |
| 10 | 10.20. | 죽산 | 죽산의 비괴(匪魁)인 박성익(朴性益)·접사 최제팔(崔齊八)·이춘오(李春五)·장태성(張太成) 등 4놈을 모두 효수 | 4 | 갑오군정실기 |
| 11 | 10.21. | 수원 | 비류 황성도(黃聖道)는 기호지방의 거괴이므로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으니 귀영 수원부에서 즉시 효수 | 1 | 선봉진일기 |
| 12 | 10.25. | 공주 | 사로잡은 여섯놈은 효수 | 6 | 순무선봉진등록 |
| 13 | 10.25. | 목천 | 체포한 괴수 김복용은 잠시도 용서할 수가 없기에 즉각 효수하고 즉시 본 진영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 1 |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진정보첩 |
| 14 | 10.27. | 진주 | 10월 27일 유시(酉時) 쯤 죄인 류효순과 김득현을 법에 따라 결안(結案)을 받아 낸 뒤 군졸과 백성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효수 | 2 | 봉계 |
| 15 | 10.29. | 목천 | 목천의 적괴 김춘일(金春日)·김용희(金龍喜), 진천 괴수(魁首) 박명숙(朴明淑), 직산의 서성만(徐成萬) 등 4명을 갑오년 10월 29일 신시(申時) 쯤에 효수 | 4 | 선봉진상순무사서,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 |
| 16 | 11.1. | 직산 | 비류 14명 중에 괴수(魁首) 김용희(金用喜), 김응서(金應西), 김명준(金明俊), 서성만(徐成萬) 등 네 놈은 갑오년 10월 19일 신시(申時)에 직산을 앞들에서 효수 | 4 | 선봉진서목 |
| 17 | 11.2. | 봉평 | 본관 영서지역의 비도(匪徒)는 이미 가서 토벌하여 괴수 7명을 잡아서 효수(梟首) | 7 | 동비토론 |
| 18 | 11.3. | 공주 효포, 대교 | 출진한 영관(領官) 홍운섭(洪運燮)이 첩보-몰래 뒤쪽부터 포를 쏘아 이십여명을 죽였고 여섯 놈은 사로잡아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6 | 갑오실기 |
| 19 | 11.7. | 상주 | 임곡(壬谷) 동학의 괴수 강선보(姜善甫)와 가리(佳里) 강홍이(姜弘伊) 그리고 영수(靈水)의 김경준은 거접(巨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 강선보는 태평루 앞에서 효수 | 1 | 소모일기, 소모사실(10.19), 갑오군정실기 소모사실(상주) |
| 20 | 11.8. | 정선 | 11월 8일 소모병(召募兵)이 체포한 정선군의 포군 신정숙(辛正叔)·남복흥(南福興)·이상선(李祥善) 3놈은 조사하고 문초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죄를 자복(自服), 효수 | 3 | 갑오군정실기 |
| 21 | 11.8. | 평창 | 평창 북면(北面)의 접주 이문보(李文甫)는 동학의 포덕접주(布德接主)로서 제반 행패(行悖)는 이루 손꼽아 셀 수 없이 많고, 호서의 4개 군에서 비류 5천여 명을 꺾어서 들여와 이처럼 큰 변란을 일으켰으니, 효수하고 경계(警戒)를 보였습니다. | 1 | 갑오군정실기 |
| 22 | 11.9. | 상주 | 이달 초 9일 오시에 신은 상주목사 이만윤(李晩胤), 상주진 영장 유인형(柳寅衡)과 함께 문루(門樓)에서 개좌(開坐)를 하여, 강선보는 효수 (19번 기사와 연결) | 0 | 소모사실(상주) |
| 23 | 11.9. | 천안 | 난리를 피운 무리 박치홍은 체포하여 효수 | 1 | 순무선봉진등록 |
| 24 | 11.10. | 남원 등지 | 지금 운봉의 보고를 받아보니, '남원 수령은 효수를 당했고, 순천 수령은 곤장을 맞았으며, 장수도 함락되어 운봉을 거쳐 영남으로 향하려 한다고 하니 구원을 요청합니다 | 0 | 찰이전존안 |

| 연번 | 날짜 | 지역 |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 수 | 출전 |
|----|--------|-----|--|----|--|
| 25 | 11.14. | 선산 | 성주 윤우식(尹雨植)은 이미 동학의 괴수 3놈을 효수하여 경계 | 3 | 소모일기 |
| 26 | 11.14. | 용수막 | 14일 오시(午時) 쯤에 용수막(龍水幕)에 행군, 비도(匪徒)의 교수(教首)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오가(吳哥)라는 놈을 붙잡아서 즉시 효수 | 1 | 선봉진정보첩 |
| 27 | 11.17. | 해주 | 접주 민경순(閔景淳)·민원장(閔元長)·이제석(李濟石) 등 11월 13일 남문 밖 훈련원에서 군민들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 | 3 | 갑오군정실기 |
| 28 | 11.21. | 해주 | 접주 김용헌(金溶憲) 등 11놈은 본영에서 잡은 접주 오봉석(吳鳳石)과 함께 16일 신시 경에 군민(軍民)들을 크게 모아 효수 | 12 | 갑오군정실기 |
| 29 | 11.22. | 직산 | 직산의 거괴(巨魁) 황성도(黃聖道) 등 4놈, 차괴(次魁) 김춘일(金春日) 등 2명, 진천의 비괴(匪魁) 박명숙(朴明叔) 등 2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효수 하고, 공주의 달동(達洞)에 사는 접주(接主) 장준환(張俊煥)은 즉시 효수 | 9 | 갑오군정실기, 갑오실기, 선봉진일기, 선봉진상순무사서 (11.8), 선봉진상순무사서 (10.29) |
| 30 | 11.22. | 충주 | 최맹순(나이 42세) 조정의 명령과 순영의 지시를 어기고 지키지 않았으니 이미 효수하여 경계시킬 죄에 해당됩니다. | 1 | 갑오척사록 |
| 31 | 11.22. | 강릉 | 비괴 윤태열(尹泰烈), 정창호(丁昌浩) 등 13놈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총살하고 한편으로는 효수를 한 뒤에 | ? | 갑오군정실기 |
| 32 | 11.22. | 강릉 | 사로잡은 거괴 차기석과 박학조 등 두 놈은 이 달 22일에 교장(教場-강릉 관아에 있음)에서 자리를 만들어 머리를 베어 효수 | 2 | 갑오군정실기 |
| 33 | 11.23. | 직산 | 김순천(金順天) 등 네 놈과 또 붙잡은 양성의 접괴(接魁) 이치오(李致五)를 평택현으로 옮겨 가두었습니다. 갑오년 11월 23일 신시(申時) 쯤에 인민(人民)들을 그 현의 오리정(五里亭)에 크게 모아놓고 아관(亞官)과 함께 참석하여 효수 | 5 | 선봉진정보첩 |
| 34 | 11.23. | 해주 | 본 황해감영에서 체포한 접주 김기원(金基元)은 11월 18일 신시(申時)에 군사와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 | 1 | 갑오군정실기 |
| 35 | 11.25. | 김산 | 이달 25일 조방장 김산군수와 민인을 크게 모아 놓고 남홍언(南洪彦)과 편사흠(片士欽)은 효수하여 대중을 경각시키고 최복지(崔福只)와 김순필(金順弼)은 곧바로 포살하고 그 나머지 협종은 엄히 곤장 10여 대를 쳐서 효유하고 징계하여 방면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 2 | 소모사실, 별계 |
| 36 | 11.26. | 평택 | 1894년(甲午) 11월 23일 신시에 그 곳 현 오리정(五里亭)에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아관(亞官-좌수)도 동참하여 효수를 행하여 몹시 사람을 경계시켰습니다. | ? | 순무선봉진등록 |
| 37 | 11.29. | 공주 | 압송하여 온 비류 이천악, 김천일(金千日), 강자중(康子仲), 서학성(徐學成), 임원일(林元日), 강응서(康應西), 김완성(金完成) 등 7놈 및 접사 김응구 등은 이 달 29일에 이들 모두를 효수하였으며, | 8 | 갑오군정실기 |
| 38 | 11.30. | 고산 | 지난 달 30일에 고산에 도착하여 비류의 접주 최성호(崔成浩)를 효수하여 사람들을 경계하였습니다 | 1 | 갑오군정실기 |
| 39 | 12.1. | 무장 | 무장에 이르러 숨어 있는 동도 괴수 42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중 김경운(金景云)이란 자는 행패가 극악한 자라 그 자리에서 효수하였습니다. | 1 | 양호우선봉일기 |
| 40 | 12.1. | 공주 | 그러나 전 오위장 이상만은 별도로 권장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되므로 특별히 처분해야 하며 장준환은 잠시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진 앞에서 효수 | 1 | 선봉진일기, 이규태왕보서병묘지명(11.3) |
| 41 | 12.1. | 평산 | 평산부사 이창렬(李彰烈)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본부에서 10여 명의 비류를 잡아 가두었는데 그 중 거괴와 접주 8명은 먼저 즉시 효수 | 9 | 갑오군정실기 |

| 연번 | 날짜 | 지역 |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 수 | 출전 |
|----|-----------|-------|--|----|----------------------|
| 42 | 12.2. | 홍주 | 그 중에서 최동신(崔東臣), 박윤일(朴允一), 옥출근(玉出崙), 문학준(文學俊) 등은 모두 본주 출신으로 난적(亂賊)의 전모(前茅)가 되어 성을 침범한 자들입니다. 이병호(李炳浩)는 해미 동도의 접주로 해미읍의 무기를 빼앗고 성을 점거한 자입니다. 김낙연(金樂璉)은 태안의 아전으로 있다가 퇴직한 자로 그곳 수령을 죽이려고 모의한 자입니다. 이 달 21일 미시(未時) 즈음 북쪽 성문 밖에서 군사와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위에 열거한 자들을 모두 효수 | 6 | 갑오군정실기 |
| 43 | 1.23. | 평택 | 11월 16일 청산에서 패배한 적도 김순천(金順天)·이창천(李昌天)·민성심(閔成心)·호한성(扈漢成) 등 4놈 및 양성접(陽城接)의 거괴(巨魁) 이치오(李致五)를 모두 평택에 이송하여 가두었다가 11월 23일 본관과 함께 민인들을 크게 모이게 하여 즉시 효수 | 5 | 갑오군정실기 |
| 44 | 12.3. | 음죽 | 동도의 거괴(巨魁) 이기영(李基榮)은 비괴(匪魁)라는 점을 이미 자백하였으니 군민을 크게 모아 효수 | 1 | 갑오군정실기 |
| 45 | 12.3. | 광주 | 광주(光州) 괴수 전수지(全秀志)와 동당(同黨) 3명을 초2일에 체포, 진영(鎭營)으로 압송하여 효수함. | 4 |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 |
| 46 | 12.3. | 전주 | 3일 신시(申時) 즈음 서교장(西教場)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 (비도를) 효수하여 사람들을 경계한 뒤에 머리는 궤짝에 넣어 도순무영(都巡撫營)에 올려 보냈으며, 나머지 3놈은 경중을 나누어서 처분하여 급히 아리고, 그 머리들은 궤짝에 넣어 올려 보냅니다.....적괴 김개남(金介男)을 효수하여 사람들을 경계한 일은 이미 급하게 보고하였습니다. | 3 | 갑오군정실기 |
| 47 | 12.5. | 장성 | 손화중 부대의 공장치는 사람인 정정칠(丁正七)과 본 부 아곡(鵝谷)에서 잡아들인 괴수 이봉학(李奉學) 등 세 놈을 어제 오시 경에 군인과 백성을 장대(將臺)에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부대시참형(不待時斬刑)으로 효수 | 3 | 순무선봉진등록, 갑오군정실기 |
| 48 | 12.6. | 공주 대전 | 비류(匪類) 이천악(李千岳) 등 일곱 놈과 접사(接事) 김응구(金應九) 등을 많은 군민들을 모아 효수 | 8 | 갑오실기 |
| 49 | 12.8. | 광양 | 영호대접주 금구(金溝) 김인배(金仁培) 효수, 순천(順天) 유하덕(劉夏德) 초8일 효수 | 2 |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
| 50 | 12.8. | 남원 | 호남 도공사관(湖南都公査官) 이사명(李士明)과 청림도사(靑林道士) 임광희(林光熙), 도접주(都接主) 최진락(崔陳樂), 최한일(崔漢一), 황내문(黃奈文), 변홍두(邊洪斗), 구창석(具昌錫), 이금용(李今用), 김순복(金順福), 전태중(全台仲), 이인종(李仁宗) 등 11놈을 붙잡아 12일에 군민을 크게 모아 효수 | 11 | 갑오군정실기 |
| 51 | 12.10. | 진주 | 3삼남도성찰(三南都省察)인 익산포(益山包)의 괴수(魁道) 김상규(金商奎)와 문쌀순(文耆順), 박범이(朴凡伊) 등을 읍에서 잡아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상규는 전후에 그가 벌인 흉악한 짓을 이미 자백했기 때문에 그 날로 읍의 장시(場市)에서 효수 | 1 | 갑오군정실기, 별계 |
| 52 | 12.11~12. | 순천 | 이우회(李友會) : 수영 진중에서 11일 효수, 서면(西面) 접주 김영구(金永九) 수영 진중에서 12일 효수, 별량면(別良面) 접주 김영우(金永友) 월등면(月燈面) 접주 남정일(南正日) 수영 진중에서 12일 효수 | 4 |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
| 53 | 12.12. | 상주 | 아침을 먹은 뒤에 군사와 백성들 1,000여 명을 소집하여 남사정에 나가서 2놈을 효수 | 2 | 소모일기 |
| 54 | 12.12. | 상주 | 이달 12일에 상주목사 이만윤(李晩胤)과 함께 4거리에서 개좌(開坐)하여 이득이와 박기봉은 효수하고, 권화일 등 5놈은 그 자리에서 총살하였습니다. | 5 | 소모사실(상주) |

| 연번 | 날짜 | 지역 |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 수 | 출전 |
|----|--------|----|--|---|------------------------------|
| 55 | 12.13. | 전주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적의 두목 김개남은 사로잡은 후에 죄인 호송 수레로 서울로 압송하여 조사하고 사형에 처해야 하나,海道(該道)에서 조정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앞질러 효수하였습니다. 실사 중도에서 빼앗길 염려가 있더라도 경솔히 함부로 처단한 것은 극히 놀라운 일이니, 전라감사 이도재에게 월봉 2등의 벌전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1 | 갑오실기 |
| 56 | 12.13. | 서산 | 도달한 서산군수 성하영 진(陣)의 참모관인 권종석(權鍾奭)과 별군관 유석용(柳錫用)의 첩정에 의거하면, 한산과 서천에 있는 비적의 거물급 괴수를 추적해 잡아 효수 | ? | 선봉진서목 |
| 57 | 12.14. | 상주 | 남촌(南村)의 거괴 4놈이 9월의 변고 이후에 호서로 도망가서 최적(崔賊) 및 이괴(李魁)와 함께 몰래 무리를 모아 무주로 가서 오늘의 화를 조성하였다. 그래서 당일 오시에 문루(門樓)에서 개좌(開座)를 하여 이들을 모두 효수.....한편 본 고을의 동도(東徒)로서 범망을 빠져나간 거괴(巨魁)인 최인숙(崔仁叔), 윤경오(尹景五), 김순녀(金順次), 전명숙(全明叔) 등 4놈이 적의 경보가 다급한 때에 그들의 목숨을 잠시라도 살려둘 수가 없어서 오늘 오시(午時)에 본주(本州)의 목사와 함께 군문에서 개좌하여 모두 효수 | 6 | 소모일기, 소모사실(상주), 갑오군정실기 |
| 58 | 12.14. | 무안 | 그 중에 배상옥(裴相玉)·배규찬(裴奎瓚) 형제는 그 마을의 거괴일 뿐 아니라 하도 연해 지역의 괴수로 불리던 자로서, 전봉준·김개남·손화중·최경선 등의 적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배상옥은 범망을 피해 도주하였고 배규찬은 체포하여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군민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 | 1 | 순무선봉진등록 |
| 59 | 12.14. | 이천 | 비도의 접사(接司) 조용이(趙龍伊)를 추적하여 붙잡았다고 하였으므로, 관부의 동쪽에 있는 1리로 압송하여 와서 효수 | 1 | 갑오군정실기 |
| 60 | 12.15. | 나주 | 본주의 인사가 최경선을 경상(境上)에서 목을 베어 7월에 성을 범한 죄를 성토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경군 선봉이 말하기를 “이 3인은 모두가 나라의 적이다. 마땅히 경사(京師)에 끌고 가서 고가(藁街)에서 효수하여 경계를 삼아야한다”라고 하였다. | 3 | 금성정의록 |
| 61 | 12.22. | 상주 | 남사정에 가서 1명을 효수하고 9명을 총살하였다. | 1 | 소모일기 |
| 62 | 12.23. | 장성 | 본부 경내에 있는 공기로(孔基魯), 김종익(金宗益), 이기주(李基周), 공치환(孔致煥), 남나구(南羅九), 이궁궁(李弓弓), 한덕일(韓德一), 김사문(金士文) 등은 모두 비도의 큰 악질로서장날 거리에서 사람들을 크게 모아놓고 공기로, 김종익 등 두 놈은 효수하고, 이기주, 공치환, 남나구, 이궁궁, 한덕일, 김사문 등 여섯 놈은 처단하여 민중을 경각시키고, 상황을 첩보하였습니다. | 2 | 선봉진정보첩 |
| 63 | 12.23. | 광양 | 송덕언(宋德彦)과 손인석(孫仁碩) 등 두 놈은 모두 양호의 거괴였으므로 12월 23일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이게 한 뒤 효수 | 2 | 별계 |
| 64 | 12.24. | 상주 | 이달 22일에 상주목사 이만윤(李晩胤)과 함께 군문에서 개좌(開坐)하여 위의 박효식은 효수하고 김흥업 등 9놈은 총살하였으며, 전오복 등 3놈도 이달 24일에 군문에서 개좌하여 총살. 나머지 죄수들 가운데 위협에 못 이겨 따라간 자들에 대하여 그 연유와 정황을 자세하게 조사 전혀 의혹이 없는 자들이 36명. 그래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귀화하여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라는 뜻으로 일일이 효유하여 석방. | 1 | 소모사실(상주) |
| 65 | 12.24. | 천안 | 저자거리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 정정이는 효수, 정정용은 본부 군의 감옥에 갇혀 있는 비괴 김중칠(金仲七)과 함께 처형. | 1 | 갑오군정실기 |

| 연번 | 날짜 | 지역 | 동학농민군 처형 사실(효수) | 수 | 출전 |
|----|----------------|-------|---|-----|-----------------|
| 66 | 12.25. | 남벌원 | 순무영 초기(草記)에, “비적(匪賊)의 괴수인 성재식(成在植)과 최재호(崔在浩)와 안교선(安教善)은 그날로 남벌원에서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고, 김개남(金介男)의 머리는 서소문 밖 네거리에 매달았다가 3일 후에 김개남과 성재식의 머리를 경기 감영에서 소란을 일으킨 지방에 조리를 돌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55번 기사와 연결). | 3 | 갑오실기, 갑오군정실기 |
| 67 | 12.25. | 낙안 | 본 군의 동면(東面)에 사는 이수희(李守禧)도 이달 25일에 본 군으로부터 경내로 잡아들여 효수 | 1 |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진정보첩 |
| 68 | 12.27. | 장성 | 사격장(射堂)에 진열하여 있는 호위병이 매우 성대하였고, 강계중(姜桂中)은 참하여 효수하였고, 강서중(姜西中) · 손경서(孫敬敘) · 정별장의 조카(鄭別將姪) · 손학모(孫鶴模) · 공치광(孔致光) 등 16인은 총을 쏘아 죽였다. 17인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 1 | 봉남일기 |
| 69 | 12.27. | 장성 | 이달 27일 읍의 장날에 거리에 백성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강일음을 효수 | 1 | 순무선봉진등록 |
| 70 | 12.27. | 낙안 | 보성에 사는 안규복(安奎馥)은 본래 동도의 거괴로서 접주·집강으로 불리며 가까운 읍에서 크게 행패를 부린 자로 이달 27일에 본 경내로 잡아들여 효수 | 1 |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진정보첩 |
| 71 | 1.2. | 장성 | 본 부의 장내에 사는 공기노(孔基魯)·김종익(金宗益)·이기주(李基周)·공치환(孔致煥)·남나구(南羅九)·이궁공(李弓弓)·한덕일·김사문 등은 모두 커다란 악행을 저지른 비도로서,.....장이 서는 날 거리에서 백성을 모아놓고 공기노·김종익 등 두 놈을 효수 | 2 | 순무선봉진등록 |
| 72 | 1.2. | 낙안 | 본군 경내의 거물급 괴수인 강사원(姜士元), 안귀복(安貴福), 이수희(李秀希) 등 세 놈은 개남(介南, 金開男)의 적이 청주를 가서 범할 때에 ‘선봉진(先鋒陣)’이라 칭하며 비당을 이끌고 수창(首倡)하여 앞에 가서 소요를 일으킨 놈입니다. 또한 조종하여 각별히 그를 잡아서 효수 | 3 | 선봉진정보첩 |
| 73 | 1.2. | 전라좌수영 | 접주 진원필(陳元弼)·박봉관(朴奉寬)·홍인영(洪仁永) 세 놈은 순무영의 회답에 의하여 당일 효수하여 경계하였습니다. | 3 | 양호우선봉일기 |
| 74 | 1.7.(11.18 발생) | 순천 | 이달(12월) 12일 좌수영 본부(本府)의 좌수(座首) 장동렬(張東烈), 호장(戶長) 장태완(張泰完), 이방(吏房) 이돈근(李敦斤)을 모두 압송해 가서 18일에 쏘아 죽였다고 한다(1월 7일 앞부분 기사). 지금 효수한 이 세 놈들의 죄목은 온 지경 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 나라 사람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이다(뒷부분 기사). | 3 | 양호우선봉일기 |
| 75 | 1.11. | 흥덕 | 흥덕현감의 첩보에, “동적 거괴 정읍의 차치구(車致九)는 당신의 지시에 의거하여 당일에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하여 군중들에게 경계 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1 | 양호우선봉일기 |
| 합계 | | | | 226 | |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효수 사례는 1894년 9~10월까지의 15건에 불과했으나 11월에는 2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12월에는 32건이고, 1895년 1월에는 5건으로 죽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관련 기록을 통해서, 당시 효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총수는 무려 226명이나 되었다.

우선 주목되는 특징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및 참여 농민군의 처별은 전투 이후 생포된 자를 중심으로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 등급이 판단되었다. 가장 극형은 물론 효수였고, 다음은 총살, 그리고 타살(打殺)이라는 형태로 나뉘었다. 지도자급과 참여자의 구분은 자의적이었지만, 적어도 효수자와 총살대상자의 구분은 어느 정도 엄격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국각지의 효수 처형은 주로 정부군 등과 농민군이 1차로 격전을 치른 후 생포된 동학농민군의 잔당 중에서 취조와 추궁 등을 통해서 대접주, 거괴 등을 추려내어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일반 전투과정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시신을 다시 처형한 것이 아니라 생포된 동학 농민군 지도자급의 살아있는 신체에 효수형을 자행한 것이었다.

예컨대, 광양현에서의 농민군 처형에 대해서는 “광양현 공형(公兇)의 <문장>에, ‘이 달 7일에 본 읍의 이교(吏校)와 노령(奴令) 및 민포(民砲)가 일제히 힘을 합쳐 동도 중에서 영호대접주라고 하는 금구의 김인배(金仁培)와, 수접주라고 하는 순천의 유하덕(劉夏德) 및 도당 40여 명을 잡아 김인배와 유하덕은 바로 목을 베어 대소민인(大小民人)에게 경계(警戒)를 하였고, 나머지 놈들은 모두 쏘아 죽였다. 도망간 동도는 특별히 뒤를 밟아 탐문하여 일일이 체포할 계획이다.”라 보고하였다.⁴³⁾ 이처럼 영호대접주라는 금구 김인배, 수접주 순천의 유하덕의 경우에는 효수형을 당했고, 나머지 사로잡힌 도당 40명은 총살을 당했다(위 표에서 49번 광양현 사례).

다음으로 효수형과 관련된 특징은 공통적으로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선봉 이두항(李斗璜)이 농민군의 토벌임무를 띠고 중로전선 지역 여러 지역을 정토하고 있었다. 그는 홍양현 지역에 와서 동학거괴 유봉만 등 일단의 동학군 재판을 실시했다. 홍양현 ‘장시에서 군민 대회를 열었다(當日開座場市大會軍民)’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재판을 통하여 동학 혐의자의 죄상을 공개하여 대중의 적대감을 고취함과 동시에 참형인 효수형을 행사함으로써 극단적인 충격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⁴⁴⁾

[사료 5 - 가] 중로인 제(이두항)가 절제(節制)의 명을 받고 아전과 병사를 깊숙한 곳으로 보내 비류가 은신한 곳을 탐문해서, 동도의 거괴(巨魁) 유봉만(劉奉滿, 또는 福滿으로 표기)과 당우(黨羽) 오준언(吳俊彦)·임태인(林泰仁) 및 여당(餘黨) 박몽용(朴夢用)·이기순(李基淳)·명사홍(明士洪)·노경칠(盧敬七)·김양두(金良斗)·사인석(史仁石)·이칠선(李七善) 등을 차례대로 체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장시(場市)에서 법정을 열어 군민(軍民)을 많이 모으고 위의 10명을 쏘아 죽인 뒤에 거괴 유봉만과 추종자 오준언·임태인 3명의 머리를 나무상자에 각각 담아

43)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2월 12일 보고) ;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2월 10일 보고) “14일에 떠나 30리 길을 가서 순천읍에 주둔하여 그 성에 들어가서 보니 이리저리 널려있는 적의 시신이 150여구가 되었고, 아전과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적을 죽이고 성을 회복한데다가 각 면의 마을이 점차로 의병을 일으켜서 적을 죽인 것이 많았다.”(12월 18일 기사).

44)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2월 19일 보고).

수성집사(守城執事) 지발련(池發蓮)으로 하여금 바로 좌수영의 문에 바쳤습니다. 성을 지키는 일은 갑절이나 엄중히 단속하고 법망에서 빠진 비류도 특별히 뒤를 밟아 탐문하여 체포해서 바칠 계획입니다.⁴⁵⁾

위의 사료는 전라도 흥양현에서 이루어진 농민군 토벌과정을 기록한 것이었다. 장시에서 법정을 열어 사로잡힌 동도의 거괴 유봉만 이하 10명을 총살한 후, 다시 거괴와 추종자 등 3명의 머리를 나무상자에 담아 좌수영에 바쳤다는 것이다. 이 사료는 위의 75개의 효수사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만큼 잔인하게 처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이렇게 전국각지에서 일대 농민군을 추적하여 추후 압색하여 다시 이들은 해당 고을의 장시에서 법정을 열어 즉결 처단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후 계속해서 보고된 첩보류(牒報類)에서 반복되어 언급되는 ‘개좌(開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했다는 사무적인 의미로서 사용될 뿐이었다. 이것은 정식의 재판이 수행되지도, 합리적인 처결도 존재하지 않은 그야말로 원시적인 ‘공개처형장’에 불과하였다.

한편 지방에 따라 공개재판장에서 행해진 재판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일반적이었는지는 1894년 12월 중순에 벌어진 순천지역의 사례에서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우선 동학농민군에 대한 처벌의 구분과 세부 법적 규정은 정밀하게 세워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순천부에서 농민군을 처벌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을 만들어 처벌했는지에 논란이 일어났다. 1894년 12월 12일에 좌수영 본부(本府)의 좌수(座首) 장동렬(張東烈), 호장(戶長) 장태완(張泰完), 이방(吏房) 이돈근(李敦斤)을 모두 압송해 가서 18일에 쏘아 죽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자 1895년 1월 4일 첩보에서 순천부 수향공형(首鄉公兇)의 요청으로 이들이 전라좌수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탐문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사료 5- 나] “그런데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는 순천부에서 알 수 없어 시끄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일에 순천부의 관리들이 좌수영에 보낸 전령에는, ‘공형은 관의 이목(耳目) 이요 고을의 두령(頭領)이니, 그 소임이 이미 무겁고 그 책무 또한 무겁거늘, 동도들이 변란을 일으킴에 의를 들어 힘써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방팔방으로 접한 놈들에게 군기를 제공하고, 관장을 내쫓으며, 돈과 곡식을 절도 없이 거두어들이고, 백성들의 돈과 곡식을 소모시켜 적들을 여러 달 동안 길러주고, 읍에 저축해둔 것을 함부로 써서, 누차 오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끝내 오지 않았습시다. 위와 같은 죄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좌수와 공형 등 세 놈들은 이번 18일에 효수한 후, 이미 급히 보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간의 사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급히 보고하오며, 숨어 있는 비류들은 계속하여 정탐하고 잡아들여 말끔히 쓸어낼 계획입니다.”⁴⁶⁾

45)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1일 보고).

46) 『양호우선봉일기』 <좌도수군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가 보낸 공문서>(1895년 1월 7일 보고).

그래서 순천부 좌수 공형의 처형을 탐문한 결과, “좌수 장동렬, 호장 장태완, 이방 이돈근은 그들 자신이 두령(頭領)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도들과 배를 맞대고 여러 번 명령을 내렸으며 끝내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부사를 협박하여 쫓아내고, 끝내는 곤장까지 맞게 하였으며, 인부(印符)를 빼앗는 치욕을 주었다. 또한 영장을 쫓아내어 본영(本營)으로 화를 피해 달아나게 하고, 군기(軍器)를 남발하여 재삼 병영을 욕보이고, 인가 800여 호를 불태우며, 여러 달 동안 적들을 길러주느라 백성들의 돈과 곡식을 소모시키고, 읍에서 저축해둔 것을 제멋대로 써버렸다.”는 범죄사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범죄사실은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후보고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사료 5-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6일 세 명의 관속(官屬)들이 의로움에 의지하여 힘을 떨치고 일어나 적수단권(赤手單拳)으로 일제히 적을 토벌하니, 관리와 백성들 사이에는 스스로 다시 살 날이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달 초 9일에 좌수영의 군병(軍兵)이 와서 본읍에 자리를 잡고 여러 날을 머무르더니, 그 달 13일에 좌수와 공형들을 좌수영으로 압송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문초하는 일 없이 형틀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은 달 18일에는 그대로 쏘아 죽였습니다.⁴⁷⁾

위의 혐의로 처벌된 3명의 관속은 사실 좌수영이 압송해서 한번도 문초하는 일 없이 형틀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같은 달 12월 18일에 갑자기 처형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는 순천부에서 알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어 19일에 순천부의 관리들도 좌수영에 보낸 전령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숨어 있는 비류들을 계속하여 정탐하고 잡아들여 말끔히 쓸어낼 계획’이라는 토벌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었다.⁴⁸⁾

[사료 5-라] 1895년 1월 이후에는 동학도에 대한 처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염려하여 좀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담고있는 관문(關文)을 보내고 있었다. “본진(本陣)이 오늘 출발하여 나주로 갈 것이니, 이후 잡는 동도 중에서 거괴는 진영 앞으로 압송하고, 그 나머지는 죽을 죄를 저지른 자들만 처결하고 죽인 후 보고하라. 인명을 죽이는 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니, 철저히 실상을 조사하고 심분 신중하게 살펴 털끝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⁴⁹⁾

47)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7일 보고).

48)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15일 보고).

49)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8일 보고).

이후 1895년 1월 중순에 양호우선봉에 올린 <첩보>에 의하면, 이전 동학농민군 토벌과 관련하여 12월 17일에 고창에 주둔해 있던 교장 홍선경이 "잡아들인 거괴 손화중(孫化中)·홍낙관(洪洛寬)·서천일(徐千日)을 압송해 왔다. 그래서 곧바로 나주로 압송하였다. 또한 일본 진영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죄인 등 도합 94명도 같이 나주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죄인 등의 성명을 수정한 후 책자로 만들어 일본군 진영 대대에 올렸습니다'라고 간단히 보고하였다. 이어 지난 12월 30일, 94명 중에서 73명은 일본 진영에서 쏘아 죽였다. 이후 '각처에서 획득한 돈·곡식·군기와 죽인 죄인들의 성명을 아울러 수정한 후 성책하여 급히 보고하라' 하였기에, 성책하여 베껴 쓴 후 올려 보낸다는 보고를 올리고 있다.⁵⁰⁾ 이때 붙잡힌 동학농민군은 도합 73명으로 일본 진영에서 쏘아 모두 총살당했다.

위 순천부의 사례를 확장해 보면, 전국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조회 없이도 자의적으로 즉각적으로 사형을 위주로 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및 참여자의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갑오개혁의 사법 개혁 조치와 농민군 처형의 편파성

1) 갑오개혁의 사법 제도의 개혁 이념

갑오개혁은 1894년 7월부터 조선왕조의 낡은 재판제도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군국기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죄인 자기 이외의 연좌율을 일정 물시할 것"이라는 연좌법 폐지를 의결하였으며, 각부, 각아문, 각군문에서 함부로 체포 시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1894년 6월 28일(음력) 갑오개혁 정권은 군국기무처의 개혁 의안 중 여덟 개 행정부서의 개편을 시도하여 법무아문을 설치하였고, 이듬해 법부로 개칭하여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7월 8일에는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정(明定)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수 없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체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법적 개혁 조치가 바로 실시될 수는 없었다. 먼저 판사·검사 등 새로 마련한 직제에 걸맞는 법률소양을 갖춘 사법관이 부족했으므로 당분간 구래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의적 재판을 일삼았던 그래의 관찰사·수령이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구래의 법령들과 신규 법령들이 서로 뒤엉켜 법률적용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법부에서 각급 재판소의 민사·형사 재판에 일정한 지령을 내리면서 관여하였으므로 근대법에 입각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소 제도를 수립하지 못했다.⁵¹⁾ 이후 일련의 법률제도의 정

50) <각처에서 잡아들인 동괴(東魁)> 무장: 김경운(金景云)-도집강(都執綱), 송진팔(宋鎭八)-구도인(舊道人)으로 행패(行悖)를 부림, 윤상은(尹相殷)-포사대장(砲士大將), 송군화(宋君化)-최문학(崔文學)-김자일(金子一)-접주(接主) 등 이군서(李君瑞)-김계룡(金桂龍)-장두일(張斗一)-조경순(趙景順)-대접주(大接主). 고창: 성두팔(成斗八)-황정오(黃正五)-황찬국(黃贊菊)-세 놨은 서사(書寫). 영광: 이현숙(李賢淑)-노명언(魯明彦)-정기경(丁基京)-대접주(大接主) 등 함평 : 이상삼(李相三)-도독대장(都督大將) 등 도합 73명(『양호우선봉일기』 <군문아문에 첩보(牒報)> 1895년 1월 12일 보고).

51) 도면회,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형사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7, 2001, 331~32쪽.

비를 통하여 각종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의 근대적 면모를 갖추는 제법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법부령으로서 각급 재판소의 설치와 직원에 관한 법률이 주로 반포되었다. 점차 재판소의 설치가 진행되자 이제 재판운영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소송법이나 각종 처벌에 대한 규례 등이 제정되었다.⁵²⁾

1894년 12월 13일에는 고종은 중앙과 지방의 신사와 백성들에게 윤음을 내렸다. 이른바 종묘 서고문 행사에 이어 내린 윤음이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려면 그것은 사실 오랜 폐단을 바로잡고 실속 있는 정사를 잘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다. 이에 짐은 마음속으로 크게 경계하고 조정에 문의하니, 오직 경장(更張)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짐이 허심하게 생각을 터놓고 선대 임금들이 정한 법을 상고하고 각국의 형편을 거울로 삼아 관제를 고치고 기년(紀年)을 반포하며 군사 제도를 개혁하고 재정을 정리하며 교육에 힘쓰고 조세(租稅)와 부역(賦役)을 공정하게 하며 상업과 공업을 세우고 농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또한 일체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크고 작은 것을 물론하고 전부 없애버려서 백성들을 세우고 위아래가 협력하여 그 말을 실천에 옮기고 그 실천이 실지 효과를 이룩하게 하면,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14개 조항 중에는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민법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⁵³⁾

그래서 법무대신 서광범이 아뢰기를, “지방에서 하는 재판 외에 법무아문의 일체 재판은 의금사(義禁司)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데, 해사(該司)를 법무아문 임시 재판소로 이름을 고치고 여러 가지 재판을 모두 그 재판소에서 하게하며 본 아문에서는 재판과 형벌 적용 등의 일을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 “무릇 형구(刑具) 중에서 가혹한 형구는 사형죄 외에는 모두 쓰지 못하게 하며 형(刑)으로는 단지 태형(笞刑)만 적용하고, 가두는 데서는 단지 칼을 씌우고 족쇄를 채울 것입니다. 도적이나 사람을 상했던지 불을 지른 것과 같은 죄인에게는 칼을 씌우고, 신문할 때에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숨기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형(笞刑)을 치며 경한 죄인과 노약자에 대해서는 칼을 씌우거나 족쇄를 채우지 못하게 하되 도망칠 염려가 있는 자는 이 범위에 넣지 말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감영(監營), 각읍(各邑), 각 진영(鎭營)의 형벌을 적용하는 곳에서도 이 규례로만 따르고 혹시라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1894년 12월 27일 고종은 별도의 조칙을 내려 동학농민군 토벌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활동을 중지시켰다. 먼저 “남도(南道)의 비적(匪賊)들이 차례로 평정되어가니 순무영(巡

52)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법률 1호~17호, 법부령 1~9호, 법부고시 1~3호.

53) 왕현중, 앞의 저서(2003), 227~228쪽.

撫營)을 없애고 토벌에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절제(節制)하여 나머지 비적들을 수일 내로 없애거나 붙잡게 하라.”고 하였다. 이어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 군사를 출동시킨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고, 또 같이 토벌한 일본(日本) 군사들이 추운 계절에 한지(寒地)에 있으니 그 노고를 생각하면 편안히 잠들 수 없다. 특별히 군무 참의(軍務參議)를 파견하여 일본 병관(兵官), 군사들과 각진(各陣)의 선봉 부대, 중앙과 지방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있는 곳에 빨리 가서 위문하고 호궤(犒饋)하고 오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9월 중순 이후 동학농민군 토벌을 담당하던 순무영이나 일본군을 비롯한 각군의 동원을 그친다는 선언이었다. 이어 "일체 사형죄에 대하여 능지 처참(凌遲處斬) 등의 형률(刑律)을 이제부터 폐지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형벌하는 것에는 교수형(絞首刑)만 적용하고 군율(軍律)에 의하여 형벌하는 것에는 총살만 적용하라.”고 하였다.⁵⁴⁾

이는 그동안 갑오개혁의 근대적 사법제도의 일환으로 가장 크게 주목해왔다. 이 칙령이 발표된 시점은 1894년 12월 27일에 주목해 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무려 200여 명의 희생을 치른 후였고, 더욱이 12월 27일 이후 1월에도 여러 지역에서 효수형이 거행되었으므로 가혹한 학정을 덮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1895년 4월부터는 법률 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정식으로 공포하여 사법권 독립을 제도화하였다.⁵⁵⁾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근대법 체계 일반과 운영 방식이 갖추어졌다.

〈표 9〉 갑오개혁시 주요 법률 제정(『법부청의서』를 중심으로)

| 일자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1895.4.16. | 유형분등(流刑分等) | 유형을 3등으로 나누고 1등, 유종신(流終身), 2등 유15년, 3등 유 10년 =>“유3천리는 유종신, 유2천5백리는 유 15년, 유 2천리는 유 10년으로 정함” | 양반 관료의 처벌 수위 낮춤. |
| 4.16. | 형벌작감 | 특별법원 경감규정, 하등의 사건이든지 본형에 1등 혹은 2등을 경감 | 왕실과 관련된 재판에서 관대한 처분 고려 (이준용 재판 등) |
| 4.16. | 죄인 물위거성(勿爲去姓) | 전부터 모역(謀逆)죄인의 거성(去姓)하는 예를 물시흠. | 성명 인격 평등권 보장 |
| 4.29. | 법률 7호 징역처단례 | 도형(徒刑) - 징역, 유종신- 종신, 유15년 -15년, 유10년 -10년, 도3년 -3년 등 이하 차감하여 제정됨. 제2조 국사에 관한 범죄는 유형을 두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어 취역(就役)을 면함. | |
| 4.29. | 8호, 고등재판소 수리 지방재판소 불복상소 | 감영 유수영 및 기타 지방재판의 상소를 고등재판소에서 수리 심판. | |

54) 이것은 칙령 30호로 '대벽(大辟-사형제도)의 처참(處斬)-능지(凌遲) 등 형률은 폐지하고 법무 행정(行刑)은 교(絞)만을 사용케 하고 군률(軍律) 행형(行刑)은 포(砲)만을 사용케 하다'는 내용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보』 갑오 12월 27일 기사 참조).

55)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法律 제1호 「裁判所構成法」 개국504년 3월 25일, 190~198쪽.

| 일자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5.20. | 10호, 고등재판소 수리 칙·주임관 범죄 | 지부장관 및 칙주임관이상은 당분내 고등재판소에서 수리 심판, 현감이상의 지방관에도 적용. | |
| 5.26. | 범죄문무원원 제의 친공죄외 불요주청 | 범죄한 문무원원에 의친(議親)과 금공죄(公罪)외에 불요주청하는 일을 폐지함. | |
| 윤 5.10. | 고등재판소 치예비판사 2원 | 고등재판소 예비판사는 법부 칙주임관 중 임명 | |
| 윤 5.10. | 지방재판소 개설 | 개장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는 개국 504년 윤 5월 15일부터 점차로 개설, 인천재판소 등 22개소 | 종래 감영 유수영 기타 지방관아 재판사무는 폐지 |
| 윤 5.12. | 검역규칙 | 호열자 병 및 기타 전염병 만연을 방지 검역 및 정선(停船) 시행, 위반한 자는 200원 이내 벌금. | |
| 윤 5.14. | 법부 검사 임명 | 검사 안녕수(安寧洙) 등 | |
| 윤 5.20. | 재판소 형벌 작감 | 개항장, 지방, 순회, 고등재판소 형사재판상 경감하는 법률안 | |
| 6.3. | 한성재판소 판사 임명 | 한성재판소 판사 조한복(趙漢復) | |
| 6.12. | 주청사형(死刑) | 살인 및 강도죄인의 사형에 처할 자는 추청함이 가부(可否) | |
| 6.25. | 치판사시보검사시보 | 재판소 판사시보, 검사시보(7.1.부터 시행) 이하 직급 관등 봉급 등 제정. | |
| 6.27. | 죄인석방안(27호) | 개국 504년 4월 1일 이전 전죄인 참량 방석청의서- 모반과 살인, 절도와 강도, 통간(通奸), 편재(騙財)에 범한 죄인 외에 일체 방석. 징역에 취한 죄인은 법부대신이 참작수속(收贖)하는 칙령안(기안 6월 20일) | 유길준의 석방안과 달리 모반, 살인 등 중대범죄, 강도 통간, 편재 등 일반 잡법도 석방하지 않는 서광범안이 통과됨. |
| 8.10. | 각관찰부 치판사시보 검사시보 | 각부관찰사는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집행, 참서관은 검사의 직무 시행 | |
| 9.1. | 죄인방석에 관한 건 | 이준용 특사 처분, 이태용, 박준양은 복관, 그나머지 제죄인도 일체 방석 | |
| 9.11. | 한성재판소 별치 주사 급 정리 | 본부 주사 3인을 감액, 재판소 주사 8인을 별치 | |
| 9.5 | 칙령안 법부관제 개정 | 법부주사, 재판소 구성법 개정 | |
| 10.28. | 시종원경 이재순 청나 | 고등재판소 죄인 임최수, 이민광 등 공사, 시종원경 이재순 거론하였으므로 나래(拿來)함. | |
| 11.13. | 모반죄인 박선 등 처교안 | 모반죄인 박선, 이주회, 윤석우 등 고등재판소 엄핵심리 8월 20일 사변에 가담 혐위(법부대신 서리, 법부협판 장박). | 을미사변 조선인 주모자로 처벌 |
| 11.13. | 사형집행 상주안 | 모반죄인 피고인 박선, 이주회. 윤석은을 본년 본일 하오 11시에 좌감옥 교옥에서 사형 집행 | |
| 11.15 | 특별법원 피고 이재순 등 조율상주 | 제죄인 모반사건을 엄핵심리, 피고 이재순은 본년 10월 11일 결내도 임최수, 이민광, 이충구 등의 공초에 이름이 나옴. 임최수, 이도철 적도모반죄로 교형, 이민광, 이충구 등은 적도조보반률 1등을 감해 태1백, 유종신에 처하는 등. | 모반죄 사형 집행(11월 15일 하오 1시 좌감옥서 교옥(絞屋)에서 시행 |

| 일자 |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1896.1.11. | 각군수청리관내 소송 | 지방편의에 따라 각해군수로 해관내 일체소송을 청리게 함이 합당(칙령 5호). | 이후 각부 관찰사를 각 재판소 판사로 임명함(1.18). |
| 2.16. | 죄인 민영준 민형식 조울상주 | 죄인 민영준, 민형식 고등재판소에 나치 사학. '대전회통 금제 조 호강품관능학백성자 장 1백, 유3천리 처함. | 법률 6호로 징역증신으로 바뀌었으나 정상 작량 2등으로 감해 징역 10년에 처함. |
| 2.24. | 법부고문관 고빙 | 법부고문관 결원, 일본인 野澤鷄一 고빙 | |
| 4.4. | 적도처단례 | 법률2호 적도처단례 제정, 범죄에 따라 교형, 태형후 역형(役刑), 역형, 태형 등으로 세분화. | 총 20조로 반포일로부터 시행함을 명시함. |
| 참고: 『법부청의서』 (1895~1896) 1책, 『의주(議奏)』 54책,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 20~21쪽. | | | |

이에 따라 지방재판소는 일체의 민형사 재판을 관할하고 단독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의 재판을 둔다고 하였다.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 재판소는 내국인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관련된 민·형사 재판을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순회재판소는 매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법부대신이 정하는 장소에서 임시 개정하되 개항장재판소 및 각 지방재판소의 상소를 관할하였다.

새로운 재판소 제도하에서는 종전과 다른 점은 종래 단심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소 사건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예컨대 고등재판소는 재판장 1인, 판사 2인의 합의 재판제를 취하여 한성 및 인천항재판소의 상소만 수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각지방에 소재한 지방재판소의 상소는 순회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국가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재판제도를 시작한 것이었으며, 향후 근대적인 시민권과 권리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재판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근대적 재판소의 출발은 어김없이 1894년 동학농민군의 법적 처벌과 과도한 희생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았다. 근대적인 법제의 시행은 1894년 하반기 동학농민군에 대한 토벌과 진압과정의 실제 사실과 배치되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성격이었다. 예컨대 <죄인석방안>(6.27)이나, <모반죄의 사형집행(교형 실시)>, 부패관료의 처벌 수위 낮춤에서 사법 처리의 편파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법률 2호로 공포된 <적도처단례>는 사실상 구법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에 있어 이전의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⁵⁶⁾ 『대명률직해』에서는 일반 양인을 노비로 만드는 약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신분제를 전제로 한 법률임에 비해서, 적도처단례는 모든 인간에

56) 도면회는 『대명률직해』 형률 도적편 약인약매인조(略人略賣人條)와 「적도처단례」 제8조 7항의 위 조문을 비교하였다. 그는 규정상 양인, 노비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인가남녀', '고용'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구법전체계의 복잡한 조항들을 근대적 체계로 정리하고 노비의 인격적 독립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으로 높이 평가하였다(도면회, 「갑오개혁기 형사법규의 개혁」 『奎章閣』 21, 1998, 15~18쪽; 도면회, 『한국근대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151~155쪽).

대한 약취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⁵⁷⁾ 예컨대, 제8조 적도(賊盜)의 죄목과 형률(刑律)을 규정한 부분, 제7항에서 ‘인가(人家)의 남녀를 약취(略取)하여 자취(自取)하거나 전매하여 고용(雇傭)을 작(作)하는 자(者)’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에 대해 일일이 법률적으로 처벌하게 된 것이었다. 인식의 약취에 대하여 준거가 되는 적용 조문이 드디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법적 처벌규정이 실제 생활에 적용된다면, 노비, 혹은 고공에 대한 착취를 근절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비는 이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취급받게 될 것이었다. 물론 근대 법률이 평등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시행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였다.

1894년 12월 이후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무아문의 권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개입하고 전과정을 주도하였다. 선고 판결에서는 반일농민전쟁의 죄목이 아니라 구래 대명률에서 규정한 반란죄로 규정되었다. 더욱이 1895년 4월 신식 재판소 제도의 실시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오정권과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3월 30일 동학농민군 지도자 5명을 전격적으로 처형해 버렸다. 이러한 농민군 지도자의 처형조치는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반민중적, 친일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일본이 농민군의 처형과 법률적 처단의 공동 법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⁵⁸⁾ 그러므로 이 시기 근대 재판소 제도의 의의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근대적 재판제도의 시행은 밑으로부터 농민들의 개혁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농민들의 학살을 합법적인 법률제도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1895년 이후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의 처벌

1895년 4월 이후 동학농민군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한편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군에 대한 과도한 탄압과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 당시 조선 정부의 형사집행과 관련된《정배안》에서는 1895년 3월경에 작성하여 1894년 이후 유배된 자의 죄목과 유배지 등이 기록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⁵⁹⁾ 주목되는 부분은 당시 각 지방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각 지방관의 비리와 횡령에 대한 조치와 함께 사후 처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57) 『大明律直解』 法制資料 13, 法制處, 1964, 395~397쪽.

58) 왕현중,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2015, 252~253쪽.

59) 원 제목은 『도유배안(島流配案)』(1책)이며, 내지에는 ‘정배안’이라고 했고, 대조선국 법무 형사국의 인신이 찍혀있다. 조선정부는 새로운 재판소 제도가 시행하기 이전에 중범죄 죄인의 경우 유배형에 처하도록 한 사법개혁의 준비에 따른 문서였다. 1895년 3월 당시 첫머리에는 평안도 용천부에 유배된 백은수(白殷洙)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는 1885년 을유년의 백성 침학죄로 유배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전쟁과는 관련이 없다.

예컨대 경상도 금산군에 유배된 이용태(李容泰)의 경우, 1894년 4월 21일 승정원의 전언에 의해 유배형에 처한 것으로 “고부 안핵사로 전내(傳內)의 명을 받아 안핵(按覈)하라는 법의(法意)가 있었지만, 하등 긴급하지 않고 아무런 사계(查啓)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를 일으켰으며 이미 분함과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유배형에 처해진 부패관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⁶⁰⁾

경상도 거제부에 안치된 김문현(金文鉉)의 경우, 5월 14일부터 승정원의 명에 의해 위리안치(圍籬安置)하여 가극(加棘)의 벌을 받았다. 주된 이유는 그가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농민봉기를 막지 못하고 도리어 전주성을 버리고 월경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가중 처분된 이유는 김문현이 직접적으로 전주성 함락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다가 그해 5월 20일에 이설(李悛)의 상소에 의하여, 전운사 조필영, 군전사 김창석, 전고부군수 조병갑, 안핵사 이용태, 전라감사 김문현, 영광군수 민영수 등 부패관료의 처벌을 가중 처벌하라는 상소에 기인하였다. 고부군민의 원흉이었던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해서도 5월 17일 엄형 1차로 신장(訊杖) 30도 후에 원악도 안치의 죄를 처분하였다. 이어 조만승, 민영준, 민형식, 김세기, 조필영, 임치재, 이소영, 신학휴 등이 수많은 부패관료들이 그해 말까지 계속해서 처벌되었다. 전총제사 민응식과 전전개성유수 김세기도 포함되었다.⁶¹⁾

〈표 4〉 1895년 6월 27일 죄인석방자 중 주요 관료 명단

| 번호 | 이름 | 정배 사유 | 번호 | 이름 | 정배사유 |
|----|----------|----------|----|-------------------------|----------|
| 1 | 김문현(金文鉉) | 거제 위리안치 | 16 | 민형식(閔炯植) | 범장 |
| 2 | 김세기(金世基) | 영양 정배 | 17 | 오석영(吳錫泳) | 무주 도배 |
| 3 | 김태욱(金泰郁) | 고금도 도배 | 18 | 이용직(李容直) | 범장 |
| 4 | 박수만(朴受晩) | 고금도 도배 | 19 | 이용태(李容泰) | 금산 서배 |
| 5 | 백은수(白殷洙) | 용천 유배 | 20 | 이정규(李廷珪) | 선천 서배 |
| 6 | 서정철(徐廷喆) | 범장 | 21 | 임치재(任穉宰) | 녹도 도배 |
| 7 | 신채희(申采熙) | 범장 | 22 | 정기봉(鄭基鳳) | 면천 도배 |
| 8 | 신학휴(申學休) | 범장 | 23 | 조만승(曹萬承) | 고금도안치 |
| 9 | 심능필(沈能弼) | 범장 | 24 | 조병갑(趙秉甲) | 탐호 |
| 10 | 민병식(閔丙奭) | 원주 도배 | 25 | 조병식(趙秉式) | 탐호 |
| 11 | 민영순(閔泳純) | 문경 유배 | 26 | 조준구(趙駿九) | 지도 도배 |
| 12 | 민영은(閔泳殷) | 범장 | 27 | 조필영(趙弼永) | 독운(督運)가혹 |
| 13 | 민영주(閔泳柱) | 고금도 도배 | 28 | 채경묵(蔡慶默) ⁶²⁾ | 범장(犯贓) |
| 14 | 민영준(閔泳駿) | 임자도 위리안치 | 29 | 홍량섭(洪亮燮) | 영춘 도배 |
| 15 | 민응식(閔應植) | 방축 향리죄인 | | | |

비고 : 『관보』 106호, 개국 504년 7월 5일, 1072~1073쪽 ; 126호, 개국 504년 8월 1일, 1134~1136쪽

60) 『계초존안』 1894년 9월 30일조.

61) 오석영(吳錫泳)의 사례로는 그가 전 성주목사로 성을 비워 비적들에게 넘겨준 죄로 갑오년 11월 10일에 귀양을 보내졌다. 정배안의 기록은 1895년 3월 이후에도 추가되어 4월 20일 제주 등지에 유배를 떠난 종신죄인 서주보 등 9명에 대한 처분을 기록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백지로 남아 있다.

당시 유배형을 처벌하게 되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고종은 반복적으로“이것은 내가 백성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세신(世臣)을 보전하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왕의 태도는 관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차별적인 언사였다. 이들 부패무능 관료들의 유배 형은 1895년 6월 27일 전격 중단되었다. 그 이전에 각종 죄명으로 인한 부패관료들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조준구의 경우에는 전도호부사 김해부사 민씨의 공전 포은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⁶³⁾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1895년 6월 갑오개혁 정부내에 대립과 갈등이 작용했다. 6월 19일 내부대신서리 내부협판 유길준은 새로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의 국무대신들에게 비밀회의(秘密會議)를 열어 개혁방침을 다시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⁶⁴⁾ 최근의 정세는 지난 개혁을 다시 옛날의 제도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권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길준은 조종의 종사와 강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책을 제기하였다. 제1안은 신법을 엄명(嚴明)히 정하는 안으로, 다시 말하면, 대소 죄인의 석방안(釋放案)이었고, 제2안은 성의(聖意)를 봉준(奉遵)해야 인민도 상송(相訟)하는 폐가 없고 각 사업에 편안하게 하는 안, 제3안은 ‘전지개량(田地改量)하는 폐를 없애기’ 위한 방안, 제4안은 국내인민의 교육대도를 세우기 위한 안이었다.⁶⁵⁾ 이 안건을 내각의 다른 대신에게 회람시켜 이를 수렴하여 추진하려고 하였다.⁶⁶⁾

이때 정치 개혁의 방안으로서 내부대신서리 유길준이 ‘대소죄인 방석하는 사’라는 사면안건을 제의하였다. 1895년 4월 1일 이전(신식 재판소제도 시행 전)에 국사범 이하 정치상 관계 및 기타 유형(流刑)에 처한 자는 모두 석방하자는 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농민전쟁과 관련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된 농민들도 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법부대신 서광범은 다음날인 6월 20일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개국504년 4월 1일 이전 죄인참량방석 청의서’에서 그는 유길준의 정치범 무조건적인 석방을 반대하였다. 대신에 그는 적용 예외대상 중에서 절도, 강도, 통간, 편재 등 파렴치한 범죄를 범한 죄인 이외에도 모반(謀反)과 살인자(殺人者)까지도 포함시켰다.

62) 『계초존안』 1894년 9월 11일조.

63) “惠廳으로 보내야하는 43,626兩 2錢 6分은 포함한 것에서 除減하였으며 오늘날 京査官이 다시 조사할 때 挪用하고 감당하지 않은 조목을 샅샅이 조사하여 보니 117,465兩 5錢 7分이며 민씨가 소송에서 당시 胥吏였던 裴晚甲이 횡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管下冊子와 別錄冊子 각각을 작성하여 처리하였으며 본인은 실수 없이 처리하였다고 하였으며 관련하여 책자를 살펴보니 각 공전의 挪用과 加下條는 분명하니 읍에서 더 조사할 것이 없으며 배만같이 각 건의 문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상송하겠다”고 하였다 (『첩보(牒報)』 1권, 奎26300, 20면).

64) 『의주(議奏)』 21책, 「秘密會議求하는 請議書」(內閣大臣署理 內務協辦 俞吉濬 → 內閣總理大臣 朴定陽, 1895년 6월 19일) (『의주』 2,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336~337쪽).

65) 『의주』 21책, 「秘密會議求하는 請議書」, 337쪽.

66) “軍部照覆 軍二十四 貴第六十三號照會을 接准하온바 內部大臣署理의 秘密請議案에 第二第三件에 愚見을 另具하오니 照亮하심을 要함 軍部大臣臨時署理度支部大臣 安駟壽 內閣總理大臣 朴定陽閣下”(『각부래조존안』 2책, 「軍部照覆 軍 24」, 1895년 6월 25일 ; 『각사등록』 63책, 333쪽).

이는 1895년 4월 이전 범죄인 중에서 모반이나 살인자로 거론함으로써 농민전쟁에 연루된 민중들을 석방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징역에 처한 죄인의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법부대신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법부대신이 선별적으로 가려내어 석방시키겠다고 입장은 석방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에 다름없었다.⁶⁷⁾ 최종적인 조치는 법부 주도로 주로 유배된 주요 관료들만에 한정하는 사면조치를 취했다.⁶⁸⁾ 유배형 관료의 석방조치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제기했던 조선국가의 정치 개혁과 부패 관료의 청산과제가 1년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법부 소속의 죄인 83명과 각읍 소속의 죄인 196명 등 모두 279명이 석방대상자였다.⁶⁹⁾ 고종은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인들인 민영준을 비롯하여 조병식, 민영주, 민형식, 김세기, 민병석, 이용태, 김문현, 이용직, 조필영, 조병갑, 민응식, 김창렬, 조만승, 임치재, 서정철, 심능필, 조준구, 민영순 등 19명의 260명을 방송(放送)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갑오개혁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취한 대사면의 결과는 각읍 소속 죄인의 석방을 동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패관료층의 석방조치에 불과했다.⁷⁰⁾

이에 반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정배한 자들은 계속해서 강화된 탄압을 받았다. 예컨대 1895년(고종 32) 7월 19일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법부(法部)의 훈령에 의거하여 올린 동학 농민군의 정배(定配)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해 6월 25일 법부에서는 임피현에 거주한 고장현(高長賢)을 함경도 영흥에 정배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는 1894년 7월에 임피군 남일면(南一面) 상갈영리(上葛零里)의 동학 접주로서 40명 동학군을 거느리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전주부로 압송되고, 1895년 3월에 함경도 영흥에 정배되었다는 보고만 있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1894년 9월 이후 동학농민군 토벌과정에서 이루어진 잔학한 처형방식에 대하여 동학농민군 ‘거괴(巨魁) 지도자에 대한 효수(梟首) 처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조선정부·일본군대·지방 민보군 등 탄압자에 의한 농민군 학살 과정을 각 지역의 탄압 사례로서는 자세히 규명해 왔으나 조선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이었다는 성격이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향촌사회 지배권력층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자행된 폭력의 양상을 지역적인 사례 연구와 더불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갑오개혁의 근대 개혁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주목하려는 것이었다.

67) 왕현중,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409~411쪽, 참조.

68) 『관보』 106호, 1895년 7월 5일, 1072~1073쪽.

69) 『관보』 106호, 개국 504년 7월 5일(1072~1073쪽) ; 126호, 개국 504년 8월 1일(1134~1136쪽).

70) 『고종실록』 1895년 7월 3일 기사.

우선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의 과정을 살폈다. 7월초에서 중순에 이르는 시기에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관민상화’의 대책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준의 <통문>(7.6.)과 김학진의 <감결>(7.17.)로 확인하였다. 이후 8월말까지는 전라도 지역에서 전봉준 등은 재봉기를 아직 일으키려는 생각이 없었다. 다만 8월 말이후 흥선대원군의 개입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대응하기 시작했고, 특히 9월초에 경상도와 순천에서 영호대도소 김인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결국 9월 10일 이후 14일에 삼례에서 전봉준 등 주도세력이 재봉기하였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2차 봉기에 대응한 조선의 갑오정권과 일본군의 동향을 살폈다. 9월 14일에 ‘용무’의 입장을 천명하고 9월 21일에 양호순무영을 설치하였으며, 일본은 9월 18일에 탄압을 강요하고 결국 양호도순무영 산하 조선군과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주축으로 하는 일본군 등이 연합으로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탄압은 철저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분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가혹했다.

또한 농민군의 사후 처리 방침은 세부적으로 처벌의 정도로 효수, 총살, 타살, 석방 등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중에서 효수의 경우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중 거괴라고 간주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75차례 이상 자행되었고, 희생자도 226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들의 처형 방식은 대개 고을의 장시에 개좌(開坐)하여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군민들을 모아 잔혹한 처형을 통하여 경계하도록 하였다. 실제로는 공정한 증거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진압군의 자의적인 강압에 의해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효수형’은 고대적인 가혹한 형벌에 의한 인명 참살이었으므로 근대 법률 개혁을 지향하는 갑오개혁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1894년 12월 종묘에 나아가 홍범 14조라는 개혁의 원칙을 천명했던 고종은 12월 27일에야 사후적으로 효수형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처벌을 감추려는 정책일 따름이었다.

그리고 1895년 4월 이후 새로운 재판소 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은 종전 대전회통의 반역죄 조항에 의해 ‘교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그해 6월 갑오개혁 1주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지는 대석방이라는 사면조치에서는 그동안 지탄을 받아왔던 부패한 관료층의 사면조치가 이루어진 반면, 동학농민군 수감자의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진압과정을 살펴본 결과, 동학농민군의 학살은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전근대적인 학살 양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갑오개혁기 근대 재판소 제도 등 사법제도 도입과 더불어 근대 시민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지향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동학농민군들은 철저하게 근대법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미증유의 법적 사회적 사형으로 처벌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조선과 일본 연합전선의 합력(合力)은 아래로부터 민중의 저항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1894~95년 한국근대 이행의 주체와 경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역사적 의미와 특성을 생각해야 하는 여지를 남겼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에 대한 토론문 1

김 항 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에 대한 토론문

김항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왕현중 선생님의 글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농민군에 대한 처벌 과정을 중심으로 당시 사법제도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동학의 사상과 조직 구조, 농민군의 봉기 과정과 활동, 일본군 개입 및 전투 양상, 동학운동의 반외세·반봉건 성격(최근의 어셈블리까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봉기 이후의 처벌’, 특히 그 처벌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조건과 사법 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형벌 방식과 사법 제도의 운용에 주목하면서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사법 개혁이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전쟁의 ‘종결 국면’에서 국가와 민중 사이의 권력관계와 폭력의 문제를 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재판의 비사법적 문제

먼저 ‘비사법적 처벌’에서 효수형은 단순히 사형이 아니라, 시신의 머리를 대중 앞에 오랫동안 전시하는 극형입니다. 이는 처벌 대상의 사회적 파멸뿐 아니라, 관람자(백성)에 대한 정치적 경고와 질서 회복을 위한 상징적 효과를 노린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흥경래의 난, 임술민란의 가담자, 가깝게는 임오군란의 가담자들도 효수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제도의 전환기 형식상 전통적 관행에 따른 조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근대적 사법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오개혁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형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봉건적인 형법인 『대전회통』 형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 등에 대해 동학농민군들은 근대적 재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동학관련 사법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1895년 3월 25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 「재판소구성법」은 조선 정부가 근대적 사법제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갑오개혁기의 법제 정비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공식적인 재판소 제도가 시행되었고, 법무아문이 중심이 되어 각급 재판소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사법제도가 시행되기 바로 직전 혹은 시행 초기 단계에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전봉준에 대한 재판은 1895년 3월 29일, 즉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1일보다 이틀 앞서 법무아문 산하 법무아문 권설 재판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전 연구(「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2005)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상의 문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재판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혹은 사법제도의 틀 밖에서 이루어진 초법적 처벌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재판소구성법」은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재판소 구성과 법률 적용 절차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동학군 지도자 처벌은 법령상 근대 사법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 사법 기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당시의 처벌은 ‘불법’, 혹은 ‘비사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지요? 재판이 완전히 법률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은 아니며, 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3월 29일에 형식적 재판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형태적 사법절차는 지킨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재판의 결과와 이에 따른 해석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적용된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 내역

| 연번 | 성명 | 직업 | 나이 | 지역 | 지위 | 형량 | 적용조문 |
|----|-----|----|----|----|-----|--------------|---|
| 1 | 전봉준 | 농민 | 41 | 전라 | 총대장 | 사형 | 『대전회통』 형전 추단조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청문에서 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 니하고 참수하며 그 처자는 노비로 한다 |
| 2 | 손화중 | 농민 | 35 | 전라 | 총관령 | | |
| 3 | 최영창 | 농민 | 37 | 전라 | 접주 | | |
| 4 | 김덕명 | 농민 | 51 | 전라 | 접주 | | |
| 5 | 성두한 | 농민 | 48 | 충청 | 접주 | | |
| 6 | 손해창 | 농민 | 26 | 충청 | - | 장100 /유3000리 | |
| 7 | 홍낙관 | 농민 | 46 | 전라 | 지도자 | | |
| 8 | 신정엽 | 내관 | 49 | 한성 | 접주 | | |
| 9 | 성종우 | 농업 | 49 | 충청 | - | | |
| 10 | 성종한 | 농업 | 34 | 충청 | - | | |
| 11 | 성운한 | 농업 | 24 | 충청 | - | | |

| 연번 | 성명 | 직업 | 나이 | 지역 | 지위 | 형량 | 적용조문 |
|----|-----|-----|----|----|-----|------------|---|
| 12 | 허운 | 유업 | 53 | 유업 | - | | 『대전회통』 형전 금제조 백성을침범하고 학대하면 장100, 유3천리에 처함. |
| 13 | 김창규 | 농민 | 71 | 경상 | 지도자 | | |
| 14 | 김영진 | 농민 | 33 | 충청 | - | | |
| 15 | 임재수 | 농민 | 74 | 충청 | - | | |
| 16 | 조명운 | 농민 | 42 | 충청 | - | | |
| 17 | 김치선 | 농민 | 40 | 충청 | - | | |
| 18 | 김계원 | 농민 | 63 | 강원 | - | | |
| 19 | 민섬호 | 전참봉 | 35 | 충청 | 접주 | 장100 /도형3년 | 『대명률』 적도편 略人略賣人 |
| 20 | 김순영 | 농민 | 72 | 충청 | 지도자 | | |
| 21 | 안창항 | 농민 | 57 | 충청 | - | | |
| 22 | 황하이 | 농민 | 50 | 농민 | - | | |
| 23 | 김계보 | 농민 | 60 | 경기 | - | 장80 | 『대명률』 잡범 불응위 |

전봉준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동학당이라는 비도 거괴로 4월 상순쯤에 피고가 직접 무리를 인솔하여 전라도 茂長에서 일어났다” 또한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일본인이 조선을 삼키려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 居留民을 나라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전주 근처 參禮驛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 해 9월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起兵하는 大都所로 삼고 전라우도에서 4,000여 명의 군사를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군기軍器를 강제로 빼앗고, 각 지방의 부민富民으로부터 돈과 곡식을 징발하여 삼례역을 떠나 가면서 무리를 모집”하여서 『대전회통』 「추단조」가 적용되었다. 군사를 일으킨 것이 추단조의 “군복을 입고 말을 타는” 행동이 되고, 삼례역을 점령하고 전라우도 일대 관아에 들어간 것은 “관청문에서 변을 일으킨” 행위로 파악했기 때문에 「추단조」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기 의병에 대한 처벌 역시 『대명률』 「소송편」이나 「잡범편」의 조항에 따라, “관청에 침입하여 관리를 협박하거나,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인해 사리가 무거운 자”로 간주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봉준 및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처벌이 구체적인 법조항에 근거하여 진행되었고, 전례와 비교해도 일정한 일관성이 확인된다면, 과연 이를 ‘근대 사법의 편파성’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적 절차가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고, 명문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편파성’이라는 볼 수 있는지, 또한 ‘형식적 합법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여전히 사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에 대한 토론문 2

유 바 다

(고려대학교 교수)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처벌과 근대 사법의 편파성”에 대한 토론문

유바다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문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을 대상으로 한 즉결 처분 및 비사법적 처벌의 법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토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1894년 6월 이후 조선 정부는 군국기무처 의안을 통하여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정(明定)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후 체포되는 동학농민군은 모두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즉결 처분 및 비사법적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분명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군국기무처 의안에 따른 후속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였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때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에서 이루어진 각종 가혹행위들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마찬가지로 이때 조선 정부의 사법 체제 운용이 이전의 제도를 따르기도 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결 처분 및 비사법적 처벌이 그 이전에는 불법이었던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원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중세 시대 조선에 즉결 처분이 불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811년 흥경래의 난 당시에도 정주성 함락 직후 체포된 성인 남성 1,917명 전원이 처형되었다. 대단히 잔혹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도 무리라고 보았고 순무중군 유효원을 삭직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후 유효원은 포도대장을 지내고 죽은 뒤 병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사실상 처벌을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순무영의 흥경래의 난 가담자에 대한 즉결 처분이 불법 취급을 당하지 않은 근거는 斧鉞에 있었다. 부월은 부재중인 통치권력의 절대적 권위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국왕의 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최고등급의 관리에게 그 방면 일대를 전적으로 제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정다함, 2013, 「征伐이라는戰爭/征伐이라는祭祀」). 당시 순무영에는 당연히 부월이 부여되어 있었고 재판 절차 없는 즉결 처분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어차피 서구식의 죄형법정

주의가 도입되지 않은 바에야 조선시대 즉결 처분은 별달리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 당시에도 잔혹한 즉결 처분 및 비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테면 홍주목사 이승우도 부월을 받았다. 물론 『대전회통』 및 『대명률직해』에 따르면 謀反大逆도 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인좌의 난이나 홍경래의 난을 보듯이 부월을 받은 장수의 즉결 처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즉결 처분이 특별히 잔인하였다기보다는 조선시대의 사법 문화가 그러했을 뿐이었다.

셋째,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886년 가입하였고 한국은 1903년 가입하였다. 따라서 조약상으로 1894년 당시 조선 관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즉결 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과 같은 국제인도법은 비체약국 또한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국제 관습이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조선 관군의 행위는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었다. 일본은 더 큰 문제가 된다. 제네바협약 체약국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투 중에 적에 대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포로에 대한 즉결 처분은 분명히 제네바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국제인도법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군에 대한 즉결 처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마찬가지로 1895년 3월 교수형을 당한 전봉준 등에 대한 처벌도 대전 체제와 군국기무처의 조치가 공존하는 과도기에 나온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발표문에서도 나타나지만 군국기무처 조치에 따른 근대적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은 1895년 4월 이후에나 이루어진다. 그리고 갑오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죄형법정주의를 비롯한 근대적 법률 체제의 도입이 후퇴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국기무처에서 제시한 죄형법정주의는 조선의 절대적인 원칙으로 정착하지 못했으며 1899년 「대한국국제」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서구적인 관념 하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시로 한 인도적 법 조치라는 사법 문화의 정착은 그만큼 오래 걸리는 작업이란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제하에서도 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시피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주제발표 3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 :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 분석

조 재 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 :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 분석

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1. 머리말
2. 동학농민군 출신
3. 동학교단 관련자
4. 기타
 - 1) 기독교 투탁과 영학당 활동
 - 2) 동학농민군 혐의자·조력자해당 법률 조항과 판결 양태: 맺음말을 대신하여

1. 머리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법부 자료에는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중 검사국 기안은 1895년 5월부터 1899년 8월까지 법부 검사국에서 각 부, 재판소에 훈령, 지령, 조회한 것과 법부대신의 상주안의 기안문을 묶은 것으로 전 33책으로 되어 있다. 형사국 기안은 법부 형사국에서 1895년 4월부터 1899년 5월까지 기안한 사안을 연월일 순으로 묶은 것으로 전 42권이다. 사리국 기안은 법부 사리국에서 1899년 6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중앙 각부, 각도 각항 재판소 등에 보내는 훈령·지령·통첩·조회·조복 및 상주안건 등의 기안문을 합철한 것으로 전 32책이다. 이 외에 규장각 법부 주요 자료로는 『소장(訴狀)』·『법부내거문(法部來去文)』·『법부내문(法部來文)』·『법부청의서(法部請議書)』·『훈령(訓令)』 등이 있다.

한국의 근대 형사법 체계는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에서 고종의 재가를 받은 법무아문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일 제정된 『각 아문 관제』에 따르면 “법무아문은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사면)를 관리하고 겸하여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 재판을 감독한다.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4인, 주사 20인을 두며 다음의 각국(各局)을 분설(分設)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형사법 체계를 관장하는 기구로 형사국을 두었는데, 규정에 따르면

“형사국은 치죄·형살(刑殺; 사형 집행)·복사(復査; 재검사)·심열(審讞; 죄의 심리)·보석·징역·감형·복권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참의 1인, 주사 8인을 둔다”¹⁾로 되어 있다. 이후 1895년 4월 1일부로 법무아문이 법부로 개칭되고 기구도 재판되면서 『법부관제』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법부에는 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의 4개국을 두고 이중 민사국과 형사국을 1등국, 검사국을 2등국, 회계국을 3등국으로 하였다. 『법부관제』 제8조에 형사국은 형사재판 또는 은사 및 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제9조에 검사국은 전국의 검찰 또는 변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²⁾

이어 같은 해 4월 20일에는 『법부분과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제8조에 형사국(刑事局)에 제1과와 제2과를 두는데, 제1과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사항과 그 집행에 적당한 세칙 등의 기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였다. 제2과는 1. 사형 집행·은사·특사·복권·가출옥 등에 관 사항, 2. 품계가 있는 자의 범죄에 관한 사항, 3. 형사재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다. 검사국(檢事局)은 1. 검사 직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3. 형사피고인의 처치에 관한 사항, 4. 형사 변호에 관한 사항³⁾을 관장토록 규정하였다.

이후 1899년 5월 30일 『법부관제』는 다시 개정되어 형사국과 검사국을 통합한 사리국(司理局)을 신설하였다. 그 제3조와 제4조에 법부에 사리국과 법무국·회계국을 두는데 사리국과 법무국은 1등국으로 회계국은 3등국으로 규정하였다. 제5조로 사리국은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 및 민사재판 집행의 감독과 형사재판 및 은사·특사·복권·가출옥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제6조로 법무국은 조사 및 법률 제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⁴⁾ 이어지는 법부 분과 규정에 따라 6월 13일 사리국에는 민사과와 형사과를 두었는데 이 중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과는 1. 은사·특사·복권 및 형사 주안(奏案) 기초에 관한 사항, 2. 형사피고인 처단에 관한 사항, 3. 형사재판의 비용에 관한 사항, 4. 형사상 일체 공문 기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무국에는 직제로 검사과와 법제과를 두었는데, 검사과에서는 1. 민사 형사 초심 안건에 대하여 각 재판소 질품에 응한 공문과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법관의 자격판정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 3. 형사피고인 처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다.⁵⁾ 이 같은 법부의 3국 체제는 러일전쟁 기간인 1905년 2월 26일 칙령 제 20호로 민사국과 형사국의 2국 체제로 개편되면서 사리국의 업무가 형사국으로 이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⁶⁾

1) 『官報』, 開國 503年 6月 28日.

2) 『官報』, 開國 504年 3月 25日.

3) 『官報』, 開國 504年 4月 20日.

4) 『官報』, 光武 3年 6月 5日.

5) 『官報』, 光武 3年 6月 15日.

6) 『官報』, 光武 9年 3月 1日.

법부 각국(局) 기안(起案)은 1895년(고종 32, 개국 504년) 4월부터 1905년(광무 9) 12월 까지 법부 검사국·형사국·사리국에서 각 부 재판소에 보낸 지령과 훈령·통첩·조회·조복·질품과 국왕(황제)에 올린 상주 안건 등의 기안문을 연대순으로 묶은 것이다. 법부 기안의 대부분은 중앙 사법기관인 법부의 실무관료와 책임자들이 소장이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처리하는 지령·훈령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왕(황제)에게 올려 최종 결재를 받는 주본류와 다른 정부 부서와의 협조를 거치는 조회·조복류 등도 포함된다.⁷⁾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는 기간 사법제도, 동학농민군 참여 인사들의 사후 활동과 정부의 처리, 활빈당과 의병을 비롯한 사회변혁을 위한 각종 민중운동, 동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회상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중에는 1894년 이후 동학과 농민군 활동에 대한 문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법부 각국 기안에는 현재까지 공식 등록된 3,913명에 포함된 인물은 물론 갑오년 이후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의 지속적인 활동상과 체포 처형과 관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많다.⁸⁾ 검사국 기안은 용담의 김낙삼 등 49명, 형사국 기안은 청주의 오일상 등 16명, 사리국 기안은 고창의 김재호 등 64명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의 활동상도 알 수 있다. 동학교도와 동학농민군, 그 지도자, 서학 투탁자, 영학당 등의 체포 수사 및 처벌의 수위, 근거 법률까지 다양한 사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규정하는 용어도 ‘비도’ ‘동도’ ‘동도 죄인’ ‘비류’ ‘동비’ ‘동학배’ ‘난당’ ‘동학의 잔당’ ‘갑오년의 잔류’ ‘비류 죄인’ ‘동학 죄인’ ‘도적’ ‘적도’ ‘동학 난류’로, 그 지도자는 ‘비괴(匪魁)’ ‘비적 수괴’ ‘동학 거괴’ ‘동학 괴수’ ‘당괴(黨魁)’ ‘비류 두목’, 농민군 토벌은 ‘토비(討匪)’ ‘초비(剿匪)’ 등 다양하다. 이중 법부 검사국 기안 관련 내용은 형사 사건 판단과 기본적인 처리 방안 제시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형법 적용과 피고인에 대한 처치 등의 사안은 형사국에서 전담하였다. 법부 형사국 기안은 법률적 판단과 해당하는 조문 적용, 지방관에 대한 훈령 등을 다루고 있다. 사리국은 법부 관제 개정으로 1899년 6월부터 형사국과 검사국을 통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국으로 동학농민군 관련 판결은 그해 7월부터 시작한다.

각국 기안문서 중 관련 내용을 사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도면희, 2003 「규장각 소장 법부 관련 자료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 『奎章閣』 26.

8) 동학농민군의 재판과 관련하여 김용섭은 5차례에 걸친 동학농민군 총지휘자 전봉준에 대한 법무아문과 일본 공사관의 신문기록 분석을 통해 ‘동학란’의 성격과 지향을 분석하였다(金容燮, 1958 「全奉準 供草의 分析: 東學亂의 性格一斑」 『史學研究』 2). 왕현중은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의 판결선고서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판결 상황을 소개하고 전봉준의 ‘재판투쟁’을 정리하였다(왕현중, 2015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韓國史研究』 168).

2. 동학농민군 출신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사의 대부분은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살아남은 경우도 활동 당시와 그 직후에 대부분 체포되어 특별한 심리 과정도 없이 현장에서 처형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반면 법망에서 빠져나가 피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전 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역 공동체 사회의 감시(surveillance)와 지목(point out)의 대상이 되었고 체포된 후 판결을 거쳐 처벌되었다. 먼저 전라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부 관찰사는 동학의 잔당과 체결하여 군기를 빼돌리고 포고를 써 붙인 박준상 등 6명은 모두 총살하였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도망가 체포하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부는 사형 이상을 선보고 없이 처형하는 것은 율례에 어긋나니 앞으로는 미리 보고할 것이며 나머지는 속히 잡아 처리하라고 훈령하였다.⁹⁾ 그 후 법부는 태인 등지에서 체포한 18명은 박준상의 잔당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으니 무리를 이룬 이유를 조사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김천용이 올린 소장에 지난 갑오년에 '동학난의 죄'로 경상도 남해군으로 유배를 가서 그때 무주군의 같은 죄인 4인은 되돌아와 왔는데 제 아버지 김귀서만 홀로 풀리지 못하니 남해군에 훈령하여 무주군에서 징역을 치르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법부는 징역정식(懲役定式) 이후에도 이전의 유배형에 따랐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로 즉시 압송해 와서 징역형으로 처판하고 죄가 종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그 동안의 유배 기간을 형기(刑期)로 계산하라고 훈령하였다.¹⁰⁾

전주부에서 정읍과 태인 등지에 순검을 파견하여 과거 법망을 빠져나갔던 접주 김형순 등 10명을 체포하였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갑오년 동학의 남은 무리로 속으로 사악한 뜻을 품고 여전히 수상한 자취를 밟아서 결국 사람들의 지목을 받아 이렇게 수색하여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다. 비류의 두목 김형순은 인명을 상해하고 전재를 약탈하는 등 악행이 끝이 없었으며, 심도풍·임몽기·조진옥·강도련은 모두 갑오년의 잔류로 지목되어 잡혀 왔고, 이 내형·김재원·조대집·한용기·최동골은 장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억지로 죄를 씌울 수 없다고 하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이들 중 심도풍은 거짓으로 꾸며대는 말들을 달게 받아들여 ‘그 도를 닦으면 재앙과 질병이 없다’라며 부적을 받고 주문을 외웠으니, 비류로 지목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수감된 심도풍은 얼마 후 구체적인 병명이 없이 단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¹⁾

9)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10)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2年 2月 25日.

11)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7月 2日; 7月 15日.

접주 김형순은 동학농민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사로 판단할 수 있으나 무장투쟁도 아닌 동학의 부적을 받고 주문을 외운 심도풍 같은 용의자도 옥중 사망할 정도로 엄히 처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갑오년 8월 담양군 용귀동에서 같은 동학당인 국홍목을 살해한 일로 그의 아들 국재봉과 재준이 복수 차 담양군에 투옥 중인 김형순과 압송한 정인악을 대질한 바 있다. 당시 김형순과 정인악 등은 통문을 돌려 수백 명을 모아 국홍목을 총살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정인악이 토설하자 국재봉 형제는 그를 대로로 끌고가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후 ‘살육죄인’ 김형순은 차꼬를 부수고 탈옥하였다. 법부는 도망친 김형순은 해당 재판소에 특별히 탐문 체포하고 공범 송내춘의 경우 태 80 후 석방하라고 훈령하였다. 또한 그 아버지의 복수를 기약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국재봉은 본율에서 각각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국재준은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였다.¹²⁾

그러나 이에 고종은 “아비를 위하여 복수한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그런 것이다”¹³⁾라며 다시 재결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황제의 분부에 따라 법부는 “아비를 위해 복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 입힌 것과 크게 다릅니다. 두 아들을 함께 징역 받게 하는 문제는 죄수 처리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리로 놓고 볼 때 참작하여 용서할 근거가 없지 않은 만큼 특별히 가벼운 쪽으로 처리한 것입니다”¹⁴⁾라고 하였다. 결국 이들을 고등재판소에 압송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국재봉은 징역 10년에 처하고 국재준은 특별히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 그 사이 국씨 형제는 자신들의 옥사에 든 비용이 1,700량이라며 살해한 정인악의 시친(屍親) 진사 정대섭에게 토색하는 등 재산침해로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¹⁵⁾

전라북도 재판소는 정읍의 비도를 수종한 혐의로 박승도·이흥구·이석교·김대율·최한경을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김사일·이성문·남윤선·진찬문은 형벌과 위엄 때문에 겁을 먹고 정치조의 지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경중·김기홍·이문화·배치성·김정화는 죄상을 보아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해야 할 것 같다고 질풍하였다.¹⁶⁾ 이에 법부는 박승도 등 5명은 선고대로 집행하고 김사일 등 4명은 ‘협박 때문에 저지른 죄는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뜻에 비추어 용서할 만하고, 이경중 등 5명은 재판소에서 논의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모두 풀어주라고 지령하였다.

다음은 ‘비류 죄인’ 오재봉과 양선태를 참형(斬刑)에 처하는 율을 적용해야 하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선고한 관례가 없다는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이다. 이에 법부는 훈령을 내리

12)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12月 26日.

13)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3年 1月 10日.

14) 『起案』(法部 儉事局), 光武 3年 7月 10日.

15)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3年 1月 25日.

16)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11月 23日.

기를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님에도 선고한 격례가 없다고 하니 즉시 율을 헤아려 선고하고 보고하되, 형명(刑名)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령을 내렸다.¹⁷⁾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이들을 교형에 처하는 안전에 재가가 났으니 집행 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¹⁸⁾

충청도의 경우, 옥에 갇혀 있는 ‘비적 우두머리’ 김재흥에 관한 임천군수의 보고 문서를 살펴보니 범한 죄가 매우 악하고 모질어서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를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한다는 소단자(小單子)를 정서하여 바치라는 지령이다. 군수는 김재흥은 “동학의 무리에 뛰어들어 접주가 되어서는 관청 창고의 군기를 빼앗고, 관속들을 위협하고 도를 강요하였습니다. 또 전봉준의 후장(後將)이 되어서는 마을을 도륙하여 파괴하고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라고 첩보하였다. 이에 법부는 증범죄에 관계되는 것이라 압송하여 처단하는 것이 합당하나 민심을 위로하고 미혹된 무리에게 경고하기에는 고을에서 포살하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즉시 거행 후 전말을 보고토록 지령하였다.¹⁹⁾ 이후 다시 임천군에 지령하여 그를 교수형에 처한 후 거행 결과를 급히 보고토록 하였고,²⁰⁾ 그 죄목과 성명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내각 기록국에 통첩하였다.²¹⁾

청산현에서 ‘동학 비도’에 참여한 송치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산현감의 첩보에 따르면 남면 도분리의 송치삼은 본래 토호로 향촌을 억압하였고 동비들이 창궐하자 팔도도집강(八道都執綱)이 되어 무리를 이끌고 고을을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시찰관의 친척이라고 사칭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²²⁾ 이에 법부는 장교와 나졸을 보내서 엄중히 칼과 쇠사슬을 채워서 압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충주 민섭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충주병사의 첩보에 의하면 그는 원래 토호로 동학 무리의 괴수가 되어 일본 군대에 체포되었지만 요행히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감영에서 장교를 파견하여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고 재산과 벼 포대를 몰수하였다고 법부에 무고하는 한편 마을 백성들을 붙잡아 채찍질하면서 독촉하는 등 행패가 극심하다는 것이다.²³⁾ 이에 법부에서는 장교와 나졸을 정해 압송하여 엄히 징벌토록 조회하였다.

청주 오일상의 경우는 군부와 법부의 동학농민군 여부 판단의 차이와 처형 수위로 인한 첩예한 갈등이 노정되는 하나의 사례이다. 법부는 영장과 군수가 보고한 ‘비괴’ 오일상은 하는 짓이 매우 악하고 모질어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무리 오두상·이정도·김인동은 죄를 참작하라고 지령하였다.²⁴⁾ 연이어 지령을 내려 보고한 모든 서류를 상세히 조사하니 오일상

17)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5月 18日.

18)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5年 5月 18日.

19)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20)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7月 9日.

21)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12日.

22)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5月 8日.

23)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5月 13日.

은 악명이 널리 퍼져있으나 실제로는 도리에 어긋난 행실이 없었고 사민(士民)을 비호한 공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형에서 1등을 감하고, 나머지 3인은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하였다.²⁵⁾ 그러나 이후 청주군수는 군부에서 훈령으로 수감한 ‘도적 수괴’ 오일상을 친위 제2대대 행진소에서 총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비록 그 죄명은 왁자하게 말해지고 있으나 실제 행패를 벌인 흔적은 없기 때문에 이미 징역형으로 처결하였음에도 군부 훈령으로 그를 총살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였다.²⁶⁾ 이에 대한 군부의 조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충북재판소에 보낸 또 다른 훈령에서는 종범 오두상과 이정도는 동비(東匪)의 수종으로 말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이는 6범(六犯)의 하나인 절도에 해당하므로 1등급 감형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2년 징역형을 받아 수감되었고 기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였다.²⁷⁾

한편 공주군에서는 평택 사는 박서유는 유명한 ‘동괴(東魁)’로 법망에서 빠져나가 이전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과부를 겁박하여 억울한 호소가 있었는데도 무죄 방면을 지령하였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법부는 고등재판소에 분명하게 조사하여 심판하라고 조회하였다.²⁸⁾ 당진의 사례는 평민 김성원이 갑오년 동도에 투입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사건으로 공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고등재판소에서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2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판결한 선고서를 보내니 관보에 게재하라고 통첩하였다.²⁹⁾ 한편 전 천안군수 김병숙이 살해당한 일로 ‘비괴’ 박만귀를 잡아 조사하니 갑오년 동학군이 천안군의 군기(軍器)를 탈취해 갈 때 자신이 관문에 총을 쏘았고 관방에 난입한 사실 등은 위협을 받아서 했던 것이라고 자복하였다. 이에 법부는 충남재판소에 훈령 도착 즉시 박만귀를 교수형에 처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³⁰⁾

법부 기안 문서는 그간 다른 자료에서 파악이 안 되는 황해도 동학농민군 관련 새로운 내용이 많이 보인다. 평산의 경우, 경무청에서 파송한 순검 김광련과 박승호에게 ‘동학 죄인’ 이용손을 압송하여 좌옥(左獄)에 가두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으니 사령을 보내 죄인을 받아 오라는 조회문이다.³¹⁾ 법부는 경무사에게 분명하게 알려 특히 엄히 다스려서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비적 수괴’ 박대련·신창식·박기영 등을 체포 조사하니 범죄가 심상치 않아 더 심문하여 보고하라는 훈칙과 조사하여 즉시 처벌할 범죄이면

24)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7月 9日.
 25)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5日.
 26)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1月 23日.
 27)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3月 4日.
 28)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7月 23日.
 29)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11月 14日.
 30)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3年 1月 22日.
 31)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閏5月 4日.

그렇게 하라는 훈령이다.³²⁾ 은율군의 경우 동학당 김계문·정택근·정관선·김이섭·이경환·이근달·조승찬·사명철·김명학을 포살한 사건을 조사하여 범죄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토록 한 훈령, 이들이 군의 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진상품과 군기를 약탈하여 포살하였다는 군수의 보고문이 확인된다. 이에 법부는 은율군수가 9명을 마음대로 총살한 사건의 전말과 처리 과정을 자세히 조사 보고하라고 해주부에 훈령하였다.³³⁾ 이에 해주부 관찰사는 장연 오리포에서 일본군이 체포한 13명의 동학군 중 9명을 전 부사가 총살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³⁴⁾ 다음은 신천·송화·장연·옹진·강령 등의 고을에 들어가 관사를 불태우고 돈과 식량을 약탈한 이동엽은 교형을, 승려 금월은 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급히 보고하라는 훈령이다.³⁵⁾ 이어 ‘비괴’ 이동엽 등 교형에 처한 죄인의 죄목과 성명을 내각 기록국에 보내 관보에 게재토록 하라고 통첩하였다.³⁶⁾

재령 장수산성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윤덕여와 증범 김운성·맹소희 등의 판결 문서는 다음과 같다. 해주부는 군부 훈령에 따라 간혀 있는 ‘적괴’ 윤덕여를 사방으로 통하는 큰길에서 총살하고, ‘여당’ 김운성은 대낮에 물건을 빼앗은 조항으로 도(徒) 2년, ‘수종’ 맹소희는 도 1년에 의율하여 모두 새로운 정식을 따랐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자 도적’ 2명은 해주부로 이송하여 각각 그 남편을 염탐하여 붙잡아오는 사이에 우선 보증을 서서 맡아두었다. 방이조는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총을 만든 것이지 애당초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극구 원통함을 외치므로 장 30대 후 석방하였다. 그러나 법부대신은 이는 처음 듣는 일로 이 사건에 군부가 간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군부대신에게 조회하였다.³⁷⁾ 나아가 군율(軍律)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일체의 조율은 법부에서 짐작하여 헤아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부의 지휘를 기다려 시행하라고 다시 조회하였다.³⁸⁾

한편 법부는 해주부에 훈령하여 강령군에서 체포한 오원경·이봉신은 서울로 압송하되 적용할 법률을 살펴 보고하고, 김영하·오현근·현학진·조사여·조순승·배동명·연순길·송만영·조봉도·오가인 등 10명은 각별히 엿보아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다.³⁹⁾ 또한 동괴(東魁) 강달조를 옥에 가두고 지령을 기다린다고 한바, 이를 살펴보니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신문 문서(供案)를 보내라고 지령하였다. 재령의 아전 출신 강달조는 동학 접주가 되어 여러 곳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 수백 석을 징수하였다. 또한 접주 원용일이 수백 명으로 신천군

32)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元年 3月 12日.

33)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34) 『法部去來案』, 開國 504年 9月 24日.

35)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6日.

36)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12日.

37)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13日.

38)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1月 23日.

39) 『起案』(法部 檢事局), 開國 504年 9月 28日.

공격 후 재령으로 향할 때 동학도를 이끌고 십 리 밖에 영접하였다. 이후에는 원용일 포(包)와 함께 장수산에서 활약하였고 다시 돌아와서 청룡촌 강희열로부터 벼 27석을 징수하여 화포에게, 장춘 김침사로부터 잡곡 36석을 징수하여 농민들에게 농사 빚[農債] 상환용으로 나누어 주었다.⁴⁰⁾ 그는 법부 훈령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⁴¹⁾

해주부에 대한 법부의 또 다른 조회문으로, 백낙희 등이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자 도주하였는데 이들을 서둘러 체포한 후 전후 사정을 조사 보고하고 사건을 피한 이들을 율에 따라 처리하도록 장연군에 지령토록 하였다. 그런데 장연군에서는 백낙희 등 6명을 극형에 처하도록 해주부에 보고하였음에도 계속 지령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는 형사 사건은 내부가 아닌 법부에 보고토록 할 것이며, 위 6명에 대한 처벌을 속히 시행하라고 훈령하였다.⁴²⁾ 이에 장연군수 염증모는 군에 가둔 백낙희는 총살하고, 전양근·백기정·김계조·김의순·백낙규는 교수형에 처하고, 송화 비괴 강성일과 같은 당 강운영, 산포 이승조를 심문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법부는 이들을 다시 조사하여 범죄의 수종을 분간하여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⁴³⁾ 그 결과 백낙희는 본래 동학은 물론 산포(山砲)의 우두머리로 전양근·백기정·김계조와 모의하였고, 김의순·백낙규는 그 수종이 되어 반란을 꾀한 혐의로 재가를 받아 모두 교형에 처하였다. 도망친 김형진·김창수·김재희·유학선·최창조와 문화군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등 6명은 즉시 체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⁴⁴⁾

황해도재판소에서 심리한 동도의 화포영장 김선장은 ‘수대산 108형제’라는 도당으로 순포(巡捕)를 칭하면서 백성들의 돈과 재물을 토색한 죄로 교수형에 처하라는 훈령이다. 그다음 훈령도 화포 이원조가 동도 수백 명으로 봉산군 사원참에 몰려와 인명을 포살하고 재물을 약탈한 사실을 자복하였으므로 김선장과 같이 교수형에 처하라는 내용이다.⁴⁵⁾ 내각에서 상주하여 재가받았기에 이들을 각기 교형을 집행하고 그 사정을 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원조가 병사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그의 시체를 즉시 매장할 것을 지시하였다.⁴⁶⁾ 한편 배천군 안사건의 문족(門族)이 갑오 동비 소요 시 당괴(黨魁)가 되어 향교와 서원을 불태웠다는 군민의 소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 판결하라는 훈령도 보인다.⁴⁷⁾

40) 『司法稟報』 「海州府觀察使李鳴善報告」, 建陽 元年 1月 27日.

41)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3月 28日.

42)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4月 1日.

43) 『起案』(法部 檢事局), 建陽 元年 5月 日.

44)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5月 30日.

45)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9月 9日.

46)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9月 29日.

47)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2年 7月 27日.

강원도와 경상도의 사례를 보면 원주의 ‘동도 죄인’ 이규하와 홍정성은 같은 무리로 1894년 가을과 겨울 사이 원주 귀래면에 집을 설치하고 활동하다가 충청도 충주 소태양면에서 체포되었다.⁴⁸⁾ 이에 법부는 첩보와 증거물을 일일이 보냈으니 함께 심판한 후 한성재판소로 보내라고 통첩하였다.⁴⁹⁾ 경상남도 재판소에 보낸 훈령은 산청군의 민계약·민성언·양윤문은 갑오년에 동도의 피수가 되어 많은 난민 무리를 이끌고 모이고 흠어짐이 비할 바 없으니 체포하여 범죄 유무를 조사하라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그로부터 2달 후 양윤문은 거처를 알 수 없고 체포한 민계약과 민성언도 범한 일이 없으므로 즉시 석방하라고 훈령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였다.⁵¹⁾

3. 동학교단 관련자

동학교단의 주요 인사 또는 교단 활동에 치중한 인사들로서 체포된 사람들로 2대 교주 최시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과 일반 동학교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북접 교단 지도부 중심인물인 보은의 ‘동도 죄인’ 황하일에게 징역 3년형을 적용하였는데 3천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 보내라 하니 어떤 일인지 상세히 알려달라는 조복이 보인다.⁵²⁾ 다음은 청주지방대에서 체포 조사 중인 서석여·김시묵과 임경원의 아들 도호를 공주지방재판소로 송치하라는 조희문과 이들이 통문을 발하고 접(接)을 개설함에 비밀리에 병정을 보내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동경대전(東經大全)』 등을 찾아냈다는 보고문이 확인된다.⁵³⁾

보다 구체적 활동 사실을 알 수 있는 청주지방대의 체포 압송 내역을 보면, 서석여는 갑오년 8월 동학이 일어났을 때 거괴 손사문(손천민) 포의 접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서석여와 김시묵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임도호는 사학(邪學)에 오염된 자취가 없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므로 잘 타일러서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⁵⁴⁾ 그러나 이후 충남재판소는 서석여와 김시묵을 “훈령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징역 죄수 중 6범 외의 범인들에게 성지(聖旨)를 널리 알린 뒤 모두 풀어주고, 성명 책자를 먼저 작성하여 올립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이들은 6범 이내의 범인인데도 살피지 않은 책임은 경계할 것이며 즉시 재수감하여 징역에 처한 후 결과를 급히 보고토록 훈령하였다. 그런데 당시 법부 형사국에서 김시묵과 서석여에게 적용한 죄명은 ‘동학죄(東學罪)’였다.⁵⁵⁾

48) 『司法稟報』, 開國 504年 4月 19日.

49)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5月 27日.

50) 『起案』(法部 檢査局), 建陽 2年 6月 28日.

51) 『起案』(法部 檢査局), 光武 元年 8月 17日.

52)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閏5月 26日.

53) 『起案』(法部 檢査局), 建陽 元年 5月.

54)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6月 30日.

55)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元年 11月 日.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 등의 체포 처형 관련 형사국 기안에 따르면 최시형은 1866년 간성에서 박춘만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후 인민을 선동 규합하고 법헌(法軒)의 호를 부르며 두목을 각 지방에 임명하고 포(包)와 회소(會所)를 설치하였다. 1893년 대궐 상소와 보은에서 무리를 모았고 1894년 전봉준·손화중 등의 활동은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 데 연유하였다는 것이다. 황만기는 갑오년 입학선의 협박을 받아 동학에 입도하였다가 곧바로 귀화 후에도 도망 중인 최시형을 방문하여 생선을 바쳤고, 송일회는 1894년 4월 동학에 투탁하여 최시형이 청산에 있을 때 방문하여 만나보았고 이후 박윤대와 함께 경무청에 체포되어 길잡이 역할을 하여 원주로 가서 최시형을 포획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법부는 피고 최시형은 교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내용을 상주하여 그대로 처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고등재판소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라고 훈령하였다. 황만기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박윤대와 송일회는 최시형 포획 시 공로가 있으니 감등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박윤대는 최시형에게 식비를 제공하려 한 행동거지가 놀라우니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고, 송일회는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였다.⁵⁶⁾

‘동학 죄인’ 서정만 등 34명을 교수형에 처하자는 법부대신의 상주, 서정만은 재가받았으므로 즉시 형을 집행하라는 훈령, 검사의 공소에 따라 서정만·김당골·편합덕·육사명 등의 안건을 평리원에서 심리한 내용 등이다. 이에 따르면 ‘동학 거괴’ 서정만은 최시형의 제자인 선산 사람 김치만에게 동학을 배웠고 최시형이 처형된 후에도 동학교도 정해룡·양지동 등과 상의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무리와 재물을 모아 속리산에 치성을 드린 후 상경 복합 상소를 위해 ‘남조선충의장군(南朝鮮忠義將軍) 선봉대원수(先鋒大元帥)’라는 푸른 깃발을 만들고 물품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김당골과 편합덕·육사명은 서정만에게 동학을 배워 속리산 치성에 같이 갔으며 국모의 불공을 드린다는 등의 설로 사람을 유인하여 소위 ‘성심전(誠心錢)’을 내게 하고 상복과 술·떡 등을 준비하였다. 법부는 서정만을 교수형에 처하고, 김당골·편합덕·육사명은 모두 태 100, 징역 종신에 선고한 것에 따라 집행하도록 평리원에 지시하였다.⁵⁷⁾ 서정만 등은 동학 교단의 핵심 인사이자 ‘남조선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이었다.⁵⁸⁾ 김당골(金堂骨)의 경우 이름으로 보아 무속인으로 판단되는데 1년 후 옥중 병사하였다.⁵⁹⁾

다음은 검사의 공소에 따라 서장옥과 손사문을 심리한 내용이다. 최시형과 함께 동학의 핵심 지도자의 한 사람인 서장옥은 1888년부터 동학을 숭상하기 시작하여 1894년 백성들을 선동하였는데 그 기세가 전봉준·김개남·최시형과 막상막하였다고 한다.

56)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7月 19日.

57)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7月 25日.

58) 이영호, 2004 「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323~329쪽 참조.

59) 『司法稟報』 「報告書(제149호)」, 光武 5年 7月 15日

최시형의 최측근이기도 한 손사문은 이보다 앞선 1883년부터 동학을 숭상하였고 1894년 청주 북면 등지에 접을 설치하였고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이었으며 그해 9월에 전봉준에게 합세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은 진술에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모두 교형에 처할 것을 선고하고 상주하였다.⁶⁰⁾ 그 결과 상주대로 시행하라는 명에 따라 법부는 평리원에 즉시 이들을 교형 집행 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⁶¹⁾

평리원은 최시형의 사위 김연숙과 최명기는 갑오년 동비 창궐 때 생명 보존을 위해 유혹에 빠지거나 위협을 받아 입도하였고 아직도 동학을 배척하지 못하였다는 혐의로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또한 김춘서·조성덕·이기현·김영래도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자 하나 애초부터 행패를 부린 적이 없으므로 참작하여 본율에서 1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였다. 이에 법부는 모두 원래 헤아린 율대로 집행 후 형명부(刑名簿)를 즉시 올려보내도록 지령하였다.⁶²⁾ 그로부터 2년 반 후 평리원에서 징역죄인 김연숙을 풀어주고 죄명·형기·속전(贖錢)의 실제 액수와 방만한 날짜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법부는 김연숙 체포 이후 사면령 이전에 1등을 감하더니 평리원에서 멋대로 풀어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법부의 판단은 김연숙의 범죄 행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교화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당초 해당 안건을 법부에 질품하여 그 처결 지령을 기다려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속전을 받고 명령을 멋대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범인의 범죄 사상은 용서할 만한 흔적이 없고 좌도(左道)로서 정도(正道)를 어지럽힌 풍화(風化)에 관계되므로 실제 사정을 살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김연숙은 다시 잡아들여 가두고 속전은 내어주고 전에 처했던 징역으로 처리 후 당시 판결했던 판사를 확인하여 급히 보고하도록 훈령하였다.⁶³⁾

다음은 동학교단 활동자 또는 동학교도로서 체포되어 판결받은 인사들에 관한 사례이다. 처음 문서는 여산 '동학 거과' 고문선이 옥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내부 조회문이 법부에 전달되었다는 조회문이다.⁶⁴⁾ 전라북도 재판소도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유태장·이관동·이용구는 모두 교형으로 결정하였고, 김성초·장한여·이치옥 등은 징역 종신으로 결정하였다고 질품하였다. 이에 법부는 김준홍 등은 고문선의 무리이기 때문에 고문선이 수범이라면 이들은 자연히 종범이 되므로 수율(首律)로 결정지를 수 없기 때문에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성초 등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율에서 2등을 감해 각각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지령하였다.⁶⁵⁾

60)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9月 20日.

61)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9月 22日.

62)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6年 4月 26日.

63)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10月 12日.

64) 『司法稟報』 「全羅北道裁判所判事李完用報告書(제16호)」, 光武 4年 3月 19日;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4月 5日.

65)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4月 11日.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수범과 종범 죄목으로 판결한 규정을 적용받은 이들은 농민군이러기보다는 복첩 계열의 동학 교단 인사였다.

전라북도 재판소의 질품서에 의하면 진위 제2연대 제3대대 대대장 김한정의 조회에서 '전도(傳道)를 칭하면서 무리를 모으는 동비(東匪)'들을 비밀리에 탐문 체포하였다고 원수부에 보고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대에 가두었던 '동비'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과 이인규·홍종한·박순경·조가희 등 10명을 압송하였다고 조회하였다. 이외에 '백성들을 선동하며 전도한 거괴'로서 태인 '동비' 유달수, 임피 김광유, 진산 김치삼 등을 체포하여 사실조사 후 신문기록을 보냈다. 이에 법부는 전라북도 재판소에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유달수·김광유 등은 교형을 선고하되 모두 특별히 단단히 가두었다가 상주를 거쳐 훈령을 기다려 집행하라고 지령하였다. 또한 이인규·홍종한·박순경·조가희·김치삼 등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집행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다.⁶⁶⁾ 그러나 교형은 반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부는 사형수를 감등하는 것은 대사면이 아니면 의논할 수 없고 애초에 용서할 수 있으면 극형을 논하지도 않았을 것이니 감등은 논할 수 없다고 훈령하였다.⁶⁷⁾ 이들 또한 앞의 고문선 부하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도'를 통한 포교에 치중한 활동과 판결 죄목으로 보아 동학 교단의 인사들로 판단된다.

형사국 기안에 따르면 충청도의 경우 목천·진천·연산·문의 등지에서 동학이라 칭하고 도당을 이루는 것이 극심한데 특히 공주 산내면 상하 소전리에는 소굴을 이루었다는 소문이 낭자하였다고 한다. 이에 공주 수비대에서 병정을 파송하여 김여포를 붙잡아 가두었지만 유몽석·이봉여 등은 다른 곳에 있어 붙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법부는 죄수들이 마치 한 입으로 말하듯이 변명하고 있는데 공주군 서기는 무엇을 근거로 비밀리에 탐지한 것인가 알 수 없으니 충청남도 재판소는 다시 조사하여 진술서를 갖춰서 급히 보고토록 훈령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무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즉시 방면하고 죄지은 자는 요행히 도망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⁶⁸⁾

경기도의 경우도 농민군이러기보다는 동학교도로서의 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성 재판소에 보낸 법부 조회문을 보면 일본군에게 체포된 광주의 동학도들은 심사 후 방송되었으나 아직도 수감 중인 연노성을 일본영사관에 조회하여 심의 결정 후 귀농토록 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⁹⁾ 또 하나의 문서는 이천군에서 체포한 이상옥·신명우·김정엽·김낙철·권성좌 등을 조사하니 모두 '갑오년 이전에 동학에 물든 동학 비류'로 감옥서에 엄히 가두고 경기재

66)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7月 7日.

67)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9年 1月 14日.

68)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2年 4月 13日.

69)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판소로 압송하여 신문 문서를 첨부하고 전말을 보고하라는 훈령이다.⁷⁰⁾ 이에 경기재판소는 이천군에서 체포한 이상옥 등은 갑오 이전에는 동학에 오염된 적이 있었으나 조정의 토벌을 받은 후로는 동학을 등지고 농사일로 돌아왔다고 하니 단단히 타이른 후 풀어주자고 질품하였다. 법부도 해당 범인들이 이미 귀화하였으니 ‘역지로 행했다’든가 ‘기꺼이 따랐다’든가 하는 말을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별히 단단히 타이른 후 모두 풀어주라고 지령하였다.⁷¹⁾

평안도의 사례들도 동학교도로서의 활동 관련 내용이다. 의주진위대에서 병사들을 파견하여 체포한 ‘동학의 여당(餘黨)’ 원의길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태 100, 징역 종신, 오치덕·이원선은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집행하고, 황해도로 도주한 정기명은 법부에서 황해도 각 군에 훈령하여 엄탐해 붙잡자고 보고하였다.⁷²⁾ 동학 수범(首犯) 강성탁은 평안북도에서 접주가 되어 그 무리가 많았는데 양민들을 속이고 미혹시켰다는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하였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병업과 박종근은 우매한 소치로 사교(邪教)에 잘 못 빠져들어서 용서할 만하니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는 강성탁은 상주를 거쳐 훈령을 기다리고 강병업과 박종근은 즉시 집행하라고 훈령하였다.⁷³⁾ 이후 법부는 황제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강성탁은 형 집행 후 보고하라고 재차 훈령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⁷⁴⁾ 한편 평안남도 재판소는 중화군의 김영학과 그 조카 김광찬은 동학 괴수로 도당들을 모아 돈과 재물을 거두고 민심을 선동하였으므로 김영학은 교형에 처하고, 김광찬은 장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도 평의한 바가 모두 타당하니 원래의 율대로 처리하도록 지령하였다.⁷⁵⁾

함경도도 평안도와 유사한 사례다. 함경남도 재판소는 “동학당 맹범영·김응삼·정승조 3인을 태 100, 징역 3년, 백낙현과 임수련은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그러나 윤형천·승재원·최성도는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연히 법부에 보고한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해야 하나 현재 함경남도 각 군에 동학이 크게 치성하여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아 시일을 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권도(權道)를 좇아 즉시 포살(砲殺)’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법부는 윤형천 등 사형수들은 모두 법부에 보고하여 상주를 거쳐 재가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이 본디 정해진 법이므로 ‘응당 보고해야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논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시 보류하고 이후에는 규정을 각별히 준수하여 시행하라고 지령하였다.⁷⁶⁾ 맹범영 등에 대해서는 경중을 나누어 심리 처단한 것은 타당하므로 모두 원래의 율에 따라 즉시 처결토록 하였다.

70)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2年 2月 21日.

71)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5月 4日.

72)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4年 12月 12日.

73)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5年 3月 8日.

74)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5年 4月 17日.

75)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6月 16日.

76)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8年 4月 16日.

4. 기타

1) 기독교 투탁과 영학당 활동

법부 기안 문서는 동학농민군 출신으로 충청도 한산과 서천에서 활동하면서 기독교에 투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된 2건의 사례가 보인다.⁷⁷⁾

먼저 한산군의 김선재와 서가량은 ‘동학난류(東學亂類)’로 서학(西學)이라 칭하며 타인의 집과 재산을 파괴하고 금전을 빼앗는 등 동학 소요 때보다 심하니 교사(教師)에게 단단히 타이르고 경계하여 폐가 없게 해달라는 조회문이다. 법부는 이들을 비호한 선교사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외부에 조회하였는데 아직 회답이 없으며 해당 공관에 다시 조회토록 하였다. 홍주부 관찰사에게는 김선재와 서가량을 재물손괴와 절도에 준하여 논하고 태 100, 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하여 처벌 후 보고토록 지령하였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법부에서 징벌할 것이니 즉각 압송하고 명령을 어기고 한산군수가 마음대로 풀어준 이유를 즉시 보고하라고 하였다.⁷⁸⁾ 이어지는 지령은 상세히 조사하니 김선재는 동행하였을 뿐 포악한 짓을 돕지 않았으니 수종한 것이 분명하면 가벼운 쪽을 따라 형률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징역 처소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⁷⁹⁾

두 번째는 서천군의 서창길과 유한표의 범죄는 사면할 수 없는 일이나 공술 없이 단지 자복했다는 보고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다시 조사 보고하라는 훈령과 이들은 ‘동괴(東魁)’로 수사망에서 빠져 달아났던 자로 서학에 투입하여 전후 못된 행실을 하였다는 조회문이다. 법부는 이들이 허다한 죄상을 자복하였지만 반은 토설하고 반은 삼키는 등 진술에 의혹이 있으니 재조사 후 보고하고. 서천군에서 압송한 서창길과 유한표의 보인(保人) 송병근과 정의중을 엄히 심문 후 옥에 가두고 사정을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 서창길의 경우, “동학 소요 때에 그 무리에 이름을 올려서 관장을 능욕하고 백성을 침학하며 한산과 서천 두 고을을 무너뜨린 허다한 죄상은 군수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 지목하는 바”였지만 도망쳐서 잡지 못하다가 체포된 후 충남 관찰부로 압송되었다. 윤사평 및 이감찰과 대질 신문에서 그는 이 사건은 꾸며낸 일이라고 진술하였다.⁸⁰⁾

한편 그 과정에서 충남재판소에 수감 중인 유한표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부는 보인 정의중이 죄인을 풀어준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감옥의 형리(刑吏)인 정의중은 증범죄인을 두 사람씩이나 몇대로 보석을 청하였고, 범인들이 도망친 후에는 여러 차례 정해진 기한에 출두하지 않았으니 고종(故縱)에 관한 율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를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되 죄인을 붙잡아 바치는 날에는 풀어주고 아울러 유한표는 힘써 체포토록

77) 한산·서천 동학여당의 천주교 투탁에 대해서는 이영호, 2018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동학여당(東學餘黨)과 서양종교」 『역사와 담론』 88 참조.

78)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9月 8日.

79)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正月 6日.

80) 『起案』(法部 檢査局), 建陽 元年 12月 4日.

훈령하였다.⁸¹⁾ 서창길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잡아떼고 있으나 증인 진술이 명확하고 관찰부와 군의 조사 보고가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라고 훈령하였다.⁸²⁾ 결국 서창길은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비류죄(匪類罪)’로 태 100, 징역 15년 형의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⁸³⁾ 그로부터 4년 후 그는 ‘평민을 침학한 죄(侵虐平民罪)’로 형명이 바뀌어 석방되었다.⁸⁴⁾

전라도의 경우 장성군 ‘동비 거괴’ 박군달은 부자가 서교(西教)에 이름을 올렸으며 부인과 주점을 열고 금전을 사취(詐取)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혐의로 법부는 그를 붙잡아 공초를 받고 관찰부에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⁸⁵⁾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재판소에서는 양성군 ‘동학당의 잔여’ 흥병섭은 의병에 들어갔다가 귀화하여 야소교(耶蘇教)에 들어갔고 용인의 교두 김준희와 표리관계로 김준희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흥병섭은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자수하였는데 양성군 노곡 이보경의 논 15두락과 농우 1마리를 탈취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경기재판소는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문의하자, 법부는 ‘수종은 1등을 감한다’는 율을 적용하고 더하여 김준희에 적용한 율에서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라고 지령하였다.⁸⁶⁾

다음은 영학당(英學黨) 관련 인사에 대한 판결이다. 영학당은 동학농민군 봉기를 계승하여 1898년 12월과 18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읍·고창·영광·장성·함평 등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전개된 반침략·반봉건 운동이었다.⁸⁷⁾ 첫 번째는 흥덕군 ‘난괴’ 이화삼과 송민수가 영학에 투탁하여 행패하였고, 수서기 박우종도 이들과 왕래한 혐의가 있다고 하니 이들을 조사 후 압송하여 심사 처벌하고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이다.⁸⁸⁾ 두 번째는 본래 ‘동비 거괴’로 도망쳤다가 죽음에서 살아날 계책으로 영학을 자탁(藉託)하고 7읍 계장(七邑禊長)을 칭하며 통행하는 길에 방문을 붙이고 평민에게 가입을 협박하여 돈을 거두는 등의 패행을 저지른 영광군민 김태서를 자세히 신문 조사하라는 훈령이다.⁸⁹⁾ 전라남도 재판소는 김태서는 갑오년에 법망을 빠져나간 ‘동비 무리’로서 요행히 도망쳤다가 영학에 투탁하여 사창(社倉)에 방(榜)을 내걸고 말목(抹牧; 고부 말목장터-필자)의 모임에 참여하여 패거리를 모은 자취를 감출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재판소에서 처음 보고한 것과 해당 범인이 앞서 진술한 내용이

81)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8月 23日.

82)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8月 14日.

83) 『官報』, 光武 3年 10月 3日.

84) 『官報』, 光武 7年 7月 31日.

85) 『起案』(法部 檢査局), 光武 2年 7月 1日.

86)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7月 8日.

87) 吳世昌, 1988 「英學黨 研究」 『史學論叢 :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이영호, 2004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英學黨)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88) 『起案』(法部 檢査局), 光武 3年 2月 17日.

89) 『起案』(法部 檢査局), 光武 3年 3月 3日.

모호한 바가 있어 갑작스레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상세히 사실을 확인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헤아려 처결하라고 훈령하였다.⁹⁰⁾

세 번째는 체포된 고창군의 포군 순찰 김상흠과 대장 기수 김재호가 범죄를 저지른 정절을 별도로 심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⁹¹⁾과 압송해 온 ‘비류 죄인’ 김상흠과 김재호의 진술서를 검토한 내용이다. 전남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 민영철은 범부대신 조병식에게 심문 결과 김상흠은 범망을 빠져나간 동학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개 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사람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省察) 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재호는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오년 때의 놀란 기억으로 도망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기수(旗手)로 강제로 충당되었고,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도망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재호의 경우는 협박 때문에 따라다닌 것으로 김상흠이 저지른 죄와는 차이가 있지만 죄의 경중을 울로 헤아려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⁹²⁾

이 보고서에 첨부한 「공초기」에 따르면 김상흠은 갑오년에 태인의 동학 접주 류응로의 포(包)에 투탁하여 성찰에 임명되었고 이후 산내면에 숨어 있다가 영학당이 무리를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가서 그 동정을 살펴보니 밖으로는 영학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이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고부군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총 40여 자루, 화약 1짐, 탄환 90여 개를 탈취하고, 다음 날 저녁 무렵에는 사방에서 모인 100여 명과 함께 흥덕군을 공격하여 군기고에 남아 있는 총기 10여 자루를 다시 탈취하였다. 그다음 날에는 흥덕 후포에서 200냥을 탈취하고 무장으로 가는 길에 고창 봉암의 민가를 불태우고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짜, 환도 10여 자루, 200여 냥을 탈취하였다. 그는 73세의 연로한 나이로 고창군 수정에 모여 수성군과 접전하다 패하고 흩어지는 중 붙잡혀 압송되었다. 한편 김재호는 영학 무리 수백 명이 마을에 모여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는 갑오년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워 겁먹고 도망가는 중에 그들에게 잡혀 강제로 기수에 충당되어 형편상 도망가기 어려워 따라다니던 중 잡혀서 압송되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⁹³⁾

이에 김상흠은 범행한 정황을 이미 숨김없이 다 실토했으니 그대로 죄를 헤아려 처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 민영철은 조병식에게 김상흠이 옥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감옥 순검 김창원이 보고하였는데, ‘본서에 수감되어 있는 비류 죄인 김상흠이 본래 매우 늙었고 겸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 병에 걸려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못 먹다가, 이번 달 17일

90)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7月 17日.

91) 『起案』(法部 檢事局), 光武 3年 7月 8日.

92)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光武 3年 7月 15日.

93)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匪類罪人供招記」, 光武 3年 7月 15日.

밤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몸소 정시처(停屍處)가 있는 감옥으로 가서 상세히 살펴보니, 전신의 상하에 달리 목을 맨 상처는 없었고 병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며 달리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⁹⁴⁾라는 것이다. 관찰사는 검험 결과 병사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시신은 별도로 매장하였다. 반면 조병식은 김재호의 경우 기수라는 명목은 기꺼이 따르던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당한 것이 확실하니 즉시 풀어주라고 훈령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⁹⁵⁾

네 번째는 정읍의 영학당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최일서의 아버지 최영두 등 29명의 처벌에 관한 법부 훈령이다. 당시 영학당은 1천여 명에 달했는데 최영두는 봉기한 뜻을 ‘왜놈과 양놈을 물리치고 보국안민(輔國安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⁹⁶⁾ 주장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겉으로는 영학을 칭하였지만 내실은 전일의 동학’이었다. 최영두는 저지른 정황을 스스로 다 실토했으니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율문을 검토하여 처단토록 하였다. 정읍의 하운현은 위협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총을 쏘어지고 최가의 집에 가서 묵었으므로 수종의 지목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를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나머지 27명 중 고부의 최동순 등 5명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이미 풀어주었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정읍의 김춘언 등 22명은 진술서를 참조하여 범죄 정황을 확인해 보니 책망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며 풀어주도록 훈령하였다.⁹⁷⁾

2) 동학농민군 혐의자 · 조력자

법부 기안 문서에는 동학농민군 참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인사 또는 농민군들에게 협조한 인사들의 사례도 보인다. 전북 용담 서면에 거주하는 이름을 모르는 ‘비적 괴수’ 김가와 같은 읍에 사는 김낙삼은 내부의 비밀 관문에 따라 체포되었다. 김낙삼은 전주부 재판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도 그를 ‘동학 괴수의 제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부 검사국에서 살펴보니 범죄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인데 지난번 내부에서 전라북도에 비밀리에 관문을 보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조회하였다. 이후 전주부는 김낙삼에게 적용할 죄명을 몰라 처리에 주저하자 법부는 동학 참여 여부 문제를 엄중히 조사 후 처리할 것을 조회하였다.⁹⁸⁾ 사실이 아니거나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상황도 범죄 행위로 가정하고 적극 해석하면서 처벌토록 주문했던 것이다.

94)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八號)」, 光武 3年 7月 17日.

95)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8月 4日. 그런데 법부에서는 김상흠이 옥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훈령에서 그를 사형으로 처결하라고 지시하였다.

96) 『司法稟報』, 「全羅北道裁判所判事李完用質稟書(제15호)」, 光武 3年 7月 12日.

97) 『起案』(法部 司理局), 光武 3年 8月 3日.

98)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閏5月 17日.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한 군부와 의 갈등이 지속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친위대 제2대대장은 전북 태인 등지에서 체포한 권성중 등 동학교도와 추후 잡아들인 ‘비류’ 이주보 등 11명을 전주 남문 밖 장사에서 처형했다. 수증한 문복만 등 17명도 비류와 결탁하여 군심(軍心)을 현혹시켰다는 혐의로 장형에 처하였다. 친위대에서 동학교도와 농민군을 동시에 체포 처형하였는데 그 근거는 농민군과 결합하여 ‘군심을 현혹’하였다는 애매한 판단과 처분이었다. 이에 법부는 군율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군부에서 독단으로 집행한 것을 힐문하였다. 즉, “법부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인명을 죽인 것은 신식(新式)에 위배되고 게다가 폐지한 정형(正刑)과 장형(杖刑)을 거리낌 없이 집행하여 법률을 준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니 분명하게 회신하라는 것이다.⁹⁹⁾

다음은 충청도 충주목의 노백용이 동학도에 참여하여 이규백의 조카를 타살한 사실, 접주 정택진을 ‘동도죄(東道罪)’로 처형한 이유 등 전말을 엄히 문초 후 보고토록 지시한 기안 문서이다. 농민군 참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받아 총살 처형된 이 사건은 복잡한 송사로 진행되었다.¹⁰⁰⁾ 충주목사의 첩보에 따르면 이규백이 참모사가 되면서 노백용의 처남 전만철을 붙잡아 거짓 진술을 받았는데, 전만철이 “정영진의 동생이 몰래 노백용을 시켜서 이규백의 조카를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택진은 살육의 간증 혐의로 충청감영에서 붙잡아 동학도의 죄로 총살되었다. 정영진은 이는 모두 이규백의 모함에 빠진 것이므로 상세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장을 제출하였다. 상세히 조사 보고하라는 법무아문 조희에 따라 충주목에서는 이규백의 형 규상을 붙잡고 해당 동의 두민에게 따져 물었다. 충주목에서는 정택진이 처음에는 옥사의 간증으로 체포되었다가 후에 동학도의 죄로 죽임을 당했으나 억지로 죄명이 더해진 것 같으나 자신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며 처분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법무아문 검사국은 정택진이 정확하지 않은 지목으로 ‘동학의 죄’로 모함에 빠져 비명횡사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정택진이 과연 동학 무리라면 체포했을 때 어찌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옥사의 간증이라고 지목한 것입니까? 만약 옥사의 간증이라면 어찌 먼저 수범인 노가 놈을 체포하여 심문하지 않고 갑자기 간증을 죽인 것입니까? 여기에서 동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지목할 증거가 없고, 또한 옥사의 간증으로 여겼더라도 결국 실정(實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규백의 모함에 빠졌다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괴이하지 않으며, 해당 감영에서 인명에 소홀하였던 것이니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의심스러운 안건은 함부로

99)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元年 4月 21日.

100) 『先鋒陣傳令各陣』, 「傳令 公州의 營將과 淸州의 營將 및 忠州의 營將에게 보냄」, 開國 504年 丁月 초5日.

다시 논하여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¹⁰¹⁾

법무아문에서는 충주목사에게 정택진이 옥사의 간증이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혔는지와 동학도라는 확실한 증거 유무를 매우 빠르게 조사 정리하고 모든 내용을 긴급하게 보고토록 하였다.¹⁰²⁾ 그러나 충청도 가도사 공주목 판관은 이규백은 동학 참모사였고 그가 시킨 일을 수행한 정택진을 동도로 판단하였다고 첩보하였다. 판관은 이규백의 두 번째 진술을 인용하면서 노백용이 빛을 돌려받으려 소란을 일으킬 때 정택진을 시켰고 그가 동도인 것도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를 총살한 것은 억지로 죄를 더 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주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어찌 처리할지 알려달라고 회신하였다.¹⁰³⁾ 이후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아 최종 처결은 알 수 없다.

농민군 조력자 처리에 관한 사례이다. 황해도 장연군 조니만호(助泥萬戶) 안택순이 ‘비괴’ 김영보를 도주하게 한 사건으로 고등재판소에 관한 일이므로 원장을 함께 보내니 살펴서 재결하라는 통첩이다.¹⁰⁴⁾ 신천군 화포영장 한용건과 최석주는 농민군이 전향한 사례로 군부는 이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 혐의로 고등재판소로 이송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대로 시행하고 다시 한성재판소로 이첩하라고 조회하였다.¹⁰⁵⁾ 신천군수는 한용건은 원래 비적 무리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었는데 도리어 신천군의 영장이 되어 동학 무리의 가지에서 흘러나온 잔당을 포살한 작은 공이 있지만 비적을 빙자하여 행패를 부려 백성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고 첩보하였다. 법부는 이 내용을 한성재판소로 통첩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신천군수의 첩보를 받아보니 장용연 사건은 고등재판소에 관한 일이기에 원장을 함께 보내니 살펴서 받으라는 통첩이다. 동도의 우두머리인 장수산성 별장 장용연이 황해도 관찰사를 붙잡아 3일 동안 구류하고 자신들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풀어주었다. 그 무리인 한용건의 경우는 귀화하여 의병이라 칭하고 영장이 되어 귀화하는 자를 동도로 몰아붙여 겁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는 등 행패가 막심하였다고 한다.¹⁰⁶⁾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일로 인해 경제적 피해받은 몇 가지 사례도 확인된다. 첫 번째는 자살한 농민군의 재산을 추심하는 사례로 전라도 고산군 정인현이 ‘동학난’ 때 빼앗긴 가산과 집기를 추심할 차로 김치경의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비적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이미 목매고 죽었기로 물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고소 내용이다. 이후

101)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4月 25日.

102)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5月 8日.

103) 『牒報』, 開國 504年 閏 5月 4日, 奎. 26287.

104)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105) 『起案』(法部 檢査局), 開國 504年 월일 미상.

106) 『起案』(法部 刑事局), 開國 504年 5月 7日.

김치경이 오히려 모함하여 정인현의 조카 정치모는 강원도 홍천군에, 아들 정세모는 전라도 강진군에 정배된 후 귀양에서 풀려났으나 정세모는 전주부로 잡아 올려서 불문곡직하고 징역 형에 처했으나 원통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재판소는 이들의 죄명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⁷⁾ 두 번째는 농민군 참여자의 인척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사례이다. 진안군 두미면 전내삼의 5촌 조카는 전에 ‘동비’에 들어갔다가 근처 마을에서 말을 취한 일로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런데 무주군에 살던 이경장이 적색 노새를 잃어버렸다고 박성삼 등을 시켜 전내삼에게 그 노새를 돌려달라고 협박하므로 동서로 다녀도 금전을 마련하지 못해서 마침내 침당굴에 목을 매 자살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부는 박성삼은 태 100에 처결하여 풀어주되 매장(埋葬銀)¹⁰⁸⁾ 10냥을 추징하여 희생자의 친족에게 지급하라고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였다.¹⁰⁹⁾

세 번째 사례를 보면 갑오년 경상도 예천군 동도 창궐 시 ‘비적 괴수’ 전도야지의 전토를 속공(屬公)함에 을미년에 그 아들 전세진이 안동부에 호소하여 되돌려 받은 사정의 시말을 조사 보고하라는 훈령이다. 그 결과 예천군수 김근연은 전도야지 부자의 토지를 속공한 것과 관련하여 남경익이 간특한 짓을 벌이므로 이를 잡아다가 처벌해달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사안을 먼저 자세하게 파악한 후 훈령을 내릴 것이고 상소와 고등재판소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조회하였다.¹¹⁰⁾ 경제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로 하동군 아전 정찬규가 범포(犯浦)한 갑오조 결전(結錢) 3,109량 5전 5푼은 동학과의 싸움 당시 사용한 공전(公錢)으로 이미 면징된 바 있으니 그를 석방하라는 내용이다.¹¹¹⁾ 탁지부는 문적이 분명하니 석방할 것을 법부에 알렸고 법부 또한 경상남도 재판소에 석방을 훈령하였다.

해당 법률 조항과 판결 양태 : 맺음말을 대신하여

대한제국 시기 형법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대명률』 형률과 『대전회통』 형전의 규정을 이용하고, 처벌 방법은 『형률명례』를 따랐다. 적도와 강도의 처벌에는 『적도처단례』 제7조와 제8조를 주로 적용하였다.¹¹²⁾ 『적도처단례』와 『형률명례』는 기존의 형법과 형사 관련 공문에 근거해 법률기초위원회에서 만든 형법으로 『적도처단례』는 『대명률』 형률과 『대전회통』 형

107) 『起案』(法部 刑事局), 建陽 2年 3月 23日.

108) 죽은 사람의 장례비를 살인자에게 징수하던 은을 말한다.

109) 『起案』(法部 刑事局), 光武 2年 2月 5日.

110) 『起案』(法部 檢査局), 建陽 2年 6月 22日.

111) 『起案』(法部 檢査局), 光武 2年 10月 29日.

112) 鄭鎭淑, 2007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형법대전』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40쪽.

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로 강도와 절도 행위의 처벌 근거인 제7조 제7항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고, 『형률명례』의 국사범 관련 조항은 제11, 12, 14, 15, 16, 19, 29조였다.¹¹³⁾ 당시 체포된 동학농민군에게 적용한 법률의 대부분은 『대명률(大明律)』(1367) 관련 조항이고 그다음은 조선시대의 법률 체계인 『대전통편(大全通編)』(1785)과 『대전회통(大典會通)』(1865)의 일부 조항으로 전근대적인 법률 체계를 활용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동학농민군과 을미의병에 대한 치안 유지책으로 제정된 근대적 법률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1896)와 『형률명례(刑律名例)』(1896)도 일부 적용한 바 있지만 극히 예외였다. 『적도처단례』는 조문뿐 아니라 범죄 내용과 형량 규정도 기존의 법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¹¹⁴⁾ 『형률명례』도 『대명률』의 ‘명례’에서 가져온 것이다. 흥덕군의 채내삼처럼 러일전쟁 이후에는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全)』(1905)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¹¹⁵⁾ 1896년 의병 판결에서는 『대명률』이 적용되었고 『징역처단례』에 의해 국사범으로 유배형을 받아야 하였지만 국왕의 사면권 행사로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¹¹⁶⁾ 그러나 법무행정 관료는 물론 국왕까지도 전제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관용 없이 철저한 탄압을 하였던 동 시기 동학농민군에 대한 처벌과는 차이가 크다. 특히 대한제국 초기부터 전제 황권의 강화 추세와 더불어 고종은 법부를 통해 강력한 형사정책의 시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훈령을 지시하였다.

“높고 낮은 것이 펼쳐져 귀천이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다. 준비의 차례와 귀천의 분수가 천지의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개화이다. 어찌 범분·난상·멸륜·패리를 개화라 하겠는가. 지금부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고 천한 자가 귀한 신분을 방해하며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는 것은 모두 법을 어지럽히고 덕을 어그러뜨리는 백성이니 잘못이 큰 자는 주살하며 작은 자는 징역을 살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방문을 게시하여 먼저 가르치고 모두 반드시 알게 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는 뜻으로, 도착하는 대로 관할 각 군에 훈령을 발하여 언문으로 번역 등사하여 고을에 게시하게 하여 한 명의 백성이라도 모르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을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다.”¹¹⁷⁾

『대명률』 적용 사례를 보면 황해도 해주의 원용일 포와 함께 장수산에 들어가 활약하던 강달조는 세 가지 조항을 적용받았다. 그는 『대명률』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요서와 요언을 만들어내거나 이를 전하고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113) 鄭鎭淑, 앞의 논문, 16~19쪽.

114) 도면회, 2014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153쪽.

115) 『司法稟報』, 「報告書 二十三號」, 光武 9年 9月 2日.

116) 김항기, 2021 「1896~1910년간 충청지역 의병판결과 의병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7, 34쪽.

117) 『起案』(法部 檢査局), 光武 2年 2月 26日.

자는 참한다”는 법률, 『대명률』 ‘백주창탈조(白晝搶奪條)’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는 장 1백, 도형 3년에 처한다”는 법률, 『형률명례(刑律名例)』의 “두 죄를 같이 지은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수형에 처하였다. 함경남도에서 동학 활동을 한 윤형천·승재원·최성도도 ‘조요서요언조’의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였다. 반면 맹범영·김응삼·정승조는 ‘조요서요언조’ 중 “만약 사사로이 요서를 가지고 있거나 숨기고 감추어 두어 관에 보내지 않은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였다. 백낙현과 임수련은 동률 동조의 주에 언급된 “만약 전하거나 이용하여 현혹된 자가 2인에 미치지 않은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동학교도 및 농민군으로 참여한 인사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법률은 『대명률』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였다. 이 조항은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과 종범”에 관한 율로 주로 동학교도에게 적용하였다. 일찍이 고종 원년인 1864년 이 조항을 적용받아 동학사상을 창시한 교조 최제우는 대구 감영에서 처형된 바 있다. 2세 교주 최시형도 같은 조항의 ‘수범(首犯)’에 관한 율로 교수형을 선고하였고 상주하여 그대로 처결하라는 명령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최시형을 보좌한 황만기는 ‘종범(從犯)’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반면 최시형을 보좌하였으나 그를 체포할 때 길잡이 한 공로를 참작하여 박윤대는 태 100, 징역 15년, 송일회는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였다. 최시형의 사위 김연숙과 최명기 또한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고, 김춘서·조성덕·이기현·김영래도 본율에서 1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5년에 처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평리원에서 『형률명례』 제17조에 “국사범 외의 범죄는 경증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속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제20조 아래에 “단, 윤상풍화(倫常風化)에 관한 범인은 수속(收贖)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김연숙을 석방한 바 있다.¹¹⁸⁾ 반면 법부는 이를 부정하고 원율 그대로 다시 시행하도록 하고 당시 이를 판결했던 판사를 확인하여 급히 보고하도록 훈령하였다. 최시형의 제자 김치만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동학 죄인’ 서정만 등 34명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교형과 징역 종신에 처하였는데, 이들은 단지 동학을 믿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서정만은 수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형, 김당골·편합덕·육사명 등은 모두 종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을 선고하였다.

118) 『형률명례』는 건양 원년(1896) 4월 4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되었는데, 평리원에서 제기한 제17조와 제20조는 실체는 제19조와 제22조이다. 『官報』, 建陽 元年 4月 7日.

북점 농민군 핵심 지도자인 서장옥과 손천민도 같은 조항 수범의 율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였다. 손천민 포의 접주로 활동하다 체포된 서석여와 김시묵에게 적용된 조항도 ‘금지사무 사술조’로 중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동학 거괴’ 고문 선과 같이 활동하다 체포된 김준홍·유덕장·이관동·이용구도 동 조항 중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으로, 김성초·장한여·이치옥 등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에서 2등을 감하여 각각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지령하였다. 반면 ‘동비’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유달수·김광유 등은 수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형, 이인규·홍종한·박순경·조가희·김치삼 등은 중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훈령하였다.

평안북도에서 활동하다가 진위대에 체포된 ‘동학 여당’ 원의길은 동 조항 중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선고하고, 오치덕·이원선은 원의길에게 적용한 율에서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집행하였다. 평북 접주로 활동하던 강성탁은 수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그 휘하에서 활동하던 강병업과 박종근은 중범에 대한 율을 적용하여 2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선고하였다. 평남 중화군의 ‘동학 괴수’ 김영학도 수범률로 교형, 김광찬은 중범률로 태 100,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다.

‘정읍의 비도를 수종’한 혐의로 박승도·이흥구·이석교·김대율·최한경은 『대명률』 「명례율(名例律)」 ‘공범분수종조(共犯分首從條)’의 “무릇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조의자(造意者, 주모자)를 수범으로 하고, 수종자는 1등급을 줄인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라는 선고대로 형을 집행하였다. 황해도 장연의 백낙희·전양근·백기정·김계조·김익순·백낙규는 『대명률』 「적도편」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무릇 모반을 공모한 자는 수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였다. 동학농민군 참여자 가운데 모반으로 판결한 유일한 경우다.

한편 동학 활동 후 다시 서학에 투입한 김선재와 서가량은 『대명률』 「전택조(田宅條)」 ‘남의 재물을 훼손하면 물건의 수를 헤아려서 절도에 준하여 논한다’와 『대전회통』 「추단조(推斷條)」 ‘유생(儒生)으로 토주관(土主官, 수령)에게 발악한 자는 장[태] 100, 유 3,000리[징역 종신]의 율’을 적용하였다. 김성원의 경우는 동학에 투입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판 혐의로 『대명률』 「적도편」 ‘발총죄(發塚罪)’ “무릇 분총(墳塚)을 발굴하여 관곽(棺槨)을 드러낸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는데, 이를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에 의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할 만하다고 판단하였지만 2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였다. 형리 정의중의 경우는 농민군의 탈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명률』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일부러 놓아주면 각각 수인(囚人)과 같은 죄이다”라는 율에 「명례편(各例編)」 ‘칭여동죄조(稱與同罪條)’의 “사죄(死罪)에 이르면 1

등급을 줄인다”라는 율을 참조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되 탈옥수를 붙잡아 바치는 날에는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을 적용한 농민군 관련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봉준의 후장이자 동학 접주인 김재흥, ‘비괴’ 박만귀, ‘관사를 불태우고 돈과 식량을 약탈한’ 이동엽과 승려 금월 관련 판결이다. 김재흥과 박만귀·이동엽은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교형]에 처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형에 처하고 금월은 “그 추종자는 장 100, 유 3,000리[징역 종신]에 처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였다.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손화중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였다.¹¹⁹⁾ 영학당으로 최일서를 수종한 하운현은 『대전회통』 「추단조」와 더불어 『대명률』 「명례편」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수종자는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다. 한편 농민군 활동 이후 의병과 기독교에 투탁한 바 있던 흥병섭에 대해 경기재판소는 『대전회통』 「금제조(禁制條)」의 “시골에서 세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침학함”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법부는 『대명률』 「명례편」의 “수종자는 1등을 감한다”라는 율을 적용하고, 김준희에게 적용한 원래의 율에서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라고 지령하였다.

정택진의 경우는 ‘동도죄’로 법률적 판단과 심리 없이 총살 처형된 특이한 사례였다. 서창길은 범망에서 빠져나간 후 서학에 투입한 혐의로 ‘비류죄’를 적용하여 태 100, 징역 15년형을 판결받았다. 그러나 ‘동도죄’나 ‘비류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죄명이 아니다. 이같이 적용할 수 없고 판례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새로운 죄목까지 생산하면서 국가폭력으로 수렴시키면서 시종 탄압 처형하였다. 서창길에 대해서는 이후 형명이 바뀌어 법부에서는 『대전회통』 「금제조(禁制條)」 “시골에서 세력으로 평민들을 침학한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해야 하나 사면령 이전 범행이므로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였다. 오재봉·양선태도 서창길과 같은 ‘비류죄인’으로 처결하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이들은 『대전통편(大全通編)』 「형전(刑典)」 ‘추단편(推斷編)’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에서 작변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한다”라는 율을 적용해야 하나 종신 이상은 선고한 관례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건양 원년(1896) 4월 4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5조¹²⁰⁾를 개정 후 법부에서 훈령을 내리기를 한두 번에 그친

119)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三十六號 判決宣告書原本 孫化中」 및 「第三十七號 判決宣告書原本 全瑋準」. 開國 504年 3月 29日.

120) “第15條：國事犯을 役刑에 處할 시는 반드시 上奏를 經함이 可함”.

것이 아님에도 신고한 격례(格例)가 없다고 하니 즉시 율을 헤아려 신고하고 보고하되, 형명(刑名)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령하였다.

‘동도 화포영장’ 김선장과 봉산군 화포 이원조는 건양 원년 4월 1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다리·몽둥이 혹은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겁취한 자는 수범과 중범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형을 적용받은 유일한 사례였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에 대한 토론문 1

전 경 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에 대한 토론문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동학농민군과 관련하여 3종류의 법부 기안 즉 검사국 기안과 형사국 기안 및 사리국 기안이 소장되어 있다. 검사국 기안은 총 33책으로 1895년 5월부터 8월까지의 기안문을 합철한 것이며 형사국 기안은 총 42책으로 1895년 4월부터 1899년 5월까지 작성한 기안문을 수록하였다. 사리국 기안은 총 32책으로 1899년 6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기안문을 합철한 것이다.

토론자는 동학농민군이나 동학농민전쟁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재곤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비평할 역량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많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말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교수님은 이 3종류의 법부 기안에서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자료를 동학농민군 출신/ 동학교단 관련자/ 기타로 나누고 기타는 기독교 투탁과 영학당 활동/ 동학농민군 혐의자·조력자로 상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해당 법률 조항과 판결 양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3 종류의 기안을 전량 조사하여 분류하여 소개하고 분석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3 종류의 법부 기안에 동학농민군 관련 자료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기안들에 동학농민군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 소개하고 판결할 때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했는지를 대강 알아보고 판결의 양태가 어떠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건의 하나하나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상세히 소개했다고 판단된다. 법부 기안을 상세히 소개한 교수님의 논문을 통하여 동학농민군에 대한 자료 이용의 폭을 크게 확장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 논문이 학계에 기여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교수님이 이러한 분석 논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기안에 수록된 동학농민군 재판 하나하나 사건의 장소, 사건의 개요, 판결의 근거, 관련 법전이나 규정, 판결 이후 법집행의 추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었다면 교수님이 자료의 소개에 기울이는 노력을 분석에 치중해서 보다 새로운 시각의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계나 재단에서 공동으로 법무 기안 등을 서둘러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단 부설 연구소가 주관하여 학술진흥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유한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면 이를 활용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수님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무 기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현재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연구가 부진한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의 동학농민군 자료들이 기안에 상당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일 법무 기안을 꼼꼼히 연구하면 이러한 지역의 동학농민군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아울러 학계 구성원 모두 이러한 지역의 동학농민군 자료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대한제국이 조선왕조를 뒤이어 세워졌기 때문에 구시대의 폐단과 잘못된 관습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국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와 체제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관원 대부분이 조선시대에 선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동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징역형과 유배형을 뒤섞여 실시되는 등 혼동스러운 면이 있었다. 유배형은 징역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실시되었지만 그 폐단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는 유배형을 폐지하는 대신 징역형을 살도록 했는데 지방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도 징역형과 유배형을 혼동하여 실시되는 모습을 법무 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중앙의 법무와 군부 사이에 동학농민군의 재판 및 처형을 둘러싸고 혼동도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잘 활용할 경우,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가 단지 동학농민군에 머물지 않고 대한제국의 국가 제도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연구로 외연을 크게 확대의 가능성마저 있다.

이와 결부하여 동학농민군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제국 시기의 법의식 등에 대한 연구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컨대 교수님도 인용했지만 고종은 법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훈령을 각 지역에 전달하는데 고종 스스로 개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유교의 준비의식과 연결했다. 준비와 귀천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개화라는 논리인데 견강부회도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유교적인 귀천과 준비의 법의식에서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채 입으로 개화를 되뇌이면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한 들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주역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하늘과 땅이 정해졌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천지의 도를 본받아서 사람 사이의 귀천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음과 낮음에 서열이 있고 귀하고 천한 것에 분별이 있는 것이 천하의 도리다. 이것이 소위 개화이다. 그러니 어찌 분수를 범하고 떳떳함을 어지럽히며 윤리를 멀하고 이치에 어긋나면서 개화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 만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고 천함이 귀함을 방해하고 어린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는 것은 이는 모두 법을 어지럽히고 덕을 그릇치는 백성이다. 크게 범한 자는 주륙하고 작게 범한 자는 징역을 살도록 하여서 결단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유시(諭示)를 내걸어 먼저 가르침을 펼쳐서 모두 반드시 이를 알도록 하여 후회하는 뜻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뜻으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한글로 번역하여 한문과 함께 방방곡곡에 게재하여 한 명의 백성도 이를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따라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 장차 왜 대한제국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 등에 대한 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서없는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다. 감사합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에 대한 토론문 2

배 항 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한제국 법부의 판결: 검사국·형사국·사리국 기안(起案)”에 대한 토론문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법부 자료 중 <검사국 기안>(1895년 5월부터 1899년 8월까지)에 나오는 동학농민군의 재판 기록을 분석한 글이다. 이 자료는 발표자인 조재곤 선생님이 직접 발굴한 것으로 이에 대해 분석한 이 발표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농민군을 확인하고 있으며, 갑오년 이후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의 활동상뿐만 아니라, 재판 받은 농민군들의 ‘범죄 행위’를 서술한 대목을 통해 농민전쟁 당시 각 지역 농민군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만 좀 더 진전된 이해를 위해, 특히 이 글의 주 자료인 『기안』과 이 글에 담긴 내용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체적으로 『기안』에 나오는 동학 관련 인물들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 인물의 활동 혹은 그 인물이 활동한 지역의 농민군 활동상을 연결하여 접근하는 등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머리말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의 경우 이미 알려져 있거나 등록된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농민혁명 당시에 활동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① 갑오년 이후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의 지속적인 활동상과 체포 처형과 관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많다. 검사국 기안은 용담의 김낙삼 등 49명, 형사국 기안은 청주의 오일상(吳一相) 등 16명, 사리국 기안은 고창의 김재호 등 64명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의 활동상도 알 수 있다.

○ 오일상(吳一相): 기 등록된 오일상(吳一尙)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

- 「시천교종역사」: 이에 문도들은 모두 명령에 응하여 출발하였다. 吳一尙과 姜建會 일파는 회덕 지방으로 향하고, 손병희와 이용구는 앞장서 교도들을 거느리고 전봉준과 약속한 은진의 논산에 모였다.
- 「사법품보」: 공주부·평양부) 보고 (1896년) 1월 21일
“공주부에서 청주군 비적의 우두머리 吳一相을 군부의 훈령에 따라 총살하였다고 보고함.
- 「선봉진정보첩」: 吳一相은 예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이유상, 강채서, 최명기, 박화춘 등과 함께 우금티 전투 참가했던 인물로 나옴
-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문서」(『신국역총서』 12): 예는 문의 사람으로 자(字)는 大而이며, 자칭 三南都檢察이라고 하며 활동

⇒ 기 등록된 吳一尙(“1894년 충청도 대전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동학심의위원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 여부

○ 김낙삼 : 아래의 김낙삼과 동일인물(?)

- 「김낙철 역사」 1891년 7월 : 다음날 태인 洞谷의 金洛三의 집으로 떠나실 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부안에 꽃이 피고 부안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하였다
- 「천도교서」, 1891년 5월
“신사가 태인군 김낙삼(金洛三)의 집에 이르러 六任帖을 골라 뽑아내시고 또 부안군 金洛喆의 집에 이르러 또한 육임첩을 골라 뽑아내시고 전주군 徐永道の 집에 돌아와 잠시 머무시더니 이날에 湖南紳士가 날로 문(門)에 이르는 자 많되 참된 이치를 묻는 자는 없는지라. 신사가 슬퍼하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도를 아는 자가 적구나” 하시고 마침내 ‘한 기운을 꿰뚫어보니 마음을 바르게 한 곳’의 한 시구를 몸소 지으시고 제자에게 보이시다.
- 오상준, 「본교역사」, 『총서』 29
「1891년 5월에 신사는 부안에 있는 尹相五의 집을 방문했다. 이때에 윤상오는 호남 우도의 두령이요, 남계천은 좌도의 두령이었다. 門地가 크게 달라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신사가 남계천을 湖南左右道便義長으로 임명하자 호남의 인심이 좋지 않았다. 金洛三이 호남 좌우도에 설치된 16포의 도인 백여 명을 거느리고 신사가 계신 곳에 도착하여 신사에게 보고하였다. “호남 편의장을 남계천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론에 맞지 않습니다.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사는 사람을 시켜 타일렀다. “우리 도는 5만 년 개벽의 운수를 타서 무극의 큰 도를 창설했다. 이에 따라 문벌의 높고 낮음과 노소의 등급과 구분이 사라졌다. 어찌 논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문벌이 낮고 한미하더라도 두령의 자격이 있으면 한결같이 그 지휘를 따라서 도를 밝히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김낙삼과 여러 도인들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물러갔다. 신사는 태인의 김낙삼의 집에 도착하여 육임을 선임하였다.

○ 김재호 : 동학농민혁명 참여 불분명

- 「사법품보」 전라남도재판소 판사 민영철 보고서 1899년 7월 15일 제67호

“지금 관하의 고창군에서 압송해 온 비류 죄인 김상흠(金相欽)·김재호(金在浩) 두 놈에게 전후의 정황을 본소에서 엄히 조사하여 진술을 받은 후 각각의 진술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김상흠은 동학 중 범망을 빠져나간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군(郡)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省察)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구구절절이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재호는 나이가 잦으나 의지할 일거리가 없어 농사나 짓고 있다가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전히 갑오년(1894, 고종31)에 난리를 겪었을 때의 놀란 기억이 남아 있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붙잡혀 기수(旗手)로 강제로 충당되었으니, 비록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도암(道巖)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꺼이 한 짓이 아니며 협박 때문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상황을 참작하면 김상흠이 저지른 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죄의 경중을 울로 헤아리는 것은 본부에서 갑자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두 놈의 공초기(供招記)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보고 처분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김상흠의 경우 “동학 중 범망을 빠져나간 무리”임이 확인되지만, 김재호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 여부 불분명함

②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사례

- “전주부에서 정읍과 태인 등지에 순검을 파견하여 과거 범망을 빠져나갔던 접주 김형순”
⇒ 기 등록된 김형순(“金亨順은 1894년 전라도 광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8년 1월 전라도 정읍, 태인 등지에서 체포됨”)과 동일인 여부

- 전북 박준상, 심도풍, 임몽기, 조진옥, 충북 송치삼, 민섬호, 황해 이용손, 김계문, 백낙희, 전양근, 김계조, 화포영장 김선장, 경기도 황만기 등등 : 기등록된 동명의 농민군과 동일인 여부 확인 필요

- “전라북도 재판소는 정읍의 비도를 수종한 혐의로 박승도·이흥구·이석교·김대율·최한경” 등등

- 피고 김당골과 편합덕 및 육사명은 지난해 음력으로 기해(己亥), 1899년 겨울부터 서정

만에게 동학을 전수받아 서정만을 도통(道通)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속리산에서 차성을 드릴 때에 함께 갔고, 속리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피고들이 산골의 어리석은 농민을 아는 대로 만나서 서정만의 사람됨을 칭송하며 국모(國母), 명성황후를 위해 불공(佛供)을 드린다는 얘기와 현란한 말로 그들을 유인하여 성심전(誠心錢)이라는 돈을 내게 했으며 상복·떡·술 등의 물건을 준비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갈 것을 약속하게 하였다. 정해룡과 양지동은 도주하여 아직 잡지 못하였다. 그 사실은 피고들의 진공(陳供)에 증거가 명백하다.(「동학관련 판결선고서」) (조옥동 등도 마찬가지)

⇒ 동학농민혁명 참여 여부 확인 필요

2. 기등록된 농민군과 관련된 오류

“ 전라북도 재판소도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유덕장·이관동·이용구는 모두 교형으로 결정하였고, 김성초·장한여·이치옥 등은 징역 종신으로 결정하였다고 질풍하였다. (중략) 이들은 농민군이러기보다는 북접 계열의 동학 교단 인사였다.”

⇒ 김준홍, 유덕장, 장한여, 이치옥 등은 기등록 농민군. 이는 「사법품보」에서도 확인됨

- 김준홍이 진술하기를, “저의 나이가 지금 38세인데 갑오년(1894) 7월에 장경하(張敬夏)에게 동학의 도를 받았으나 장경하가 곧 몇 해 전에 사망하고,
- 류덕장이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49세인데 갑오년(1894)에 접주 김준홍의 휘하로 수행하였습니다.
- 장한여가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25살인데 갑오년(1894) 9월에 임피의 김준홍에게서 동학의 도를 전수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중앙군이 내려올 때에 저의 형이 민포(民捕)에 붙잡혀 연일(延日)에 정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또한 을미년(1895) 2월에 임피의 민포에 붙잡혔다가 다행히 풀려나서 처남인 외산리(外山里) 김옥겸(金玉兼)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 이치옥이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36살인데 갑오년(1894) 7월에 장경하에게 동학의 도를 전수받았습니다.”

⇒ 이용구의 경우 농민혁명에는 미참여 가능성

- 이용구가 진술하기를, “제 나이가 지금 35세인데 작년 5월에 은진 육한리(六漢里) 조동현(趙東玄)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3. 평안도 함경도 동학 관련자들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여부

평안도의 사례들도 동학교도로서의 활동 관련 내용이다. 의주진위대에서 병사들을 파견하여 체포한 ‘동학의 여당(餘黨)’ 원의길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태 100, 징역 종신, 오치덕·이원선은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집행하고, 황해도로 도주한 정기명(1903년 대접주)은 법부에서 황해도 각 군에 훈령하여 염탐해 붙잡자고 보고하였다. 동학 수범(首犯) 강성탁은 평안북도에서 접주가 되어 그 무리가 많았는데 양민들을 속이고 미혹시켰다는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하였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병업(1903년 義昌大領)과 박종근은 우매한 소치로 사교(邪教)에 잘 못 빠져들어서 용서할 만하니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는 강성탁은 상주를 거쳐 훈령을 기다리고 강병업과 박종근은 즉시 집행하라고 훈령하였다. 이후 법부는 황제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강성탁은 형 집행 후 보고하라고 재차 훈령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한편 평안남도 재판소는 중화군의 김영학과 그 조카 김광찬은 동학 괴수로 도당들을 모아 돈과 재물을 거두고 민심을 선동하였으므로 김영학은 교형에 처하고, 김광찬은 장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선고하겠다고 질품하였다. 법부도 평의한 바가 모두 타당하니 원래의 울대로 처리하도록 지령하였다. 함경도도 평안도와 유사한 사례다.

⇒ 1894년 당시 활동이 아닐 가능성

4. “귀화” 농민군에 대한 판단 문제

“신천군 화포영장 한용건과 최석주는 농민군이 전향한 사례로 군부는 이들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 혐의로 고등재판소로 이송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대로 시행하고 다시 한성재판소로 이첩하라고 조회하였다. 신천군수는 한용건은 원래 비적 무리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었는데 도리어 신천군의 영장이 되어 동학 무리의 가지에서 흘러나온 잔당을 포살한 작은 공이 있지만 비적을 빙자하여 행패를 부려 백성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고 첩보하였다. 법부는 이 내용을 한성재판소로 통첩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신천군수의 첩보를 받아보니 장용연 사건은 고등재판소에 관한 일이기엔 원장을 함께 보내니 살펴서 받으라는 통첩이다. 동도의 우두머리인 장수산성 별장 장용연이 황해도 관찰사를 붙잡아 3일 동안 구류하고 자신들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풀어주었다.

그 무리인 한용건의 경우는 귀화하여 의병이라 칭하고 영장이 되어 귀화하는 자를 동도로 몰아붙여 겁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는 등 행패가 막심하였다고 한다.

⇒ 참여자 인정 여부 문제

5. 황해도의 여자 농민군(?)

“또한 ‘여자 도적’ 2명은 해주부로 이송하여 각각 그 남편을 염탐하여 붙잡아오는 사이에 우선 보증을 서서 맡아두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젠더 문제나 여성사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자료에 참여한 여성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시 여성 교도들의 사정에 대한 내용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기를 좀 더 넓혀보아도 조선후기부터 근대이행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빈발한 다양한 민중운동 연구에서 여성의 참여가 뚜렷이 드러나는 사건은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재수의 난”이 거의 유일하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자 도적’이 농민군을 의미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물론 장흥 농민군 지도자로 알려진 이조이라는 여성도 있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남편이나 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거나 잡혀가서 문초를 받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여도 적지 않다. 장흥의 농민군 지도자 이인환의 경우에도 그의 부인 유소사가 남편 대신 잡혀가 고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역시 장흥의 고실 박씨가 사례에서는 남편들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조부손 삼대의 부인들이 모두 총을 맞고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또 신례원 전투에서는 관군의 밥을 해주던 노파가 농민군에 내응하여 관군이 잡든 사이에 포신에 물을 붓고 도망하였으며, 이 탓으로 다음 날 전투에서 관군이 포를 쏘자 포문에서 포탄이 아니라 물이 나왔고, 이때부터 “동학군은 호풍환우의 술(術)이 있어서 능히 대포구멍에 물이 나게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도 넓은 의미에서 여성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에 참여한 여성 농민군의 존재는 -정신적인 문제가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장흥의 이조이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황해도 ‘여자 도적’의 존재는 좀 더 구체적 정황 확인 필요하다.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6. 농민혁명 참여 후 귀화한 농민군과 갑오년 이후 동학 활동자에 대한 처벌 수위의 차이

“이천군에서 체포한 이상옥·신명우·김정업·김낙철·권성좌 등을 조사하니 모두 ‘갑오년 이전에 동학에 물든 동학 비류’로 감옥서에 엄히 가두고 경기재판소로 압송하여 신문 문서를 첨부하고 전말을 보고하라는 훈령이다. 이에 경기재판소는 이천군에서 체포한 이상옥 등은 갑오 이전에는 동학에 오염된 적이 있었으나 조정의 토벌을 받은 후로는 동학을 등지고 농사 일로 돌아왔다고 하니 단단히 타이른 후 풀어주자고 질품하였다. 법부도 해당 범인들이 이미 귀화하였으니 ‘억지로 행했다’든가 ‘기꺼이 따랐다’든가 하는 말을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별히 단단히 타이른 후 모두 풀어주라고 지령하였다.” (『사법품보』에서도 확인됨)

⇒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배도하여 농사짓고 있다는 해명에 따라 석방. 동학농민군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엄벌

예컨대 11쪽 ‘백성들을 선동하며 전도한 거괴’로서 태인 ‘동비’ 유달수, 임피 김광유, 진산 김치삼 등을 체포하여 사실조사 후 신문기록을 보냈다. 이에 법부는 전라북도 재판소에 조창식·이명삼·정순구·김덕화·이이노·김문영·유달수·김광유 등은 교형을 선고, 또 중화군의 김영학과 그 조카 김광찬은 동학 괴수로 도당들을 모아 돈과 재물을 거두고 민심을 선동하였으므로 김영학은 교형에 처하고, 김광찬은 장 100, 징역 종신에 처하여 선고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총괄 김양식 (연구소장)

기획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간행 이현재 (연구조사부)

지원 김미연 · 정유리 (연구조사부)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발행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 530-9436 / www.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인쇄 그린칼라인쇄
